



제2장 국내 나눔실태 2013

박주언 · 이희길

제1절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인 용어로 자리 잡은 ‘나눔’은 민간에서 자신이 가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을 공익을 위해 사회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기부와 자원봉사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인 나눔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나눔은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복지지출 요구에 따라 정부가 직면하는 재화와 서비스 공급의 한계를 보완한다. 또한 자발적인 나눔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신경희, 2010). 뿐만 아니라 나눔은 참여자의 자기만족감과 개인적 행복감 증진에 기여하는 등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나눔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과 개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광범위한 차원에 걸쳐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박주언·이희길, 2012).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기존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나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와 자원봉사의 참여율이나 기부금 규모 등 나눔의 양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 대표적인 관련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눔은 정부, 시장과 대별되는 사회의 주요 영역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non-profit)부문에서 발생하며, 비영리부문은 나눔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다양한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영리조직은 지속가능한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인 기반으로 대부분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하며, 현재 나눔의 수준과 마찬가지로 그 규모와 활동 범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대되고 있다. 과거 경제 규모가 작았던 시대에는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공익적 활동은 거의 정부의 몫이었으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정부만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민간 비영리조직이 형성되었고, 그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 왔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손원익, 2011).

정부, 시장에 이어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제3섹터로 불리는 비영리부문에서 발생하는 나눔 활동이 가지는 사회적인 중요한 역할과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나눔과 이를 둘러싼 비영리조직과 같은 인프라 전반의 규모 및 특성 등 실태에 대한 명확하고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국내 나눔실태를 파악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비영리조직, 연구자, 일반 국민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의 경우 나눔이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이기는 하나 나눔의 참여자와 비영리조직에 대해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등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출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은 비영리조직을 통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보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손원익, 2013).

둘째, 민간의 비영리조직은 정부의 보조금에 이어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무급의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 모금단체의 경우 기부의 추이와 기부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미래의 모금전략을 계획하고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사업진행과 연관된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셋째, 일반 국민의 경우 현재 국내의 나눔과 비영리조직 전반에 대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나눔에 참여할 때 선행정보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계의 연구자는 나눔과 비영리조직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전반적인 실태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예를 들어, 미국 Giving USA 재단에서 인디애나대학의 기부연구센터(the Center on Philanthropy)와 함께 발간하는 『Giving USA』 경우 기부금에 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나눔의 일부 측면에 관한 설문조사나 행정자료를 개별적으로 집계한 결과들은 존재하나,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헌혈, 장기기증)과 같은 나눔과 비영리조직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실태보고서는 부재하다. 선행연구로 『나눔통계 개선방안』(2012)에서 국내 나눔에 관한 통계들의 작성 현황을 검토한 바가 있다²⁾. 따라서 여기서는 이를 토대로 현재 가용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나눔과 비영리조직 전반의 규모 및 특성 등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나눔의 정의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개념적 측정틀/framework)에 대해 검토하였다. 측정틀은 나눔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와 나누는 자원의 내용 및 방법, 나눔의 지역적 범위 등을 파악하여 도출하였다. 그리고 나눔에 관한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때 구체적인 나눔 활동인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헌혈, 장기기증) 뿐만 아니라 나눔을 주로 매개하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통계도 함께 정리하였다. 특히 주로 정부기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주요 승인통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앞에서 검토한 나눔통계 작성현황을 토대로 현재 가용한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나눔과 이를 매개하는 비영리조직의 규모 및 특성 등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나눔 활동을 나누는 자원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헌혈, 장기기증) 각각에 대해 규모 및 인구사회특성별 실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수 등 대략적인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국내외 관련 문헌검토와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나눔의 정의와 측정틀은 관련 국내외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나눔통계는 해당 통계보고서와 작성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기관, 자료수집방법, 작성대상 및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연구 추진 과정에서 검토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본 연구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비영리조직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실시하였다.

2) 단, 『나눔통계 개선방안』(2012)에서는 기부와 자원봉사만 나눔으로 보고 생명나눔은 나눔의 포괄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제2절 나눔의 측정틀 및 통계 작성현황

여기서는 우선 나눔의 정의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개념적 측정틀(framework)에 대해 검토하였다. 측정틀은 나눔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와 나누는 자원의 내용 및 방법, 나눔의 지역적 범위 등을 파악하여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틀에 비추어 나눔에 관한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때 구체적인 나눔 활동인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헌혈, 장기기증) 뿐만 아니라 나눔을 주로 매개하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통계도 함께 정리하였다.

1. 나눔의 개념적 측정틀³⁾

가. 나눔의 정의

나눔의 개념적 측정틀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나눔의 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나눔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강조되면서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나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나눔은 ‘민간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과거에는 주로 ‘자선(慈善)’⁴⁾이 사용되었는데, 자선은 개인적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심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나눔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양극화와 빈곤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나눔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개념도 ‘charity’ 보다 ‘philanthropy’가 더 적절하다.

한편 현재 나눔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의한 현행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지난 2012년 12월 18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나눔기본법」⁵⁾을 통해 나눔의 법적 정의를 추정해볼 수 있다⁶⁾. 「나눔기본법」에서 나눔이란 ‘인간의 복지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물적·인적 요소의 이전·사용·제공 및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나눔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나누는 자원의 내용에 따른 ‘물적·인적·생명나눔’ 등 다양한 종류의 나눔을 포함하고 있다. 물적나눔은 주로

3) 『나눔통계 개선방안』(박주언·이희길, 2012)의 2절에 수록된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4) 자선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줌’이다(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 「나눔기본법」은 나눔의 철학을 근간으로, 다양한 형태의 나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눔의 바른 인식과 실천을 도모하고, 나눔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입법 추진되었다.

6) 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과 같은 현행 개별법에서는 나눔의 종류에 해당하는 기부와 자원봉사 등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각각 포함하고 있고, 이를 종합하면 「나눔기본법」의 나눔에 대한 정의와 유사하다.



금품을 나누는 ‘기부’, 인적나눔은 노동력을 나누는 ‘자원봉사’ 그리고 생명나눔은 신체의 일부를 나누는 ‘헌혈과 장기기증’을 가리킨다.

정리하면, 앞으로 본 연구에서 나눔의 정의는 비록 현행법은 아니지만 나눔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눔기본법」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용어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적나눔은 기부, 인적나눔은 자원봉사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나. 나눔의 개념적 측정틀

여기서는 나눔의 개념적 측정틀에 대해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눔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해 우선 살펴본 후, 나눔의 방법과 나누는 자원의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나눔은 크게 ‘참여자’와 ‘수혜자’,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우선 나눔의 참여자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자발적으로 제공한다. 단체의 경우 학교나 동호회 등에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개인과 달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도 나눔의 참여자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나눔의 수혜자는 참여자가 제공한 자원에 따른 최종적인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이 직접 수혜자가 되나, 지역사회 아동도서관 건립을 위한 금품을 기부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불특정 아동이나 주민이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신경희, 2010). 또한 수혜자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확대되고 있다.

끝으로, 참여자와 수혜자를 매개하는 조직은 참여자로부터 체계적으로 자원을 조성하여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나눔의 촉진과 매개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조직의 대다수는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이고, 이 외에 방송사, 신문사 등의 언론기관이나 정부⁷⁾ 등도 필요 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비영리조직을 매개조직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비영리조직은 정부, 시장과 대별되는 제 3섹터인 비영리(non-profit)부문에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음으로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눔의 방법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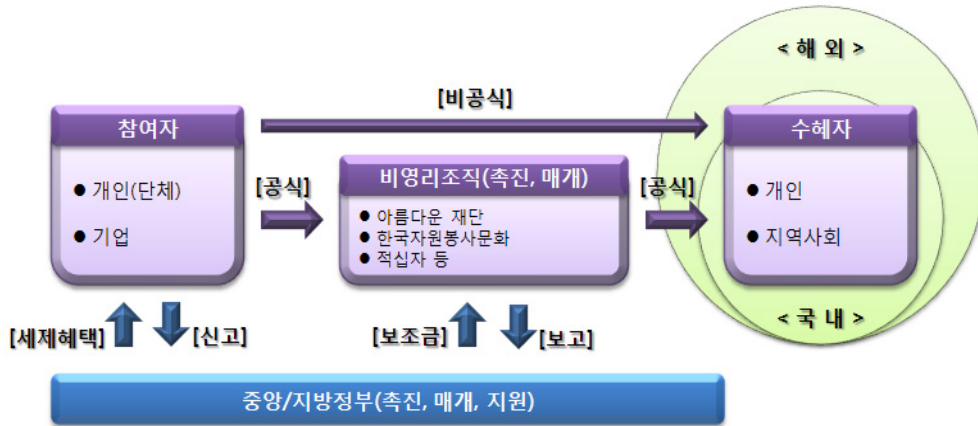
7) 나눔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정부는 나눔의 매개뿐만 아니라 나눔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우선 매개 역할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나눔포털(안행정부), 나눔넷(보건복지부) 등의 웹사이트 구축을 들 수 있다. 또한 나눔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로 참여자에 대한 세제혜택(예. 기부금 소득공제)과 비영리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공식적(formal)’ 나눔과 ‘비공식적(Informal)’ 나눔이 존재한다. 우선 비공식적 나눔은 개인 간 발생하는 것으로 참여자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나눔은 참여자와 수혜자 사이를 매개하는 비영리조직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개인 대 개인의 직접적인 나눔이 대부분이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비영리조직을 통한 간접적인 나눔이 보편적이다(신경희, 2010). 이때 비영리조직을 통한 나눔이 보편화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개인 간의 익명성이 증가하고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기 어려워졌다. 또한 최근에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사회양극화와 빈곤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영리조직을 통해 대규모로 자원을 조성하고 배분하여 문제해결에 더욱 강력하게 기여할 수 있는 나눔 방법을 선호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나누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나누는 자원은 대표적으로 ‘현금, 물품(식품, 의류, 도서, 미술품 등), 노동력, 신체의 일부(피, 장기 등)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나눔을 정의하면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나누는 자원의 내용에 따라 나눔의 종류를 현금이나 물품을 나누는 ‘기부’, 노동력은 ‘자원봉사’ 그리고 신체의 일부의 경우는 ‘생명나눔’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나눌 수 있는 자원의 내용과 형태는 사회와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매우 다양해졌다. 예를 들어, 현금이나 물품 외에 마일리지(웹사이트, 항공사 등), 콘텐츠(사이버 소설, 공연, 강의 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노동력의 경우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말벗, 청소 등) 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법률상담, 미용 등)⁸⁾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눔의 세 가지 구성 요소(참여자, 수혜자, 비영리조직)를 기반으로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나누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2-1]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나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개념적 축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 국내와 해외의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불특정 다수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혹은 비영리조직을 경유하여 공식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금품, 노동력, 신체 일부 등을 제공하는 나눔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나눔의 실태는 참여자인 개인이나 기업 혹은 참여자로부터 자원을 받아서 수혜자에게 배분한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비영리조직을 경유한 간접적인 나눔 방법이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영리조직을 통한 나눔 실태에 대한 파악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8) 이러한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로 ‘프로보노(probono)’ 혹은 ‘재능기부’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노동력을 투입하는 자원봉사의 일종으로 보고, 일반적인 자원봉사와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자원봉사’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그림 2-1] 나눔의 개념적 측정틀

2. 나눔통계 작성현황⁹⁾

지금까지 살펴본 나눔의 정의와 개념적 측정틀을 토대로 국내에서 나눔 관련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현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때 어떤 기준에서 무엇을 중점에 두고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국가 승인통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계에 대해 어느 기관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여 무엇을 작성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 외에 정부기관이 작성하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나 민간기관이 작성하는 미승인통계 등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검토는 실시할 예정이다.

작성대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과 기업 같은 참여자와 매개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비영리조직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눔통계로 인식되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누가, 얼마나, 어떻게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에 참여했는지에 관한 통계는 물론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비영리조직이 받은 기부금 규모와 운용정보, 비영리조직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의 규모 등은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해 참여자로부터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재정사항, 고용규모, 사업내용 등의 일반 현황은 비영리조직이 나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인프라이므로 나눔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늠하기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계의 유형은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조사통계, 행정자료로부터 작성된 보고통계, 한 종류 이상의 투입자료를 활용한 가공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9) 『나눔통계 개선방안』 (박주언·이희길, 2012)의 3절에 수록된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표 2-1> 나눔통계 작성현황

부문	작성기관	유형	작성대상	통계(조사/보고서)명	승인	
기부 (물적나눔)	정부	국세청	보고	개인/법인	국세통계연보	승인
		통계청	조사	가구	가계동향조사	승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	보고	개인/기업	식품기부 실적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자원봉사 (인적나눔)	정부	통계청	조사	개인	생활시간조사	승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	보고	개인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승인
		안전행정부- 중앙자원봉사센터	보고	개인	자원봉사센터현황	
기부 + 자원봉사	정부	통계청	조사	개인	사회조사	승인
		광역시도	조사	개인	지역사회조사	승인
		서울시	조사	개인	서울시복지패널조사	승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	개인	복지패널조사	승인
	민간	아름다운재단	조사	개인/기업	기빙코리아	
		한국자원봉사 문화	조사	개인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 조사 연구	
		전국경제인 연합회	조사	기업 ¹⁾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생명나눔	정부	대한적십자사	보고	개인(단체)	혈액사업통계연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보고	개인	장기이식통계연보	
비영리 조직	정부	국세청	보고	개인/법인	국세통계연보	승인
		통계청	조사	사업체	전국사업체조사	승인
			가공	가계봉사	지역소득통계	승인
			가공	비영리단체 등	국민계정	승인
	안전행정부	보고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민간	한국NPO 공동회의	보고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백서	
		조사	개발복지NPO	한국개발복지NPO총람		

주 : 1)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기업인이 설립한 기업재단을 대상으로도 사회공헌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 음영이 들어간 통계가 주로 검토할 대상이다.



국내 나눔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작성되고 있는 나눔 관련 통계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우선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 작성하는 경우는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것이 각각 3종, 기부와 자원봉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7종, 그리고 생명나눔에 대한 것이 2종이다. 그리고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7종이 있다. 단, 광역 시도에서 작성하는 지역사회조사 중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는 지역이 다수이나, 편의상 하나로 집계하였다. 반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의 경우 기부와 비영리조직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나, 각각의 부문에서 별개로 집계하였다.

<표 2-1>에 제시된 여러 가지 통계사례 중에서 나눔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할 것은 앞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정부기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한 승인통계이다. 이는 <표 2-1>에서 음영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부와 자원봉사는 각각 3종, 기부와 자원봉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2종, 생명나눔은 2종, 마지막으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것이 1종이다. 여기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는 민간기관에서 작성하는 미승인통계이나, 현재 기업의 나눔 참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므로 주요 나눔통계로 포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주요 나눔통계에 대해 각 부문별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가. 기부

기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청의 「사회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식품기부 실적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국세통계연보』

『국세통계연보』는 매년 각 세무서에서 수집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전수 자료를 국세청에서 집계하여 수록한 것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를 통해 개인(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과 법인의 기부금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에서 집계되는 기부금에 대한 통계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발적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누락되는 등 정확도 측면에서 일부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기부금 규모를 정확히 집계한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세무자료를 통한 통계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통계라 할 수 있다(손원익, 2013).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우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도별 기부인원 및 금액 추이와 지역, 성·연령, 과세대상근로소득(총 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규모별 기부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종합소득자의 경우는 연도별 기부인원 및 금액(기부금특별공제, 필요경비) 추이와 종합소득규모, 10분위 분포 및 성·연령별 기부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경우 연도별 기부금 신고법인 수 및 기부금액(법정·특례, 지정 기부금) 변화와 법인규모, 상장/비상장여부, 업태, 수입, 자산, 소득, 과세표준규모, 흑자 법인 10분위별 기부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회조사」

「사회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에서 매년 전국의 약 17,000 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 면접이나 인터넷조사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자체는 매년 실시하나, 가족, 교육, 환경, 사회참여 등 총 10개의 영역에 대해 5개 영역씩 2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항목은 사회참여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기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사회조사」에서 기부의 정의는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헌금(십일조, 보시)은 기부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조사항목은 총 11개(2011년 기준)로 기부여부 및 안한 이유, 현금기부, 현금정기기부, 물품기부, 물품정기기부, 기부이유, 희망분야, 대상 인지경로, 향후 의사, 유산기부 의사,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

3)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는 약 8,700 가구의 가계부 작성을 통해 전체 가구의 평균 수입과 지출을 월 단위로 조사하는 것이다.¹¹⁾ 이때 종교기부금과 회비 및 기타기부금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에 대한 지출액을 통해 가구의 평균 기부액을 파악할 수 있다.

4) 식품기부 실적

복지부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식품을 기부받아서 지역 내 필요한 자에게 배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¹²⁾. 전국푸드뱅크는 기부식품 관리시스템(FMS)을 구축하여 전체 기부식품의 모집 및 배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품기부자의 수와 기부액, 기부식품의 종류,

10) 2009년에 기부여부 및 경로/횟수에 대한 단일 항목에서 2011년에 총 11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11) 이 밖에 가구원의 구성과 주거 등 가구의 실태에 대한 사항을 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조사한다.

12) 광역·기초단위 지역의 424개('13년 3월 기준)의 푸드뱅크(마켓)와 1개의 전국푸드뱅크가 있다.



이용자 현황 등의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이때 자료의 검색기간을 최소 하루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표 2-2〉 기부 관련 통계 작성현황

구분	『국세통계연보』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식품기부 실적
작성기관	국세청	통계청		보건복지부
통계유형	보고	조사		보고
작성대상	개인/법인 세금공제 신고자	만 13세 이상, 약 38,000명	약 8,700가구	개인/기업 식품기부자
승인여부	승인			미승인
작성주기	1년	2년 ¹⁾	1월	1일
작성내용	(개인) 성연령, 소득 규모별 기부인원 및 금액 등 (법인) 업태, 소득규 모별 신고법인 수 및 기부금액 등	기부여부 및 안한이유, 현금기부(횟수/액수), 현금 정기기부, 물품기부 (횟수), 물품 정기기부, 기부이유, 희망분야, 대상 인지경로, 향후 의사, 유산기부 의사, 기부문화 확산 ²⁾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액수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기부금)	기부자/기부식품/ 이용자 현황 등

주 : 1) 조사 자체는 매년 실시하나, 교육, 안전, 사회참여 등 총 10개의 영역에 대해 5개 영역씩 2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2) 2011년 조사에서 기부 관련 항목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1개→11개).

5)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는 전경련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나눔활동을 지칭하는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현황에 대해 매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및 주요 회원사 등 600개 기업(2011년 기준)이다. 조사내용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기부, 직접사업) 총 지출액, 분야별 지출액, 기부처 및 기부형태별 기부현황, 기부처 선택 시 고려사항,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백서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기업인이 설립한 80개 기업재단(2011년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설립연도, 자산규모, 주요 목적사업 등 일반현황과 함께 수입구조 및 사업의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재단은 기업이 출연한 재산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이므로 백서를 통해 전체 비영리조직 중 일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나. 자원봉사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및 「생활시간조사」, 그리고 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와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의 『자원봉사센터현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경련의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에도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기부 부문에서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1) 「사회조사」

「사회조사」의 개요는 기부 부문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원봉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사회조사」에서 자원봉사의 정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보수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점심값, 교통비 등 실비만 받고 봉사하는 경우와 학생의 봉사활동을 포함한다. 조사항목은 총 5개(2011년 기준)로 활동여부, 정기 활동, 인지경로, 전문성 활용여부 및 종류, 향후 활동의사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2) 「생활시간조사」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전국의 약 8,100 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1,000명을 대상으로 2일 동안 하루 24시간의 활동형태를 10분 간격으로 주행동과 동시행동에 대한 시간일지(time-diary)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¹⁴⁾ 이때 행동은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이동,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기타의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참여 및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는 ‘무보수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단체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돕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자원봉사는 다시 국가 및 지역행사, 자녀교육, 아동·노인·장애인, 재해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기타 자원봉사(헌혈 포함) 관련 활동으로 분류되므로, 활동 분야별 평균 자원봉사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는 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봉사자의 실적을 집계하여 작성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령, 직업 등)별 자원봉사자 및 활동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정기적·지속적으로 활동

13) 조사항목은 2009년에는 활동여부와 향후 활동의사에 대한 2개에서 2011년에 총 5개로 증가하였다.

14) 이 밖에 인구학적 특성, 시간부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등 가구 및 개인 관련 사항(총 21개 항목)과 생활시간사용만족도에 대해 조사원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는 자원봉사자를 연간 매월 1회 이상 활동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4) 『자원봉사센터현황』

『자원봉사센터현황』은 안행부에서 매년 1365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된 봉사자의 실적을 집계하여 작성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활동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안행부는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였던 자원봉사시스템을 1365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2년에 안행부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의 시스템과 연계가 완료되어, 향후 기존보다 넓은 범위의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합적인 실적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3〉 자원봉사 관련 통계 작성현황

구분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자원봉사센터현황』
작성기관	통계청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통계유형	조사		보고	
작성대상	만 13세 이상, 약 38,000명	만 10세 이상, 약 21,000명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등록 봉사자	1365자원봉사시스템 등록 봉사자
승인여부	승인			미승인
작성주기	2년 ¹⁾	5년	1년	
작성내용	활동여부(횟수/시간), 정기 활동, 인지경로, 전문성 활용여부 및 종류, 향후 활동의사 ²⁾	활동 분야별 평균 참여시간	자원봉사자 및 활동 (횟수/시간, 정기) 현황 등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횟수, 정기) 현황 등

주 : 1) 조사 자체는 매년 실시하나, 교육, 안전, 사회참여 등 총 10개의 영역에 대해 5개 영역씩 2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2) 2011년 조사에서 자원봉사 관련 항목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2개→5개).

다. 생명나눔

생명나눔의 경우 헌혈에 관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의 『혈액사업통계연보』와 장기기증에 관한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이식통계연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혈액사업통계연보』

『혈액사업통계연보』는 적십자에서 적십자 15개 혈액원과 적십자 외 혈액원에서 제출한 개인과 학교 등 단체의 헌혈 실적자료를 매년 종합하여 편집한 것이다. 개인과

단체의 헌혈 실적과 연도별 변화 추이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등록 헌혈자에 대한 현황도 포함하고 있다.

2) 『장기이식통계연보』

『장기이식통계연보』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개발한 장기이식 관련 시스템에서 집계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것이다. 장기기증자, 장기이식, 이식자 및 이식 대기자, 기증희망자 등의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비영리조직

비영리조직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주요 통계는 기부 부문에서 살펴보았던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이다. 이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비영리조직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를 기반으로 비영리법인(업종/지역별 수)과 공익법인(사업목적/지역별 수)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마. 검토결과

지금까지 나눔통계의 현황에 대해 파악한 후, 정부기관이 작성하는 승인통계를 중심으로 하는 각 부문별 주요 통계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우선 「사회조사」를 통해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 실태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 조사항목의 수가 증가하여 활용성이 제고되었다. 『국세통계연보』, 「가계동향조사」 그리고 「생활시간조사」는 각각 기부나 자원봉사 측정이 아닌 다른 고유의 주요 작성목적を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주요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조사나 세무자료 외에 식품기부,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에 대해 각각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전산 시스템(DB)을 통해 민간 자원의 모집 및 배분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집계할 수 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국가통계 차원에서 나눔을 측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조사」에서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 조사항목의 수가 증가하였고, 식품기부, 자원봉사 등에 대한 각각의 통합 DB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나눔 실태 파악에서 중요한 주요 매개기관인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는 여전히 미비하다. 세무자료인 『국세통계연보』에 있는 일부 관련 정보를 비영리조직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현재 나눔의 일부 측면에 관한 조사나 분석 결과들은 각각 존재하나, 나눔 전반의 실태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아직은 전무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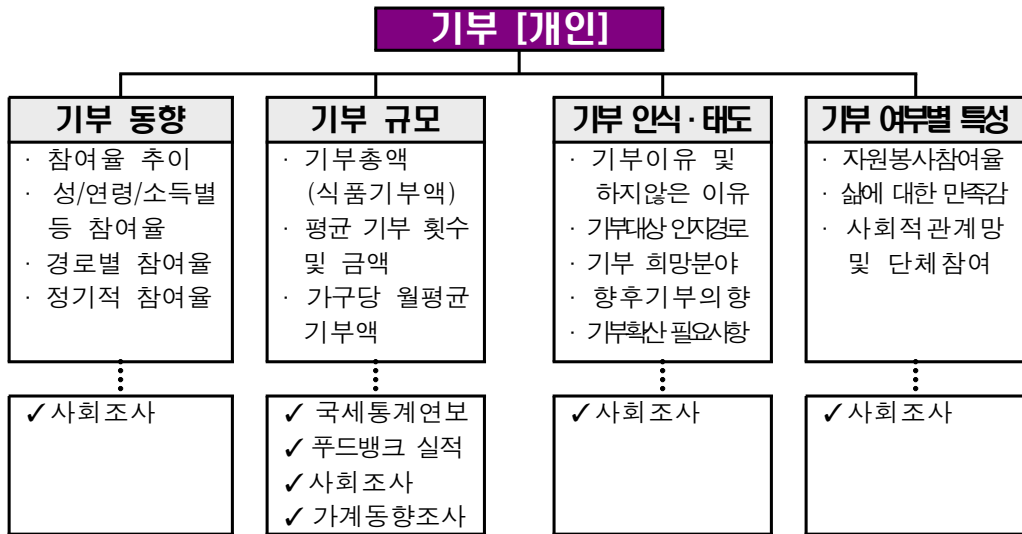
제3절 국내 나눔의 실태

여기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주요 나눔통계를 통해 국내 나눔의 현황 및 특성 등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개인과 기업 각각의 참여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개인의 경우 전반적인 참여 동향 및 규모(기부액, 자원봉사 시간 등) 등에 대해 인구사회특성, 소득계층, 지역별로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통계청 「사회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를 활용하여 기부와 자원봉사의 참여자와 미참여자 집단의 특성 차이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기업의 경우 기업의 규모와 업태별 참여규모 및 분야 등의 사회공헌활동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명나눔’은 일단 나누는 자원의 내용에 따라 다시 ‘헌혈’과 ‘장기기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실태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1. 기부

가. 개인

지금부터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주로 활용하여 개인의 기부 실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사회조사」에서 파악하는 기부는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헌금(십일조, 보시)은 기부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은 기부를 누가, 얼마나 하였는지에 대한 동향과 규모,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때 기부규모에 대해서는 「사회조사」 외에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결과도 활용할 것이다. 특히 기부한 식품의 규모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식품기부 DB를 통해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부여부별 특성 차이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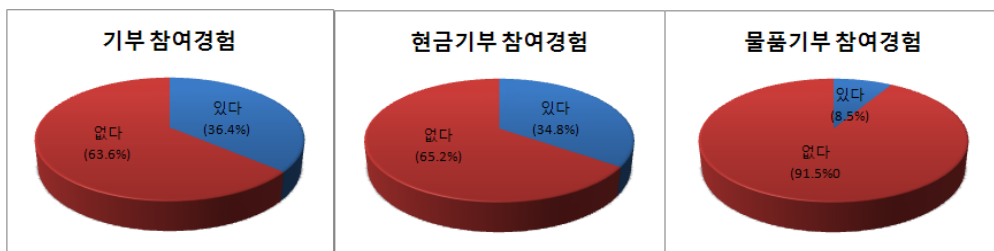
[그림 2-2] 개인의 기부실태 파악 개요

1) 기부 동향

여기서는 우선 기부 참여율 변화의 추이와 성, 연령 등 인구사회특성별 참여율 그리고 기부한 경로별 참여율 등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기부 참여율 추이

2011년에 실시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2010.7.15. ~ 2011.7.14.) 동안 13세 이상 인구 중 36.4%가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현금과 물품 각각의 기부경험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여, 34.8%는 현금을, 8.5%는 음식, 옷, 장난감 등의 물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현재 일반적으로 물품보다 현금의 형태로 기부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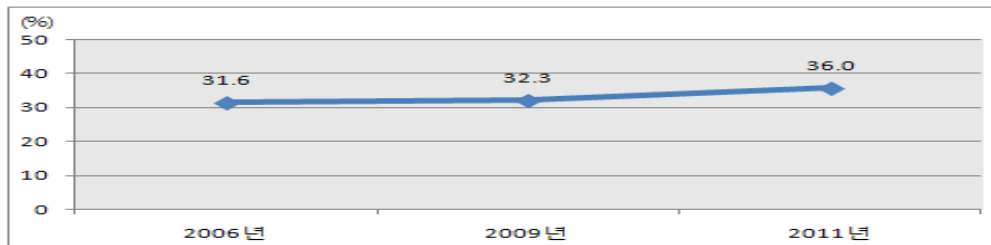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3] 기부 참여현황 : 2011



「사회조사」에 기부 관련 항목이 처음 도입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참여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 31.6%, 2009년 32.3% 2011년 36.0%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은 2009년에 비해 참여율이 3.7%p가 증가하여 2006년과 2009년 사이 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해일(쓰나미) 피해를 돕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부를 많이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1년 기부 참여율 36.0%는 15세 이상 인구의 결과로 앞서 [그림 2-3]에서 제시한 13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수치(36.4%)와 다르다. 이는 2011년부터 조사대상이 기존의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 가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2006년, 2009년 결과와 시계열 비교를 하기 위함이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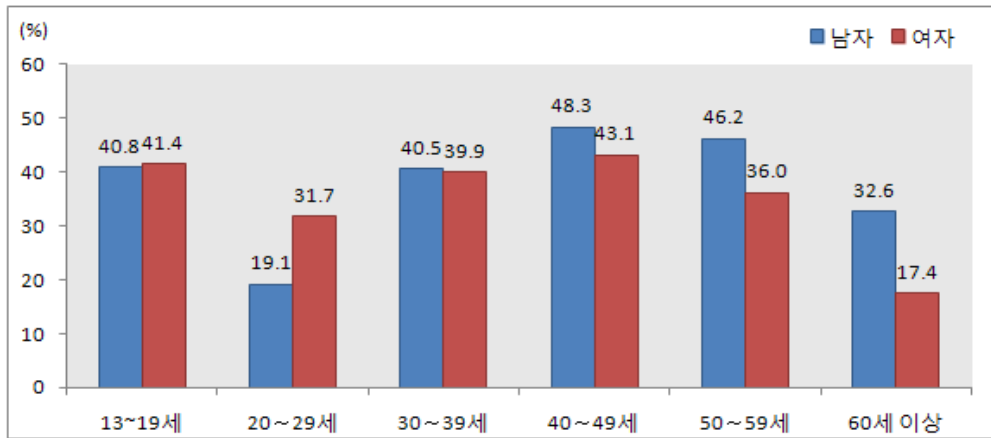
[그림 2-4] 기부 참여율 추이(15세 이상) : 2006-2011

나) 인구사회특성별 기부 참여율

① 성 및 연령별 참여율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남자(38.7%)가 여자(34.2%)보다 더 많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40대가 45.7%로 가장 높고 이어서 50대(41.1%), 30대(40.2%) 순으로 나타나 중장년층의 기부 참여율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10대 또한 41.1%로 청소년의 참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25.5%)인 청년층과 60세 이상(24%) 고령층의 참여는 다른 세대에 비해 낮았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기부에 참여하지만 연령별로 남자와 여자의 참여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자의 기부 참여율은 31.7%로 같은 연령대 남자(19.1%)에 비해 12.6%p나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후부터는 모두 남자의 참여율이 여자에 비해 높고, 성별 참여율차이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증가하여 60세 이상의 경우 남자(32.6%)의 참여율은 여자(17.4%)에 비해 15.2%p나 더 높게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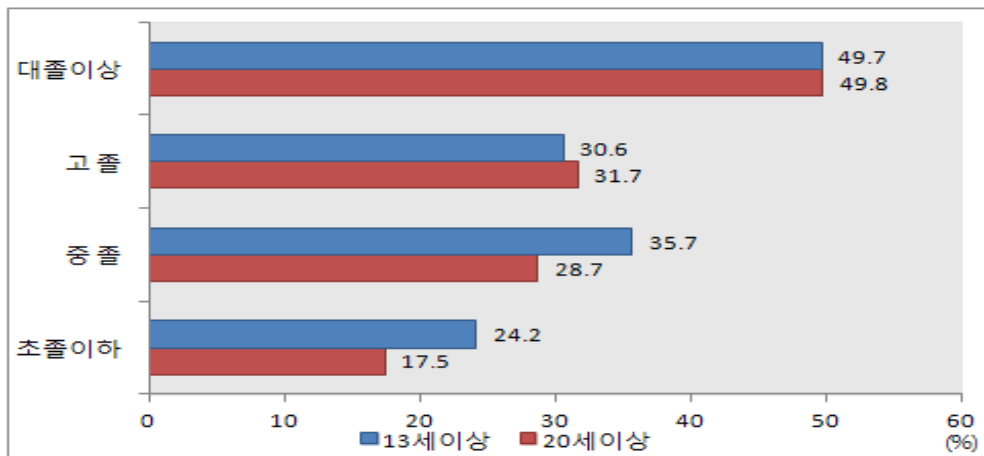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5] 성 및 연령별 기부 참여율 : 2011

② 교육정도별 참여율

대졸 이상 인구 중 과반에 가까운 49.7%가 기부한 경험이 있고, 중졸자와 고졸자는 각각 35.7%와 30.6%이고, 초졸 이하인 경우 24.2%로 가장 낮았다. 이때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를 제외하고 20세 이상 성인만 대상으로 다시 교육정도에 따라 얼마나 기부에 참여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의 경우도 역시 대졸 이상의 참여율(49.8%)이 가장 높고 초졸 이하(17.5%)가 가장 낮으나, 13세 이상 인구 기준과 달리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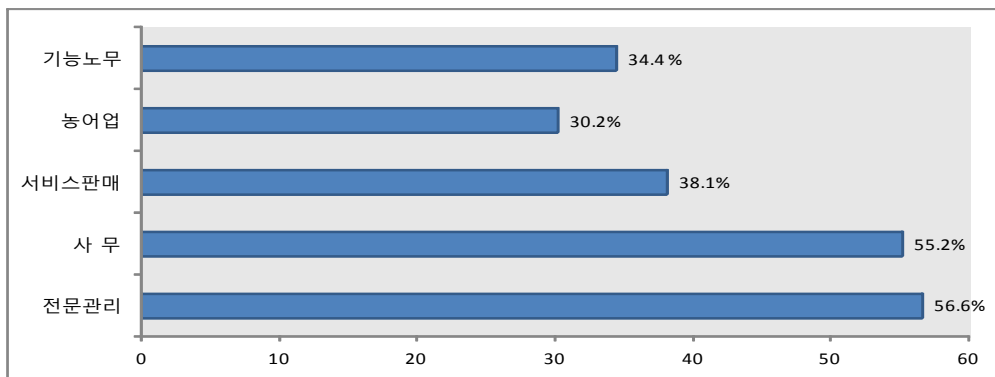
[그림 2-6] 교육정도별 기부 참여율(13세/20세 이상) : 2011



고졸자의 참여율이 중졸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부를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한다.

③ 직업 및 소득정도별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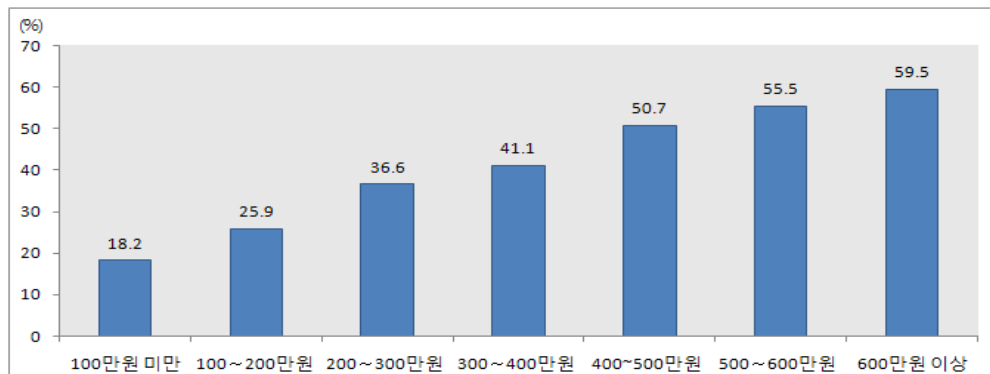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부하였고, 농어업의 경우 가장 참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7] 직업별 기부 참여율 : 2011

또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기부 참여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59.5%로 가장 높고,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1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 참여율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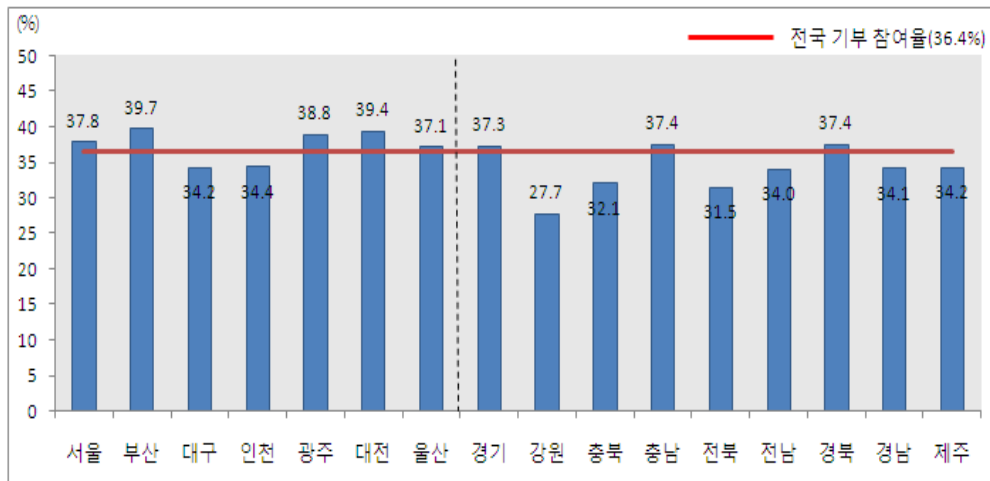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8] 소득별 기부 참여율 : 2011

④ 지역별 참여율

지역별 기부 참여율을 살펴보면, 부산(39.7%)과 대전(39.4%)이 가장 높고, 강원이 27.7%로 가장 낮았다. 서울과 6개 광역시는 대구와 인천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평균(36.4%) 이상이고, 나머지 9개 도의 경우 경기, 충남, 경북 외에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나 시도 간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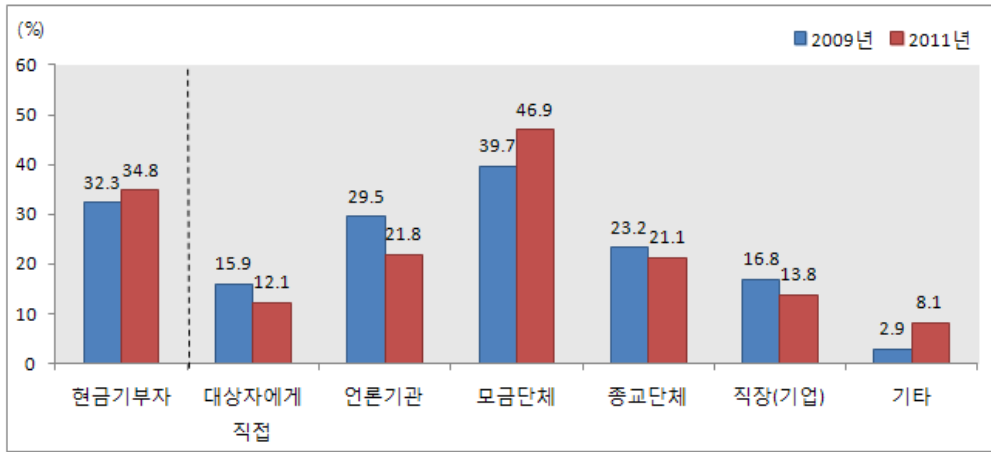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9] 지역별 기부 참여율 : 2011

다) 기부경로별 기부 참여율

나이가 2011년 기부경로별 기부 참여율을 2009년과 비교하면 [그림 2-10]과 같다. 2009년과 2011년 모두 ‘모금단체’를 통해 가장 많이 기부하였고,¹⁵⁾ 이어서 ‘언론기관’과 ‘종교단체’ 등의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는 모금단체를 통한 기부가 46.9%로 2009년의 39.7%와 비교해 7.2%p나 증가하였다.

15) 이때 2011년의 현금기부 경로별 참여정도를 2009년 현금과 물품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기부를 대상으로 경로를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이는 2011년에는 현금이나 물품을 모두 포함하여 기부를 했는지 여부를 우선 파악한 후, 기부자를 대상으로 현금기부와 물품기부 각각에 대해 어느 경로로 하였는지 조사하여 2009년과 같이 전체기부의 경로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2009년 조사항목의 ‘사회복지단체’ 경로는 2011년에 ‘모금단체’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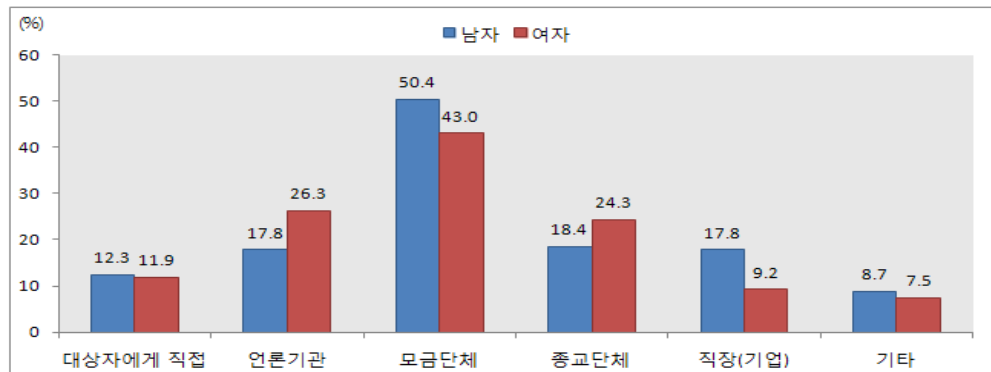


- 주 : 1) 단, 2009년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기부도 함께 조사한 결과임
- 2) ‘대상자에게 직접’은 다른 경로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보육원, 양로원, 의료기관, 환경단체, 소비자 보호단체 등 공익사업 단체에 직접 후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타’는 ‘대상자에게 직접’, ‘언론기관’ 등 선택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학교에서 모금한 경우를 포함한다.
- 3) 기부경로는 복수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2-10] 기부경로별 현금기부 참여율 : 2009,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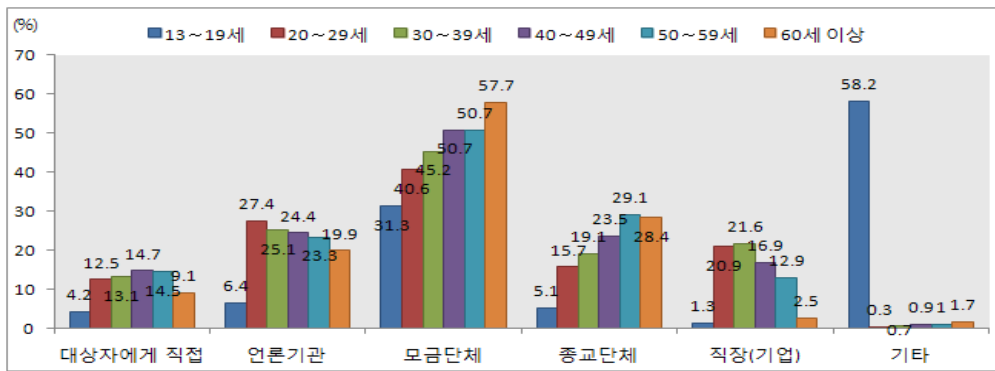
2011년에 남자는 여자에 비해 ‘모금단체’와 ‘직장(기업)’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현금을 기부하였고, 여자는 ‘언론기관’과 ‘종교단체’를 많이 활용하여 성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기부경로에 차이가 있었다.



- 주 : 1) 기부경로는 복수응답임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11] 성 및 기부경로별 현금기부 참여율 : 2011

또한 각 연령대에서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현금을 기부하였지 살펴보면 [그림 2-12]와 같다. 10대의 경우 ‘기타’가 58.2%로 다른 연령대와 명확히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다. 10대 외에 모든 연령대에서는 ‘모금단체’를 통해 가장 많이 기부에 참여하였고, 특히 40대 이상은 과반 이상이 그러하였다. 20~30대는 ‘언론기관’과 ‘직장(기업)’, 40대 이상은 ‘종교단체’를 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많이 기부하여, 연령대에 따라 기부할 때 주로 활용하는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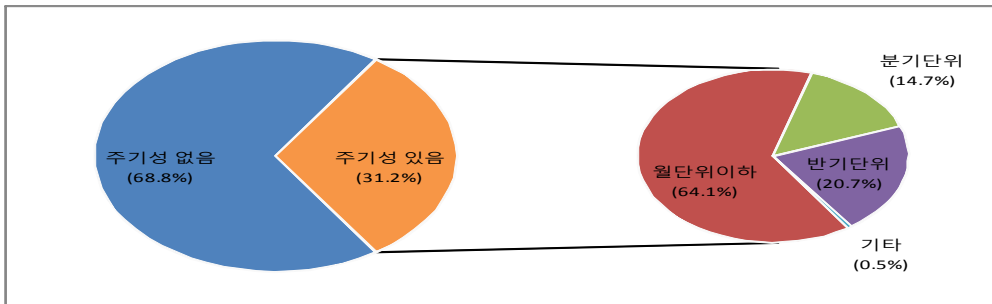


주 : 1) 기부경로는 복수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12] 연령 및 기부경로별 현금기부 참여율 : 2011

라) 정기적 기부

얼마나 정기적¹⁶⁾으로 기부했는지도 현금과 물품 각각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2011년 현금기부자 중 31.2%는 주기적으로 참여하였고, 주로 월 단위 이하(64.1%)로 참여하였고, 이어서 반기 단위(20.7%)와 분기 단위(14.7%)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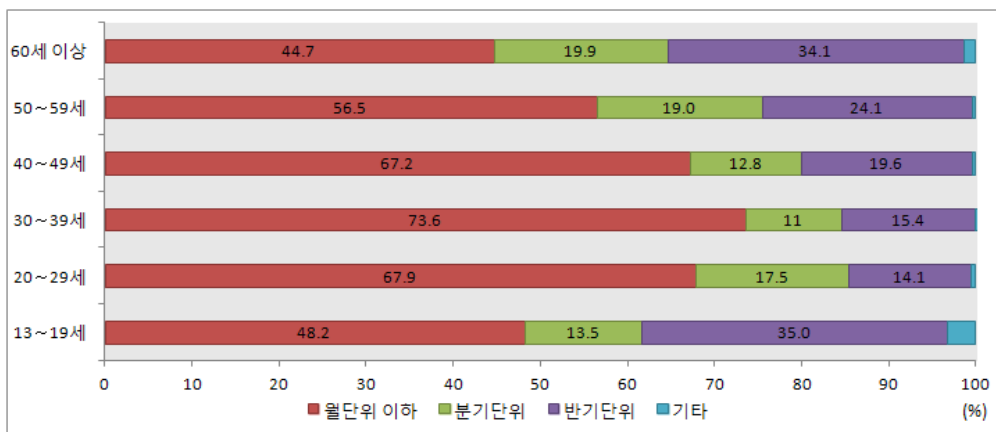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13] 정기적 현금기부 : 2011

16) 기부경로가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짧은 주기 기준으로 응답한다(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지침서」,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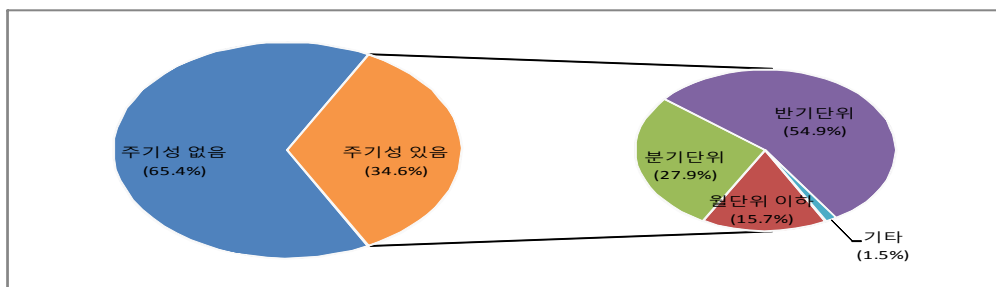
이때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기부하는지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층이 주기적으로 기부하는 비율(9.3%)이 가장 낮고, 40대까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주기적인 기부 참여율도 함께 높아지다가(20대 32.4%, 30대 37.9%, 40대 39.9%) 50대(32%)부터 다시 감소하여 60대는 23.3%로 나타났다. 10대와 60세 이상은 주기적인 기부 참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월 단위 이하 비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반면 주기적인 기부 참여율이 높은 20~40대는 월 단위 이하로 기부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14] 연령별 정기적 현금기부 : 2011

한편 현금 이외에 물품기부자는 34.6%가 주기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인 54.9%가 반기 단위로 물품기부를 하였고, 이어서 분기 단위(27.9%)와 월 단위 이하(15.7%)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15] 정기적 물품기부 : 2011

2) 기부 규모

여기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결과도 활용하여 개인의 기부 규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세통계연보』의 세무자료를 통해 개인의 기부금 총액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조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현금을 평균 몇 회, 어느 정도 기부하였는지, 마지막으로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마다 비영리단체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전하였는지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가) 기부총액⁷⁾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있는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각각의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료를 통해 개인의 기부총액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개인의 기부금액은 근로소득자가 약 5조 1,800억원이고 종합소득자가 약 1조 9,000억원으로 이를 합산한 총 약 7조 900억원이다. 이때 법인의 기부금액(약 4조 700억원)¹⁸⁾까지 합산하면 기부총액은 약 11조 1,500억원이고, 개인이 63.53%, 법인이 36.4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9년 이후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액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개인의 기부금액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 대 법인의 기부금액 비율은 1999년 약 3:7에서 2000년 이후부터는 약 6:4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2-4〉 개인과 법인의 연도별 기부금 신고현황 : 1999-2011

(단위 : 조원, %)

구분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개인	근로소득자	0.80	2.70	3.20	3.58	4.15	4.64	4.86	5.18
	종합소득자	0.05	0.28	0.54	0.74	1.28	1.51	1.67	1.90
	소계	0.85	2.98	3.74	4.32	5.44	6.15	6.53	7.09
	비율	29.31	63.81	66.51	63.62	62.06	63.99	65.07	63.53
법인	금액	2.05	1.69	1.88	2.47	3.33	3.46	3.50	4.07
	비율	70.69	36.19	33.49	36.38	37.94	36.01	34.93	36.47
총 계	2.90	4.67	5.62	6.79	8.76	9.61	10.03	11.15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손원익, 『비영리분야 통계의 실태와 통계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2013.

17) 『비영리분야 통계의 실태와 통계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손원익, 2013)의 39-42p.의 서술을 참고하였다.

18) 법인의 기부 실태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부 이후에 살펴볼 예정이나, 개인과 법인 각각의 기부금액 변화 추이에 대해 비교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서 함께 서술하고자 한다.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각각의 기부금 신고현황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표 2-5>, <표 2-6>과 같다. 우선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부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442만 8,33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당 기부금액은 약 117만원으로 2007년 약 119만원, 2008년 약 118만원에 비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총계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1년 기부인원 수가 132만927명으로 전체 기부인원(442만 8,337명)의 29.8%를 차지하나, 기부금액은 약 2조 7,287억원으로 근로소득자 전체(약 5조 1,800억원)의 과반 이상인 52.6%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인당 기부금액은 2007년 약 201만원에서 2011년 약 207만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신고현황 : 2007-2011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전 근로소득자			급여총계 상위 10%		
	기부인원	기부금액	1인당 기부금액	기부인원	기부금액	1인당 기부금액
2007	3,483,207	4,154,752	1.19	1,076,944	2,163,011	2.01
2008	3,634,599	4,274,666	1.18	1,132,563	2,240,943	1.98
2009	3,931,704	4,637,220	1.18	1,190,227	2,429,950	2.04
2010	4,118,176	4,855,563	1.18	1,271,731	2,576,554	2.03
2011	4,428,337	5,184,963	1.17	1,320,927	2,728,684	2.07

주 : 1) 해당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자의 신고실적을 기준으로 함

2) 급여총계는 내국인의 경우 소득명세와 비과세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은 제외)을 합한 것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종합소득자의 기부인원과 기부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기부인원은 68만 9,252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기부금액은 약 276만원으로 2007년 약 256만원에서 2008년 약 251만원으로 감소한 후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종합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2011년 기부인원 수가 21만 9,792명으로 전체 기부인원(68만 9,252명)의 31.9%를 차지하고, 기부금액은 약 1조 2,551억원으로 전체 기부총액(약 1조 9,017억원)의 66%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인당 기부금액은 2007년 약 541만원에서 2008년 약 517만원으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약 571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2-6〉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신고현황 : 2007-2011

(단위 : 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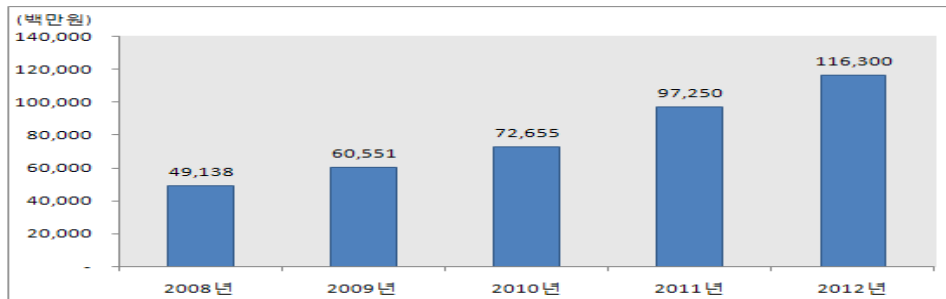
구분	전 종합소득자			종합소득 상위 10%		
	기부인원	기부금액	1인당 기부금액	기부인원	기부금액	1인당 기부금액
2007	500,354	1,283,316	2.56	145,918	788,883	5.41
2008	557,159	1,395,708	2.51	175,542	908,004	5.17
2009	594,931	1,512,795	2.54	184,291	966,597	5.24
2010	643,969	1,673,999	2.60	202,295	1,075,289	5.32
2011	689,252	1,901,707	2.76	219,792	1,255,110	5.71

주 : 1)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함
 2) 10분위 분포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식품기부액

여기서는 보건복지부가 구축한 식품기부에 관한 DB를 통해 집계한 식품기부액 결과를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복지부로부터 식품기부 관련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주식, 부식, 식재료 등의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기부받아서 지역 내 필요한 자에게 배분하는 푸드뱅크사업을 수행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실적을 공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푸드뱅크의 총 수는 425개이고, 이는 전국푸드뱅크 1개와 광역푸드뱅크 17개, 기초푸드뱅크 280개 그리고 기초푸드마켓 127개로 구성 되어 있다('13년 3월 기준).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이 푸드뱅크에 기부한 식품의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은 1,163억원으로 2008년(491억 3,800만원)에 비해 약 2.4배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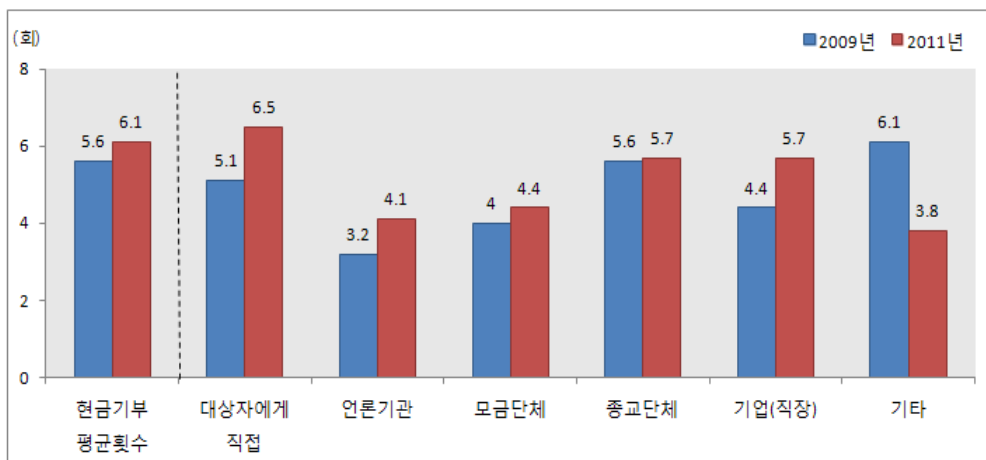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푸드뱅크사업부) 홈페이지(<http://knews.bokji.net/>).

[그림 2-16] 식품기부액 추이 : 2008-2012



나) 평균 기부 횟수 및 금액

지금부터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기부자가 평균 몇 번 기부하였고, 기부한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11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현금을 기부한 사람은 평균 6.1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2009년 5.6회에 비해 0.5회 증가하였다. 기부경로별로 보면 ‘대상자에게 직접’이 6.5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종교단체’와 ‘기업(직장)’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 : 1) 단, 2009년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기부도 함께 조사한 결과임

2) 기부경로는 복수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2-17] 현금기부횟수 : 2009, 2011

나아가 2011년에 현금기부자는 1인당 평균 16만 7천원을 기부하였다. 평균 현금기부액은 도시지역과 남자가 농어촌지역과 여자보다 많고, 대졸 이상, 전문관리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경제력이 있는 40~50대가 가장 많고 10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3세 이상 인구 1인당 평균 현금기부액은 5만 8천원으로 현금기부자 1인당 평균액보다 적었다.

〈표 2-7〉 인구사회특성별 평균 현금기부액 : 2011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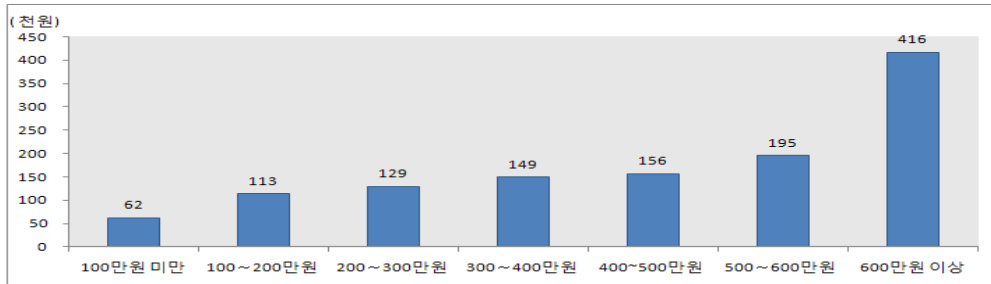
구분		현금기부 인구 1인당	13세 이상 인구 1인당	기부경로					기타
				대상자 직접	언론 기관	모금 단체	종교 단체	기업 (직장)	
계		167	58	355	33	96	239	133	38
지역별	도 시(동 부)	171	61	354	31	102	238	141	35
	농어촌(읍면부)	148	45	360	45	73	247	91	59
성별	남 자	187	70	436	38	90	263	157	58
	여 자	144	46	259	29	104	218	81	11
연령별	13~19세	17	7	41	8	27	47	22	5
	20~29세	118	28	149	23	115	187	81	43
	30~39세	160	61	206	30	120	256	99	231
	40~49세	210	92	358	37	113	257	171	120
	50~59세	234	92	592	38	83	253	119	873
	60세 이상	185	42	505	41	81	225	649	236
교육 정도별	초졸이하	44	10	129	21	22	141	50	10
	중 졸	58	20	169	20	37	173	61	8
	고 졸	149	43	320	25	80	217	87	178
	대졸이상	245	117	431	43	149	275	155	593
직업별	전문관리	304	167	524	51	155	294	207	996
	사 무	188	100	319	35	121	257	109	81
	서비스판매	175	63	375	25	118	216	89	115
	농어업	91	26	448	17	29	155	21	314
	기능노무	111	37	223	20	50	231	85	203
혼인 상태별	미 혼	82	24	186	22	82	161	90	6
	배우자 있음	202	80	390	37	104	257	146	405
	사 별	139	24	765	25	41	171	207	86
	이 혼	125	37	240	16	81	187	115	67

주 : 1) 기부경로는 복수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기부경로별 평균 현금기부액을 살펴보면, ‘대상자에게 직접’이 35만 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종교단체’, ‘기업(직장)’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지역과 남자,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직장)을 통한 평균 기부액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50대, 대졸이상자, 전문관리직 종사자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각각의 경우는 기타 경로를 통한 평균 기부액이 전체와 비교해 매우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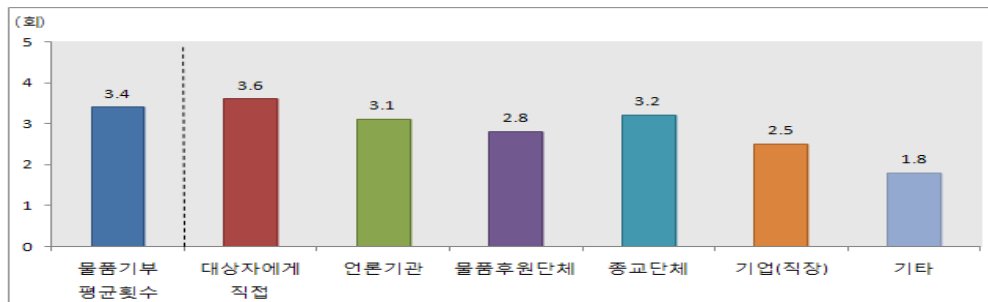
또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현금기부액도 증가하였다.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적인 현금기부액은 41만 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6만 2천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 기부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하였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18] 소득별 현금기부금액 : 2011

한편 현금 이외에 음식, 옷, 장난감 등의 물품을 기부한 사람은 평균 3.4회를 기부하였다¹⁹⁾. 현금기부와 마찬가지로 ‘대상자에게 직접’이 3.6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종교단체’와 ‘언론기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 : 1) 기부경로는 복수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19] 물품기부회수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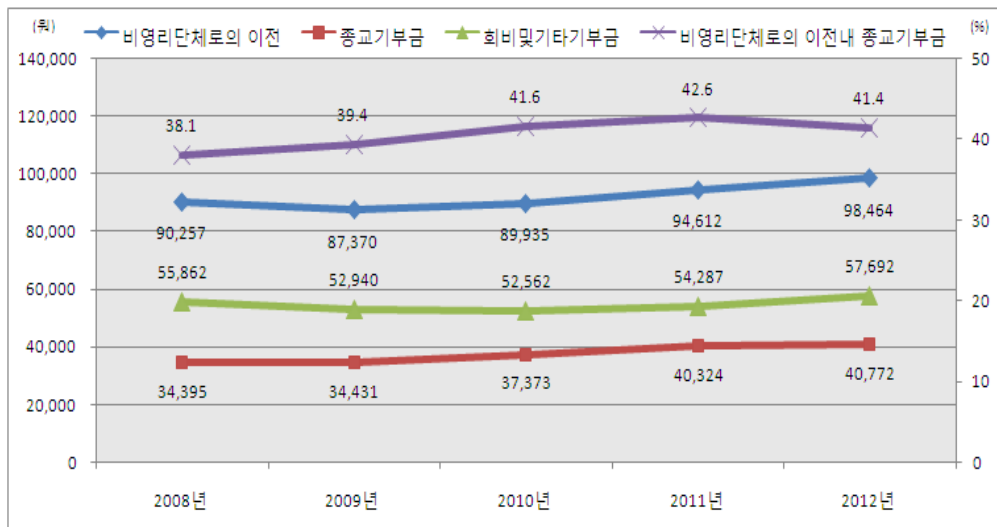
다)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액 :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기부금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월 단위로 조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종교기부금’과 ‘회비 및 기타기부금’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에 대한 가구의 평균 지출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회비 및 기타기부금’에는 사회단체나 모금단체에 대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부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노조, 종종, 상조회 등에 대한 회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가구의 평균

19) 2011년부터 물품기부와 현금기부를 별도로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나 물품기부의 경우 기부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기부액을 파악할 때는 이러한 한계를 미리 인지하고, 전체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규모에서 ‘종교기부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소추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가구당 월평균 비영리단체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아래 [그림 2-20]과 같다.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액은 200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98,464원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을 구성하는 ‘종교기부금’과 ‘회비 및 기타기부금’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각각 40,772원, 57,692원이다. 종교기부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회비 및 기타기부금액은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다 201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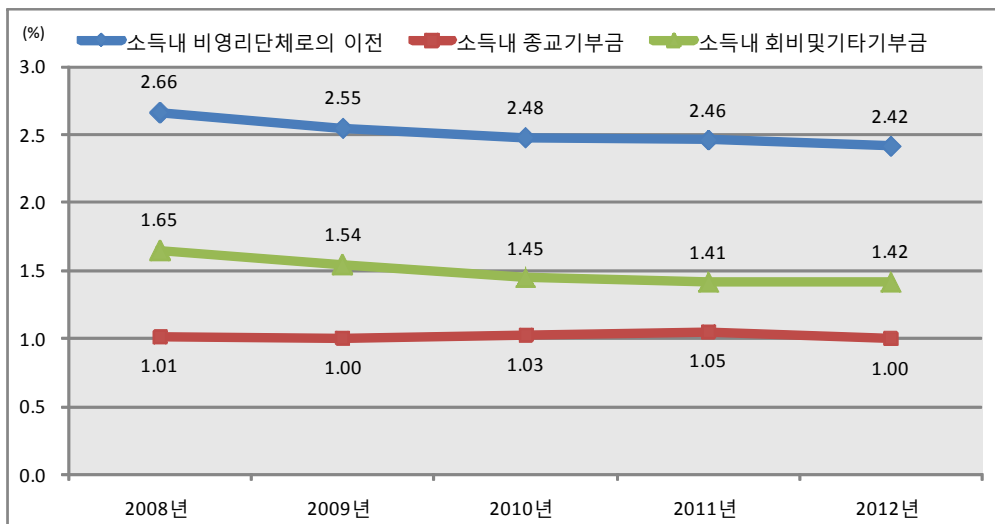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2-20]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액(전국, 2인 이상) : 2008-2012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액 중 종교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1.4%로 지난 2008년 (38.1%)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재부의 보도참고자료(2009.7.8.)에 따르면 개인기부금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가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동향조사」의 ‘회비 및 기타기부금’에는 일반적인 기부금 개념 이외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고, 이 영역에 대한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좀 더 일반적인 기부금 개념에 적합한 지출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회비 및 기타기부금’의 구성을 세분화하여 회비의 규모를 분리해낼 필요가 있다.



한편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큰 변화는 없으나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 2-20]에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보다 소득이 더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2%이며, ‘종교기부금’과 ‘회비 및 기타기부금’은 각각 1%와 1.42%로 나타났다.



주 : 1) 가구당 월평균 소득(전국, 2인 이상)은 2008년에 3,390,738원, 2009년에 3,432,021원, 2010년에 3,631,713원, 2011년에 3,841,586원, 2012년에 4,076,876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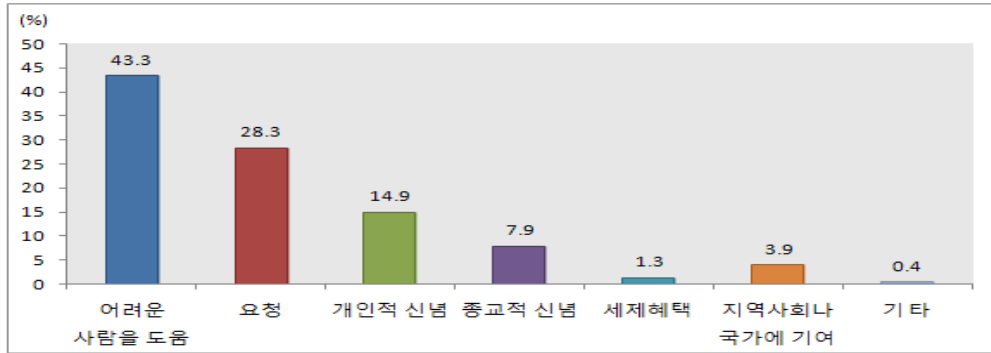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2-21] 소득내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액(전국, 2인 이상) : 2008-2012

3) 기부 인식 및 태도

가) 기부이유 및 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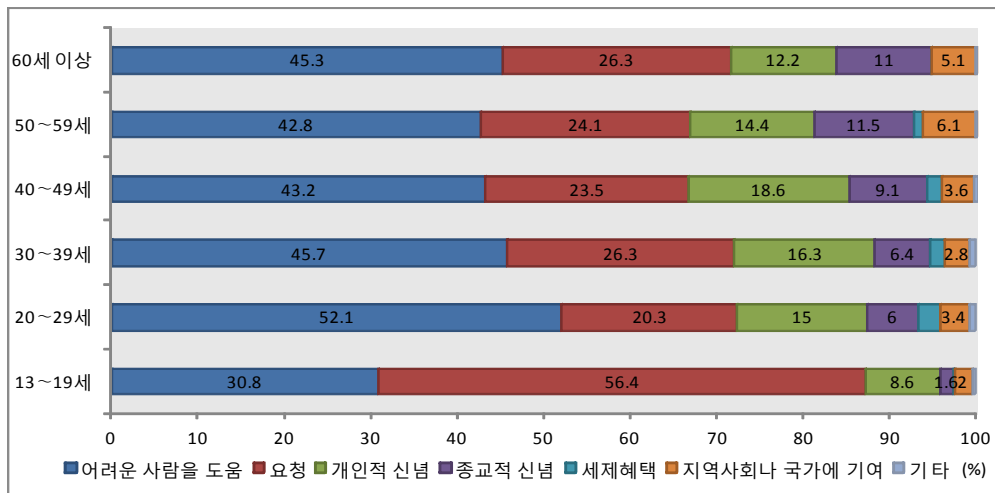
2011년에 실시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기부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43.3%)’ 이유로 가장 많이 기부하였고, 이어서 ‘기부단체나 직장 등의 요청을 받아서(28.3%)’, ‘개인적 신념 때문(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22] 기부 이유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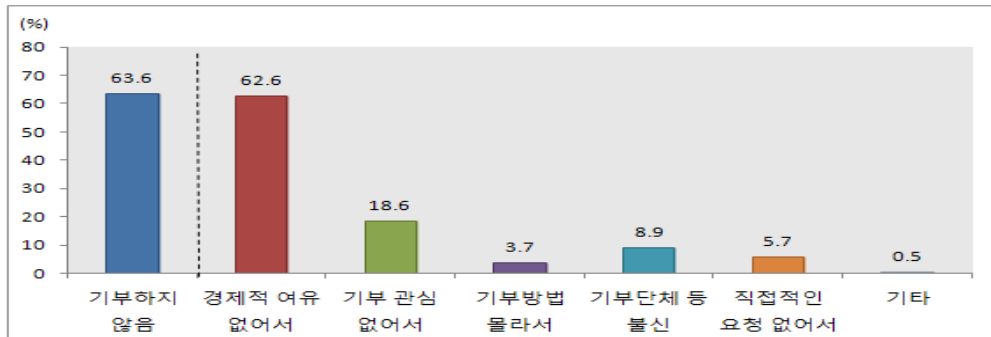
한편 10대 청소년은 ‘기부단체나 직장 등의 요청을 받아서’ 기부한 경우가 과반이 넘는 56.4%로 가장 많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는 30.8%이고 ‘개인적 신념 때문’은 8.6%에 불과하였다. 10대 외의 다른 연령에서는 모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이유로 가장 많이 기부하고, ‘개인적 신념’과 ‘종교적 신념’때문인 경우도 1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다른 세대에 비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거나 개인적인 신념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 보다 모금단체나 학교와 같은 외부의 요청에 의해 주로 기부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23] 연령별 기부 이유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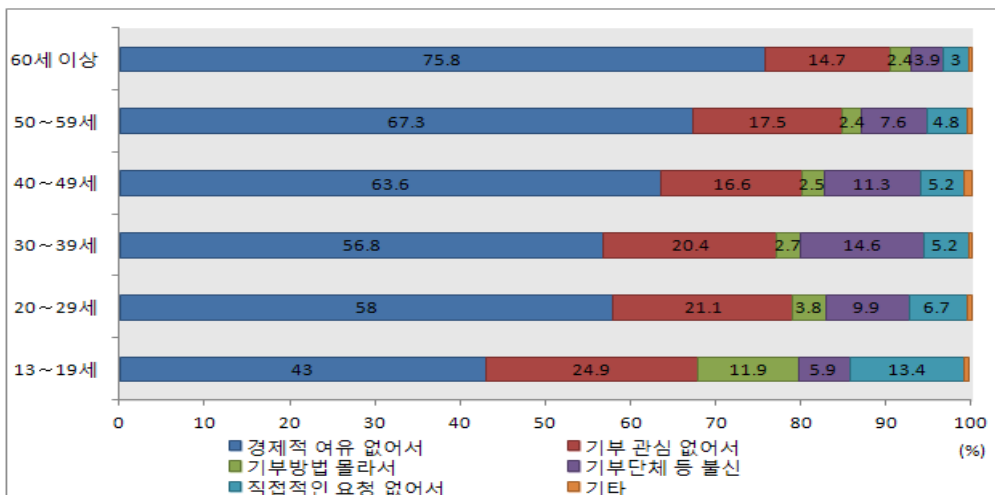
기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 기부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2.6%)’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18.6%)’,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24] 기부하지 않은 이유 : 2011

특히 10대의 경우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24.9%)’와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13.4%)’, ‘기부방법을 몰라서(11.9%)’ 등의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10대 청소년은 다른 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데 앞에서 살펴본 [그림 2-23]의 연령별 기부한 이유와 함께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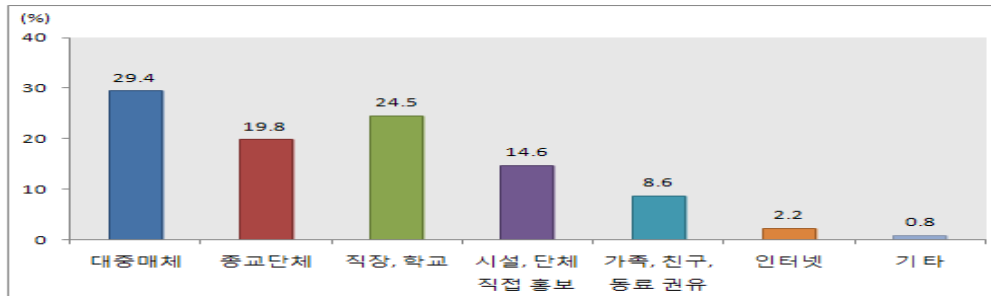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25] 연령별 기부하지 않은 이유 : 2011

나) 기부대상 인지경로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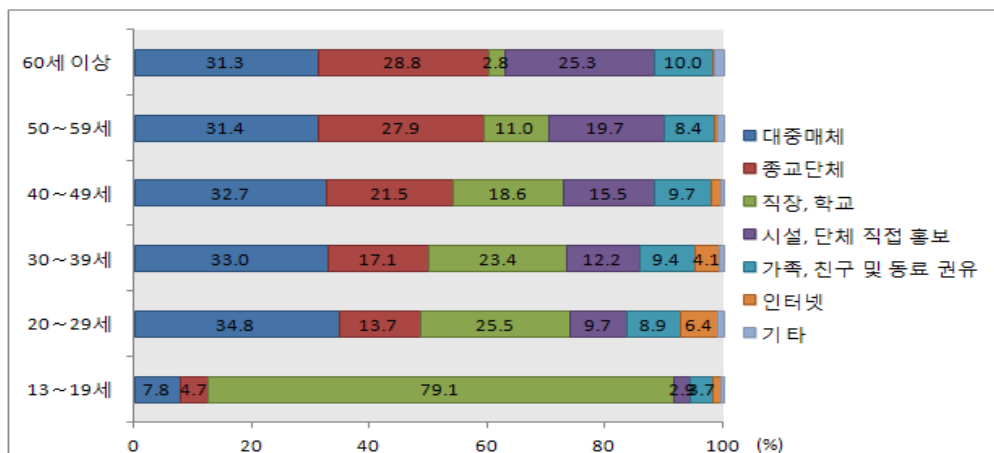
기부대상은 ‘대중매체’를 통해 인지한 경우가 29.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직장·학교(24.5%)’, ‘종교단체(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26] 기부대상 인지경로 : 2011

단, 10대는 대다수인 79.1%가 ‘직장·학교’를 통해 기부할 대상을 인지하였고, 60세 이상의 경우 ‘종교단체’와 ‘시설, 단체 직접 홍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대와 30대는 ‘인터넷’을 통해 인지한 경우가 각각 6.4%와 4.1%로 전 연령대 평균(2.2%)보다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기부 대상을 인지하는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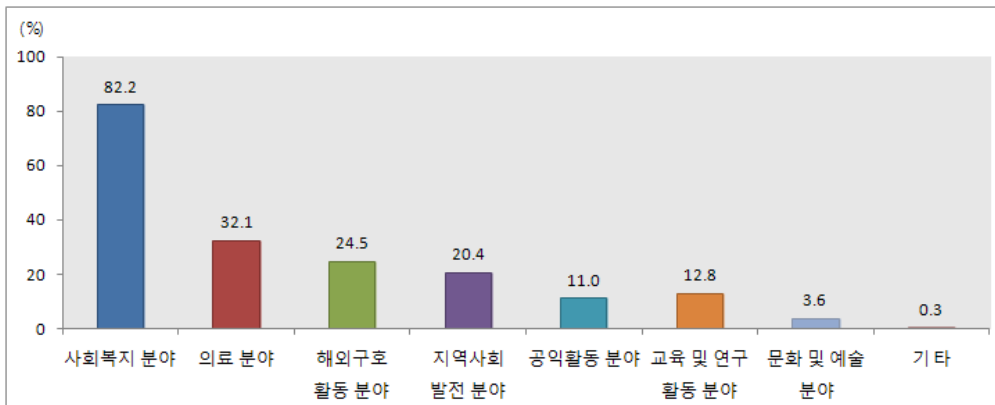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27] 연령별 기부대상 인지경로 : 2011

20) 기부대상이 여러 개인일 경우 가장 많이 기부한 단체나 개인을 기준으로 응답한다(통계청, 『사회조사지침서』, 2011).

다) 기부 희망분야

기부자가 기부를 희망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8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의료분야(32.1%)’, ‘해외구호활동분야(24.5%)’, ‘지역사회발전분야(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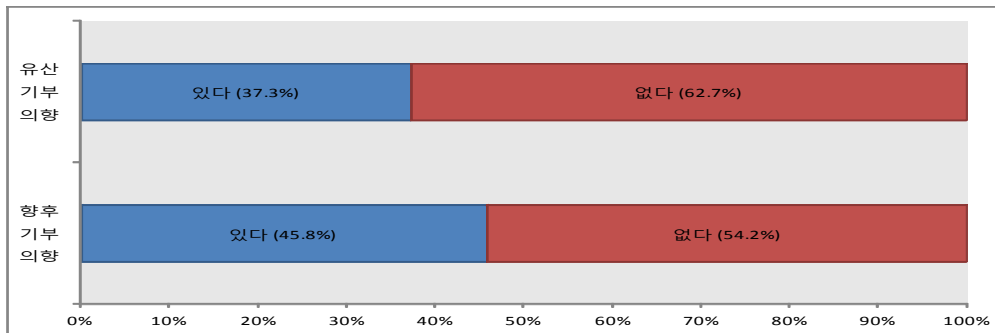


주 : 1) 기부 희망분야는 복수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28] 기부 희망분야 : 2011

라) 향후 기부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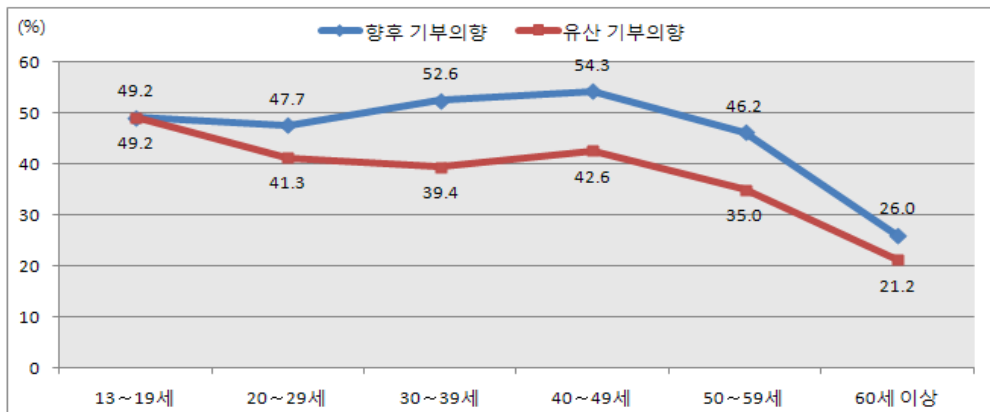
기부자를 포함한 전체 13세 이상 인구 중 45.8%는 향후 1년 이내에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할 의향이 있고, 37.3%는 향후 여건이 허락한다면 유산의 일부라도 기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29] 향후 기부 의향 : 2011

한편 향후 기부 의향은 40대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40대가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난 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60세 이상에서는 26%에 그쳤다. 유산기부는 10대는 과반에 가까운 49.2%가 의향이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감소하여 60세 이상의 경우 21.2%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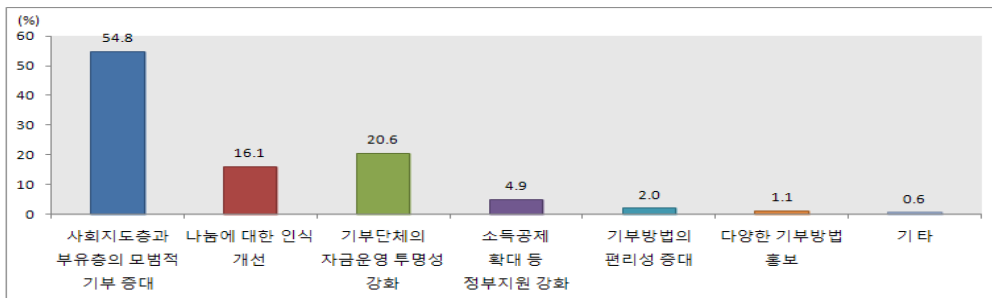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30] 연령별 향후 기부 의향 : 2011

마) 기부문화 확산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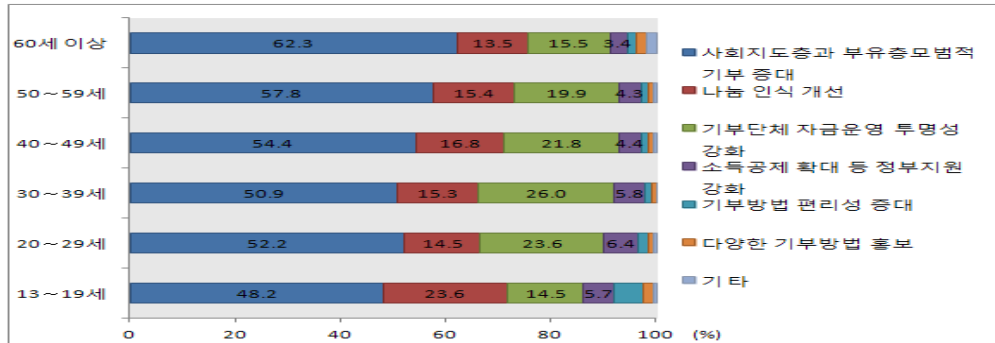
역시 기부자를 포함한 전체 13세 이상 인구 중 54.8%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20.6%)’, ‘나눔교육, 대중 캠페인 등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31] 기부문화 확산 필요사항 : 2011

이때 대부분의 연령층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에 이어서 ‘기부 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10대의 경우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23.6%)’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차이를 보였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32] 연령별 기부문화 확산 필요사항 : 2011

4) 기부여부별 특성

지금까지 주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기부의 동향과 규모, 그리고 기부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2011년에 실시한 「사회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기부에 참여한 집단이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나 현재 본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 등에서 기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특성이 있는지 집단별 차이를 파악해보았다.

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우선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부자는 31.1%가 자원봉사활동을 했지만 기부하지 않은 자는 그보다 훨씬 적은 13.4%만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여, 기부자가 비기부자보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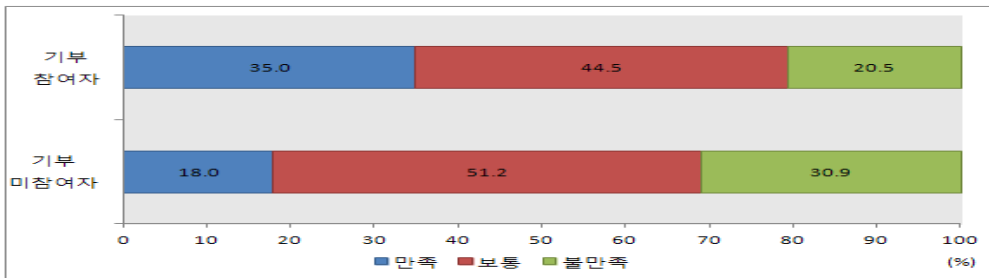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33] 기부 여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2011

나) 삶에 대한 만족감

기부자는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본인의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35%로 18%에 불과한 비기부자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삶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경우는 비기부자(30.9%)가 기부자(20.5%)보다 10.4%p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부자는 비기부자와 비교하여 본인의 현재 삶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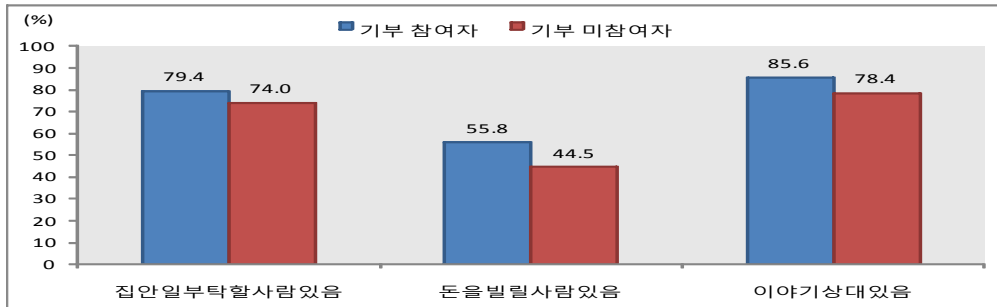


주 : 1)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 ‘불만족’은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인 경우를 합산한 비율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원자료 분석.

[그림 2-34] 기부 여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감 : 2011

다) 사회적 관계망 및 단체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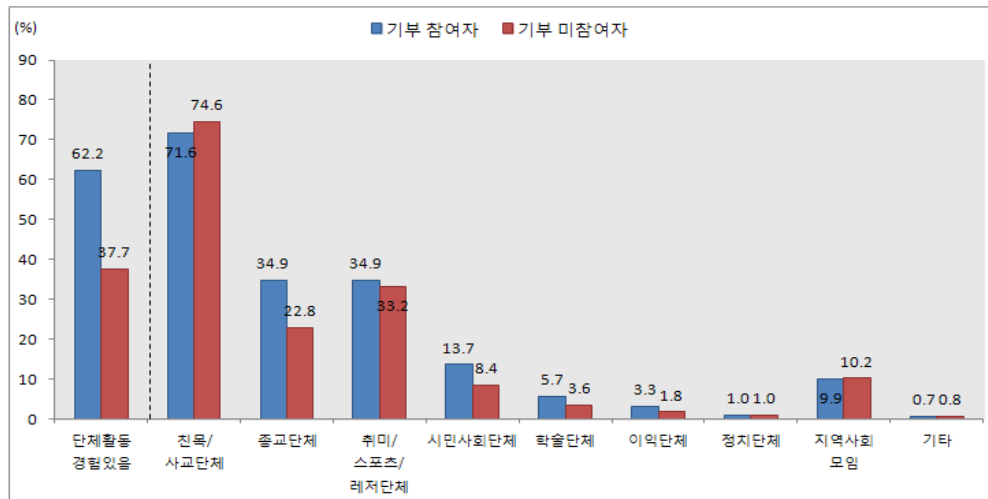
기부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비기부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4%이고, ‘돈을 빌릴 사람’과 ‘이야기 상대’가 있는 경우는 각각 55.8%, 85.6%로 같은 조건에서 비기부자에 비해 모두 높았다. 기부자가 주위로부터 도움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회적 관계망을 더 튼튼하게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 : 1) 단,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지는 조사대상이 19세 이상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원자료 분석.

[그림 2-35] 기부 여부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 2011

기부자는 기부하지 않은 사람보다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활동한 단체의 종류를 비교해보면 기부자는 비기부자에 비해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등)와 지역사회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기타 외의 모든 종류의 단체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 특히 기부자는 종교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연구회 등)와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였다.



주 : 1) 참여한 단체의 종류는 복수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원자료 분석.

[그림 2-36] 기부 여부에 따른 단체 참여 : 2011

나. 기업

지금부터는 기업의 기부 실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법인의 기부총액과 규모 및 업태별 기부금액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단, 『국세통계연보』는 법인의 기부에서 영리법인(기업)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경련의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에서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기부액과 기부처 및 분야별 기부현황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1) 기부 참여 및 규모

가) 『국세통계연보』(국세청)의 기부금 규모²¹⁾

<표 2-8> 법인의 기부금 신고현황 : 2007-2011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신고법인 수	법인당 평균기부액	기부금		
			소계	법정·특례	지정
2007년	372,141	8.93	3,325,078	1,973,408	1,351,670
2008년	398,331	8.48	3,378,565	1,843,187	1,535,378
2009년	419,420	8.25	3,460,709	1,895,287	1,565,422
2010년	440,023	7.96	3,504,459	2,001,711	1,502,748
2011년	460,614	8.83	4,068,045	2,423,360	1,644,685
법인규모별	460,614	8.83	4,068,045	2,423,360	1,644,685
일반법인	91,514	39.20	3,587,473	2,251,220	1,336,253
중소기업	369,100	1.30	480,572	172,140	308,432
상장·비상장	460,614	8.83	4,068,045	2,423,360	1,644,685
상장법인	1,781	1000.74	1,782,312	932,797	849,515
비상장법인	458,833	4.98	2,285,733	1,490,563	795,170

주 : 1) 2011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2) 법인세 신고서 주요계정명세서상 회사계상 금액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1년 기부금공제 신고법인 수는 46만 614개이고 기부금 공제액은 약 4조 680억원에 이른다. 법정·특례기부금은 약 2조 4,234억원이고 지정기부금은 약 1조 6,44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이후 기부금공제 신고법인의 수와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법인당 평균 기부액은 2007년 약 893만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에 이르러 약 883만원으로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신고법인을 법인의 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2011년 기준 기부금 총액은 중소기업보다 일반 법인이 약 7.5배 가량 더 많고, 법인당 평균 기부액 또한 일반법인이 약 3,920만원으로 약 130만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에 비해 약 30배 많았다.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과 그렇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기부금 공제 신고현황을 비교해보면, 상장법인보다 비상장법인이 기부금 총액은 약 1.3배 더 많지만 신고법인의 수는 약 258배나 더 많아서 법인당 평균 기부액은 상장법인이 약 10억원이고, 비상장법인은 약 498만원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인의 업태별 기부금 공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9>와 같다.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등 총 14개로 분류한 업태별 2011년 기부금액을 비교하면, 기부총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약 1조 3,272억원이고 이어서 금융·보험업과 서비스업 등의

21) 『비영리분야 통계의 실태와 통계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손원익, 2013) 43-46p.의 서술을 참고하였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당 평균 기부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보건업(약 7,237만원)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신고법인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표 2-9〉 업태별 기부금 신고현황 : 2011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신고법인 수	법인당 평균기부액	기부금		
			소계	법정·특례	지정
계	460,614	8.83	4,068,045	2,423,360	1,644,685
농·임·어업	7,344	0.86	6,309	1,301	5,008
광업	991	2.33	2,311	1,047	1,264
제조업	99,716	13.31	1,327,220	602,723	724,497
전기·가스·수도업	1,224	49.69	60,817	40,173	20,644
건설업	80,684	2.99	241,431	123,056	118,375
도매업	93,466	2.07	193,581	73,415	120,166
소매업	13,839	6.10	84,400	41,622	42,778
음식·숙박업	4,289	3.71	15,891	8,118	7,773
운수·창고·통신업	28,345	10.32	292,540	162,153	130,387
금융·보험업	15,430	63.58	980,967	722,713	258,254
부동산업	19,843	4.46	88,407	56,220	32,187
서비스업	88,170	7.59	669,165	501,228	167,937
보건업	1,431	72.37	103,557	88,976	14,581
기타 업종	5,842	0.25	1,449	615	834

주 : 1) 2011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2) 법인세 신고서 주요계정명세서상 회사계상 금액임

3) 업태분류는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한 것으로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실적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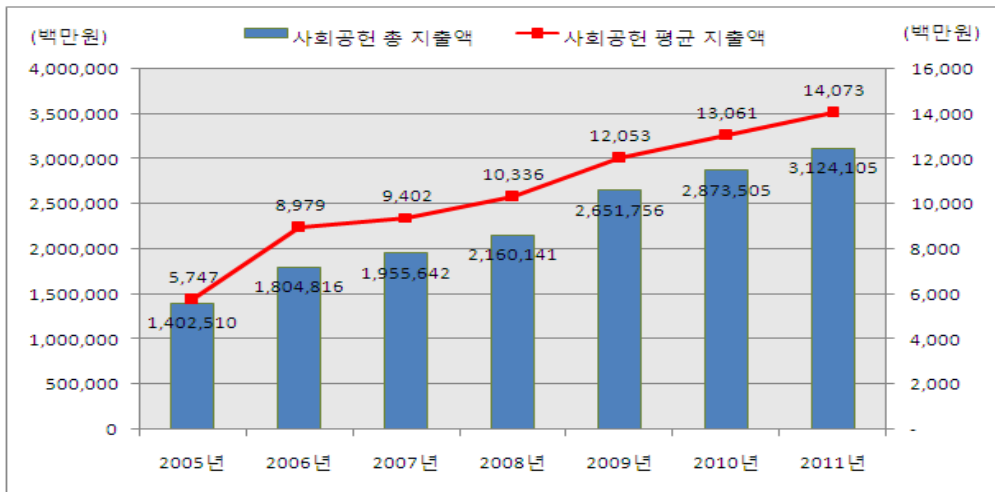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 밖에 『국세통계연보』에서는 법인의 수입금액(revenue), 자산(assets), 소득금액(taxable income) 그리고 과세표준(tax base) 규모와 흑자법인 10분위에 따라 기부금 신고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수입금액이 1조를 초과하는 법인 355개가 약 2조 7,516억원을 기부하여 법인 전체 기부금(약 4조 680억원)의 약 67.6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이나 소득 등의 경우에도 규모가 큰 극소수의 법인이 전체 기부금의 과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전경련)의 기부금 규모

전경련은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총비용’은 기부금과 직접사용 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이때 ‘기부금’은 사회공헌활동의 목적 하에 현금, 현물, 시설개방 등의 형태로 외부에 지출하는 비용이고, ‘직접사업 비용’은 직접운영프로그램 비용²²⁾과 임직원의 자원 봉사에 사용된 경비를 의미한다²³⁾.

우선 기부금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직접사업 비용을 포함한 사회공헌활동 총비용을 보면, 2011년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에 응답한 222개 기업은 2011년 한 해 동안 총 3조 1,241억 50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2010년(2조 8,735억 500만원) 대비 약 8.7% 증가한 것이고, 2009년(2조 6,517억 5,600만원)에 비해서는 약 17.8% 증가한 것이다. 1개사당 평균 사회공헌비용은 140억 7,300만원으로 2010년(130억 6,100만원)에 비해 약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총 지출액과 평균 지출액은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11년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6%이고,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출비율은 3.2%를 기록하였다.



주 : 1) 해당 조사항목에 응답한 기업 기준(2005년 244개사, 2006년 202개사, 2007년 208개, 2008년 209개사, 2009년 220개사, 2010년 220개사, 2011년 222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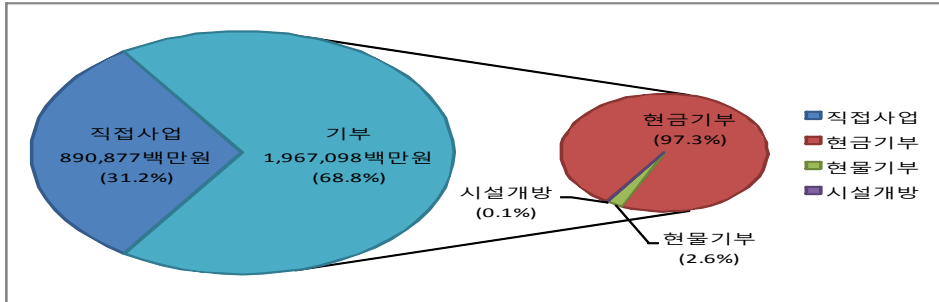
자료 : 전경련,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2012.

[그림 2-37]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현황 : 2005-2011

나아가 사회공헌활동을 비용을 구성하는 기부금과 직접사업 비용을 구분하여 각각 조사하는 세부항목에 응답한 202개 기업의 결과를 보면, 기부형태가 약 1조 9,671억원으로 전체(약 2조 8,580억원)의 6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형태별로 보면, 현금기부가 전체 기부금의 97.3%인 약 1조 9,134억원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 22) 기업에서 직접 프로그램 디자인부터 수행까지 담당하고 캠페인, 광고비 등이더라도 사회공헌적 성격인 경우 포함한다.
- 23) 전경련은 지난 2005년에 기업의 사회공헌과 관련하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한국비영리학회와 주요 10대 기업과 함께 마련하였으며, 본 백서의 사회공헌 비용 기준은 이를 기반으로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수정한 것이다(자료 : 전경련,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부록 조사표 참고사항), 2012).

현물기부가 2.6%, 시설개방이 0.1%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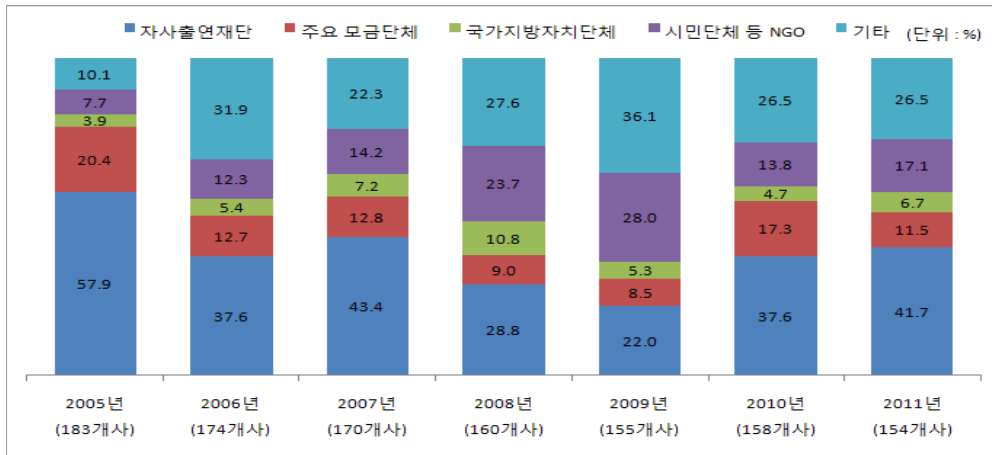
주 : 1) 해당 조사항목에 응답한 202개 기업의 결과임
 자료 : 전경련,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2012.

[그림 2-38] 기업의 기부와 직접사업 비용 지출현황 : 2011

2) 기부처 및 기부분야

가) 기부처별 기부 현황

전경련의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에서 기부처별로 지출한 금액을 조사하는



주 : 1) 해당 조사항목에 응답한 기업 기준(2005년 183개사, 2006년 174개사, 2007년 170개사, 2008년 160개사, 2009년 155개사, 2010년 158개사, 2011년 154개사)

2) '자사출연재단'은 기업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의미하며, 재단 등이 실시하는 사업경비는 포함하지 않음

3) '주요 모금단체'는 직접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기부금을 모금, 타단체에 배분하는 단체를 지칭

4) '기타'는 대학 후원금 및 장학금, 불우학생 장학금, 군대 등 위문성금, 지역행사 후원금, 세계대회 후원금 등이 포함

자료 : 전경련,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2012.

[그림 2-39] 기업의 기부처별 지출 비율 : 2005-2011

항목에 대해 2011년에 응답한 기업 154개사의 결과를 집계한 결과, ‘자사출연재단’에 대한 기부금액이 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사회공헌의 전문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해 매년 기금을 투자하는 형태의 기업재단을 설립하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기업재단에 대한 사업비 규모도 동반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에는 아산나눔재단, 에쓰오일 과학문화재단 등 신규재단이 설립된 것도 자사출연재단에 대한 기부금 규모 비율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이다(전경련, 2012).

나아가 기부처별 기부참여율 현황을 보면, 83.3%의 기업이 ‘시민단체 등 NGO’에 기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주요 모금단체’, ‘기타’ 등의 순이었다. 최근 시민단체 등 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한다(전경련, 2012). 이때 [그림 2-39]의 기부처별 기부금액 비율과 비교해보면, ‘자사출연재단’에 대해 기부한 기업의 비율(62.8%)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장 낮은 반면 기부금액은 가장 많은 41.7%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0〉 기업의 기부처별 참여율 : 2005-2011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사출연재단 (특정공익법인)	29.6	40.8	38.8	40.0	59.8	64.6	62.8
주요 모금단체 (지정기부금)	46.7	78.7	74.1	78.1	70.4	85.4	75.7
시민단체 등 NGO	45.7	50.6	60.6	73.1	62.7	72.2	83.8
국가지방자치단체	32.2	43.4	71.2	66.3	53.3	39.9	62.8
기타	43.7	69.0	74.7	71.3	63.3	48.7	67.6

주 : 1) 해당 조사항목에 응답한 기업 기준(2005년 183개사, 2006년 174개사, 2007년 170개사, 2008년 160개사, 2009년 155개사, 2010년 158개사, 2011년 154개사)

2) 기부처별 기부에 참여한 기업의 비율은 중복응답임

자료 : 전경련,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2012.

나) 기부분야별 기부 현황

전경련 백서에서 사회복지, 의료보전, 환경보전 등 총 9개 분야에 각각 지출한 기부금액을 조사하는 항목에 2011년에 응답한 기업 184개사의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교육·학교·학술연구 분야(29.0%), 기타 분야(17.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9년 53.9%에 이르렀던 사회복지 분야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2010년도부터 비중면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육에 대한



비중은 2010년에 비해 7.7%p 가량 증가하였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업들이 교육에 대한 기부를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소외계층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핵심자원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기업의 목적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영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전경련, 2012).

〈표 2-11〉 기업의 기부분야별 지출 비율 : 2005-2011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회복지	37.2	19.6	29.9	43.2	53.9	38.9	33.9
교육·학교·학술연구	45.1	34.8	36.4	20.6	25.5	21.3	29.0
문화예술 및 체육	7.4	13.8	14.9	12.3	8.7	10.9	10.9
해외지원	2.3	0.3	0.7	3.2	0.5	8.2	3.3
의료보건	2.1	12.1	9.1	4.3	5.9	0.4	0.8
환경보전	1.6	2.7	0.9	1.7	2.5	1.6	2.2
농촌지원	.	9.0	0.0	1.5	0.0	1.3	0.5
응급 및 재난 구호	1.5	2.3	1.3	0.5	0.1	0.5	1.4
기타	2.8	5.3	6.2	12.7	2.9	17.0	17.9

주 : 1) 해당 조사항목에 응답한 기업 기준(2005년 208개사, 2006년 208개사, 2007년 198개사, 2008년 175개사, 2009년 189개사, 2010년 165개사, 2011년 184개사)

2) '기타' 분야는 군부대 위문, 지역사회기금, 캠페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자료 : 전경련,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2012.

2. 자원봉사

가. 개인

지금부터는 기부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주로 활용하여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실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사회조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누가,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관한 동향과 규모,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때 자원봉사활동 규모에 대해서는 「사회조사」 외에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와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구축한 자원봉사 DB에 등록된 실적자료도 활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 여부별 특성 차이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24) 단, 사회통념상 보수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점심값, 교통비 등 실비만 받는 경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봉사시간 이수를 위한 학생의 활동은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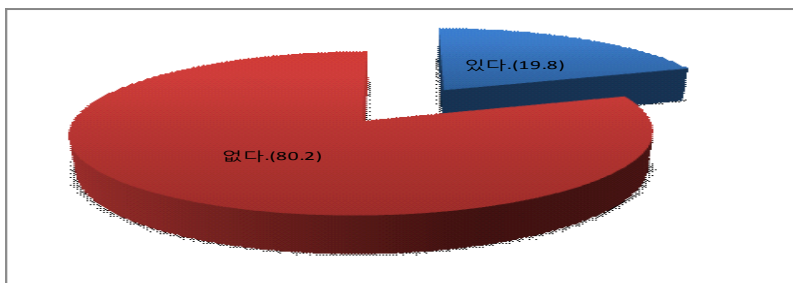
[그림 2-40] 개인의 자원봉사실태 파악 개요

1) 자원봉사활동 동향

여기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변화의 추이와 성, 연령 등 인구사회특성별 참여율, 그리고 활동한 분야별 참여율 등 전반적인 활동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추이

2011년에 실시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2010.7.15 ~ 2011.7.14.) 동안 13세 이상 인구 중 19.8%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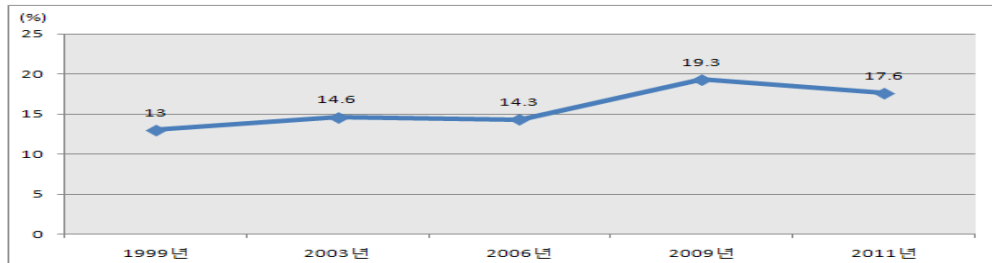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41]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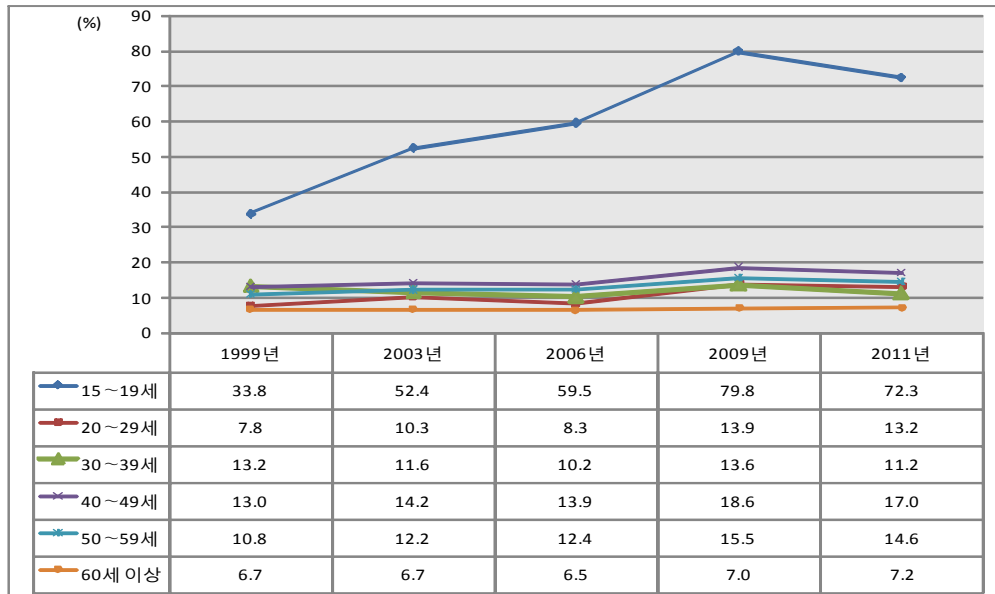
「사회조사」에 자원봉사 관련 항목이 처음 도입된 1999년 이후 2011년 까지 참여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2-42]와 같다. 이때 주의할 점은 2011년부터 조사대상이 기존의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 가구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11년에 15세 이상 인구의 참여율을 사용하여 시계열 비교를 하는 것이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2011년에는 1999년(13%) 보다는 증가하였으나 2009년(19.3%) 보다는 1.7%p 감소한 17.6%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15세 이상 인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하락은 다음의 [그림 2-43]에서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2-42]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 이상) : 1999-201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2-43]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 이상) : 1999-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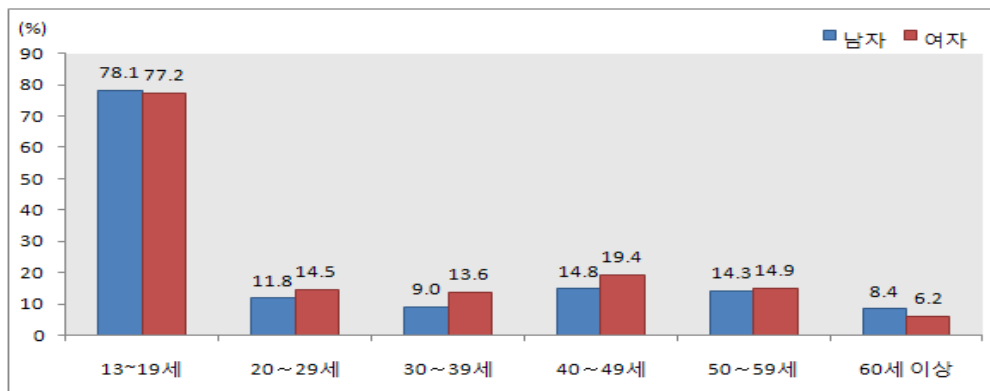
연령별 참여율 변화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011년에는 2009년에 비해 60세 이상에서 미미하게 상승(0.2%p)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낮아졌으며, 특히 15~19세의 경우 7.5%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참여율(15세 이상 기준)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1999년부터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양적인 면에서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진흥정책과 학생과 기업의 사회봉사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이후 제 1차 국가 기본계획(2008-2012)을 추진하여 자원봉사활동 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경우도 봉사활동이 학점으로 인정되고 취업에 반영되는 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학생, 직장인, 종교인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약 13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안전행정부, 2008).

나) 인구사회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① 성 및 연령별 참여율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남자(19.6%)보다 여자(20.1%)가 조금 더 많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대인 청소년의 참여율은 77.7%로 전체 평균(19.8%)보다 매우 높으나, 20대(13.2%), 30대(11.2%), 40대(17%), 50대(14.6%)는 모두 평균보다 낮고 특히 60세 이상(7.2%)의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많은 남자는 20대부터 50대까지는 여자보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낮으나, 10대와 60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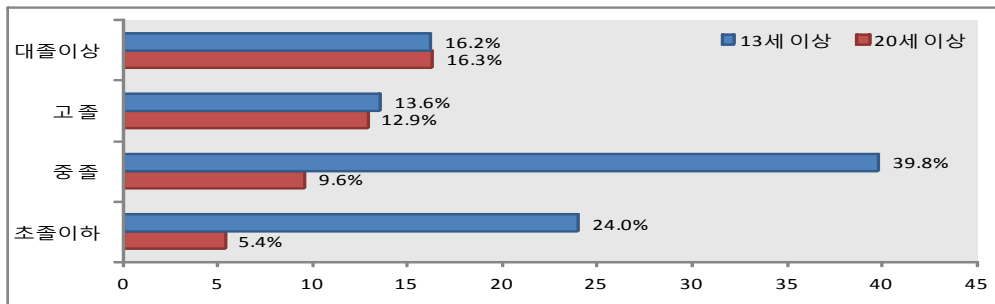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44] 성 및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2011

② 교육정도별 참여율

중졸인 인구 중 39.8%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초졸 이하의 경우도 24%로 고졸(13.6%)이나 대졸 이상(16.2%)인 인구집단보다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인식과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연령별 참여현황에서 강조하였듯이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학생의 참여율이 77.7%로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10대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성인의 경우 대졸 이상의 참여율이 16.3%로 가장 높고 초졸 이하(5.4%)가 가장 낮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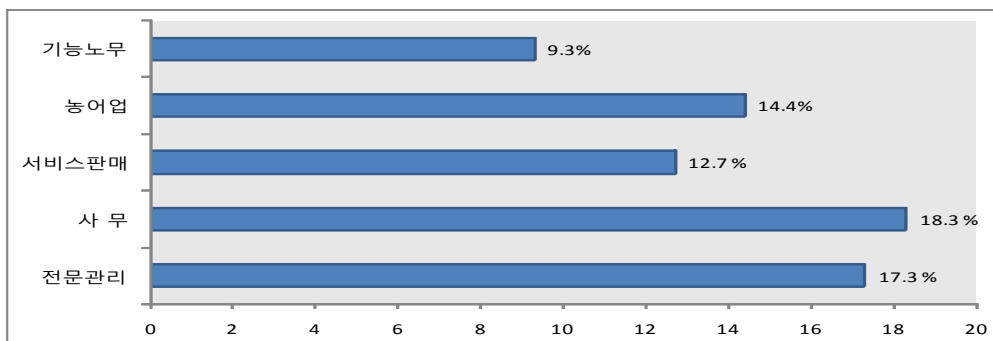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45] 교육정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3세/20세 이상) : 2011

③ 직업 및 소득정도별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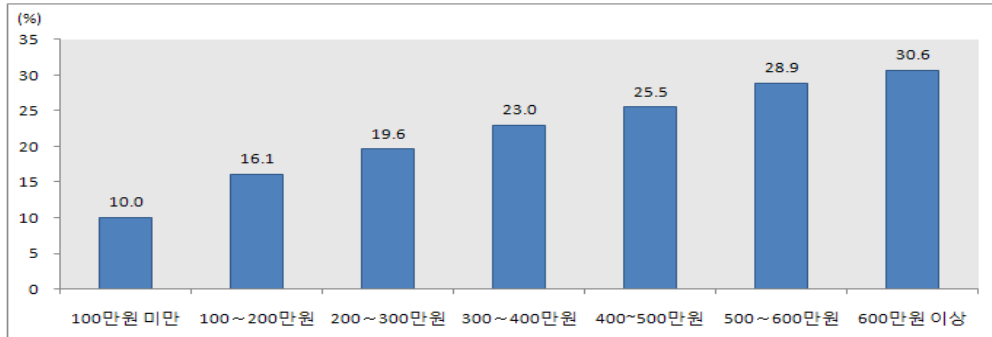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기능노무직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46] 직업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2011

또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30.6%로 가장 높고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10%로 가장 낮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참여율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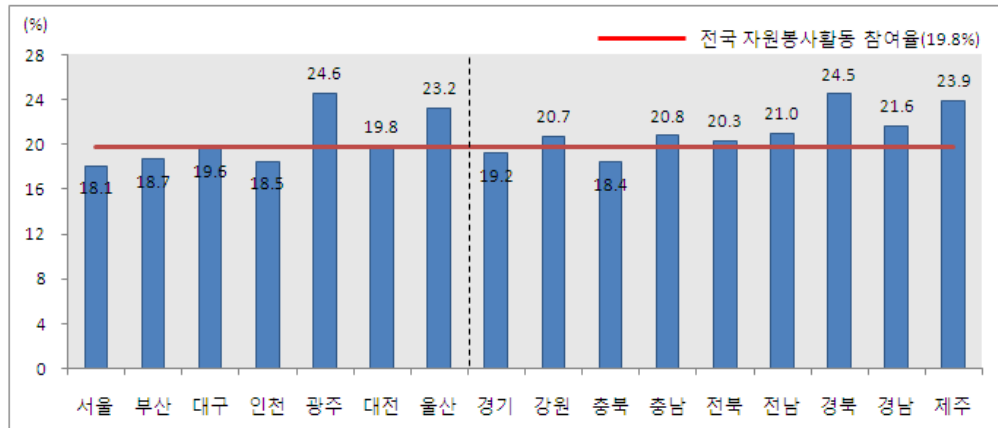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47] 소득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2011

④ 지역별 참여율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광주(24.6%)가 가장 높고 경북(24.5%), 제주(23.9%), 울산(23.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18.1%)과 충북(18.4%), 인천(18.5%), 부산(18.7%) 등은 낮게 나타났다. 서울과 6개 광역시는 광주와 울산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평균(19.8%) 이하이고, 나머지 9개 도의 경우 경기와 충북 외에는 모두 평균 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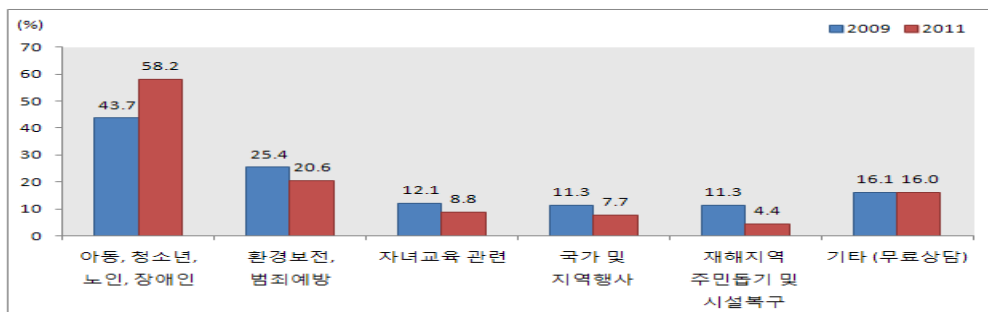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48]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2011

다)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활동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2009년과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2-49]와 같다. 2009년과 2011년 모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였고, 특히 2011년에는 절반 이상인 58.2%가 이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다. 이어서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분야’와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분야’ 등의 순으로 많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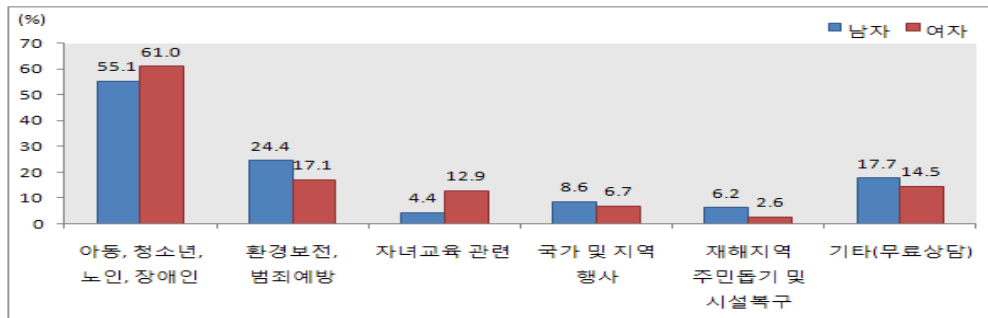
주 : 1) 단, 2009년의 경우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2) 활동분야는 복수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2-49] 활동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2009, 2011

2011년에 남자는 여자에 비해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분야’와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동하였고, 여자는 ‘자녀교육 관련 분야’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였다. 특히 여자의 경우 ‘자녀교육 관련 분야’에 12.9%가 참여하여 4.4%에 불과한 남자와 8.5%p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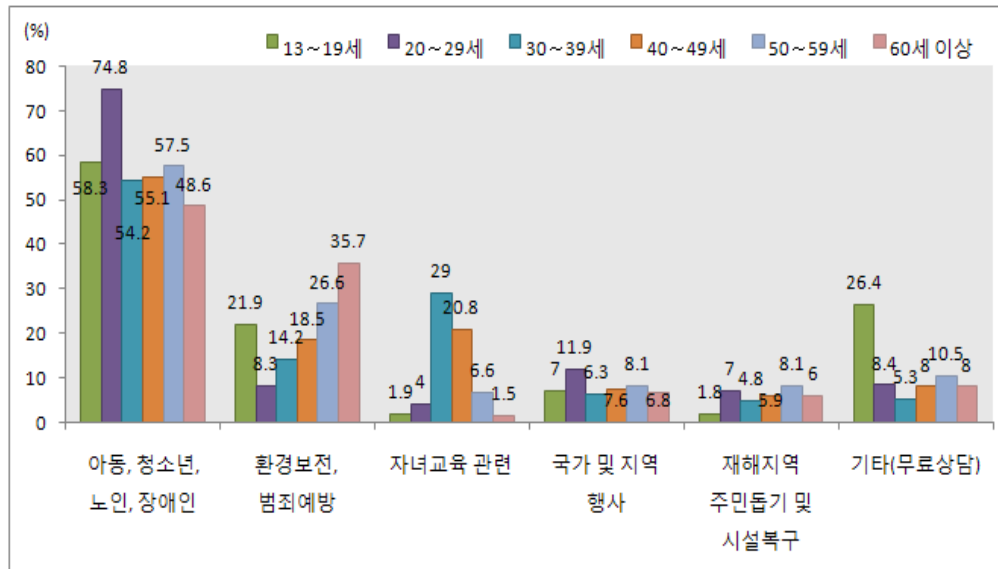


주 : 1) 활동분야는 복수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50] 성 및 활동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2011

또한 각 연령대에서 어느 분야에 많이 활동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51]과 같다. 역시 전 연령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대(74.8%)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0대는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분야’에서, 30대~40대는 ‘자녀교육 관련 분야’ 그리고 50대 이상은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분야’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이 참여하여, 연령대에 따라 주로 활동하는 분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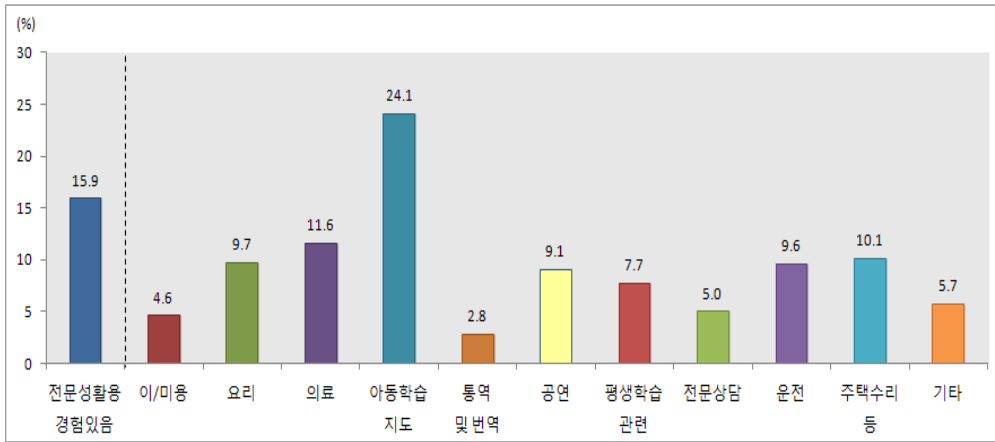
주 : 1) 활동분야는 복수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51] 연령 및 활동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2011

라)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²⁵⁾

한편 2011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 중 15.9%가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학습지도’를 한 경우가 24.1%로 가장 많았고, ‘의료’, ‘주택 수리’, ‘요리’, ‘운전’ 등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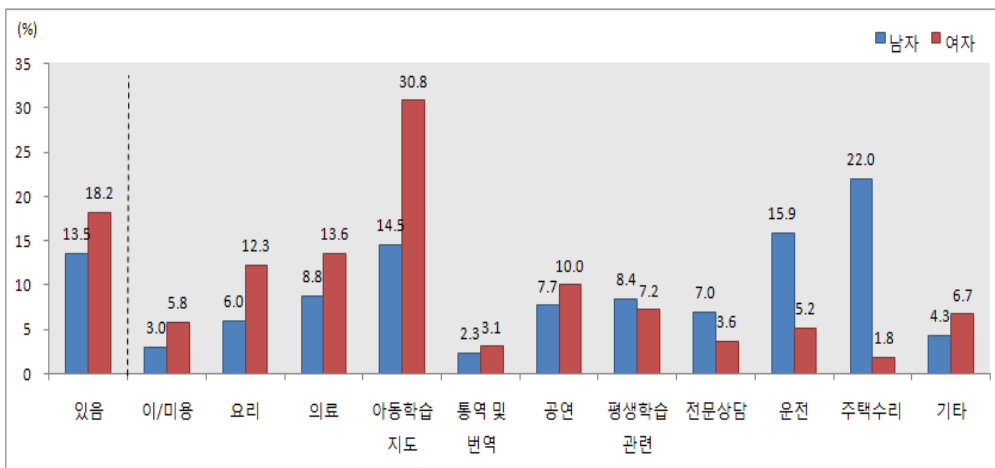
25)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란 본인의 직업, 자격증, 전공 또는 그와 관련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야와 관련한 활동을 의미하며,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한 경우는 가장 주된 활동내용을 조사한다(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지침서』, 201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52]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 2011

그리고 여자(18.2%)가 남자(13.5%)보다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아동학습지도’와 ‘의료’, ‘요리’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였고, 남자는 ‘주택수리’와 ‘운전’ 등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본인의 전문성을 주로 활용하는 분야에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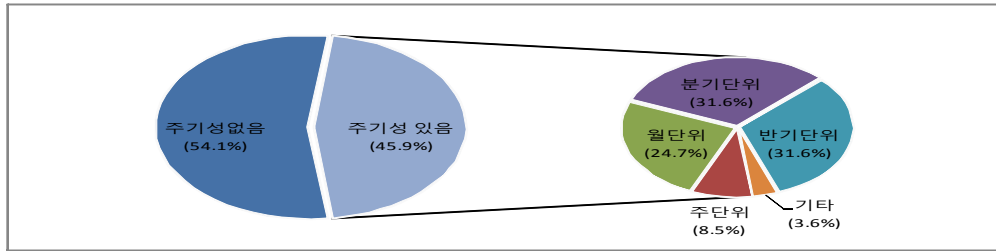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3-53] 성별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 2011

마) 정기적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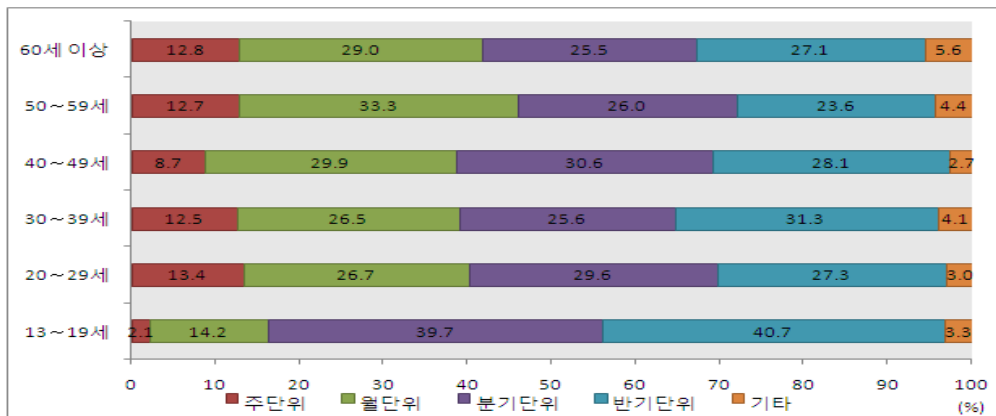
자원봉사활동자 중 45.9%는 주기적²⁶⁾으로 참여하였고, 주로 ‘분기 단위(31.6%)’ 또는 ‘반기 단위(31.6%)’로 참여하였다. ‘월 단위(24.7%)’ 또는 ‘주 단위(8.5%)’로 참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54] 정기적 자원봉사 : 2011

이 때 연령별로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참여하는지 살펴보면, 우선 10대는 33.7%에 그쳤으나 20대 44.6%, 30대 49.6%, 40대 57%, 50대 61.6%, 60세 이상은 62.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기적으로 더 많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청소년은 주기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주 단위와 월 단위 이하로 활동한 비율도 각각 2.1%, 14.2%에 불과하여 정기적인 참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55] 연령별 정기적 자원봉사 : 2011

26) 활동분야가 여러 개인 경우 가장 짧은 주기를 기준으로 응답한다(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지침서』, 2011).

2) 자원봉사활동 규모

지금부터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뿐만 아니라 「생활시간조사」, 그리고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구축한 자원봉사 DB에 등록된 실적자료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수와 횟수 및 시간 등 참여규모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가)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및 시간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평균 7.1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7.6회로 남자(6.5회)보다 더 많이 참여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평균 12.4회로 가장 많고 이어서 50대가 10.1회로 많이 참여하였고, 10대가 4.3회로 가장 적게 참여하였다. 50대 이상은 40% 이상이 6회 이상 참여하였으나, 10대의 경우 19.9%에 불과하였다.

〈표 2-12〉 인구사회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및 시간 : 2011

구분		참여횟수 및 시간 (단위 : 회, 시간, %)									
		평 균	참여횟수				평 균	참여시간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1~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2009년 ¹⁾		6.6	22.1	36.0	15.2	26.7	5.1	25.3	37.6	14.7	22.5
2011년		7.1	17.1	35.0	18.8	29.0	4.4	31.3	36.4	14.2	18.1
지역별	도 시(동 부)	7.1	18.1	34.5	18.4	28.9	4.4	31.6	37.0	13.6	17.9
	농어촌(읍면부)	7.2	12.4	37.4	20.7	29.5	4.7	30.1	33.8	16.8	19.3
성별	남 자	6.5	17.0	36.9	19.2	26.9	4.6	30.6	35.5	13.8	20.2
	여 자	7.6	17.2	33.3	18.5	31.1	4.3	32.0	37.3	14.6	16.2
연령별	13~19세	4.3	17.1	39.5	23.6	19.9	4.2	35.2	37.4	12.4	15.0
	20~29세	8.1	22.5	34.2	14.7	28.6	5.3	21.0	32.0	17.5	29.4
	30~39세	8.7	21.6	32.1	12.9	33.5	4.2	32.3	37.0	14.6	16.1
	40~49세	8.3	17.7	29.9	17.1	35.3	4.7	28.6	36.0	14.9	20.6
	50~59세	10.1	12.1	30.6	15.2	42.1	4.9	25.0	37.2	15.9	21.9
	60세 이상	12.4	10.0	33.7	14.7	41.5	4.0	37.8	34.9	15.2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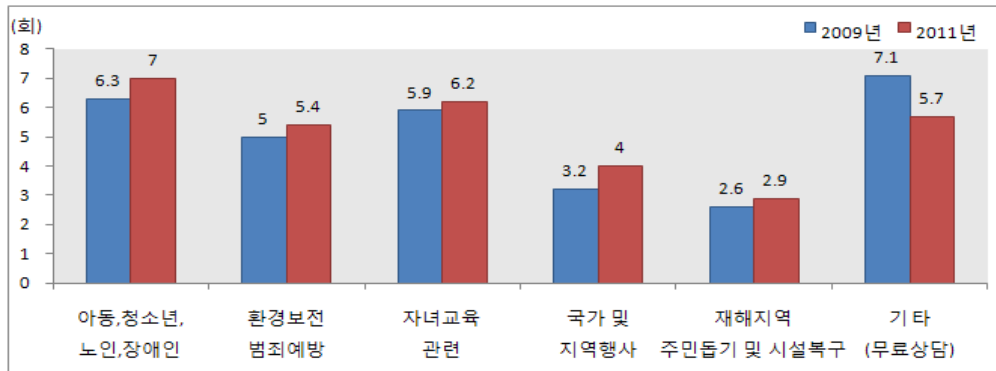
주 : 1) 단,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나눔문화) 보도자료」, 2011.

또한 자원봉사자는 한 번 참여할 때 평균 4.4시간 가량 활동하였다. 여자(4.3시간)보다 남자(4.6시간)가 평균적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참여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회당 5.3시간으로 가장 긴 시간 참여하였는데, 7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의 비율도 29.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은 평균 4시간으로 가장 낮는데, 전체의 37.8%가 1회당 1~2시간만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60세 이상 노인층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많으나, 1회당 활동한 시간은 가장 짧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자원봉사 활동분야에 대한 평균 참여횟수와 시간은 각각 다음 [그림 2-56], [그림 2-57]과 같다. 먼저 참여횟수에 대해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관련 분야(7회)’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자녀교육 관련 분야(6.2회)’,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분야(5.7회)’ 등의 순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2009년에는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분야’에 참여한 횟수(7.1회)가 가장 많았으나 2011년에는 5.7회로 감소한 반면, 이 외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2009년에 비해 2011년에 참여횟수가 소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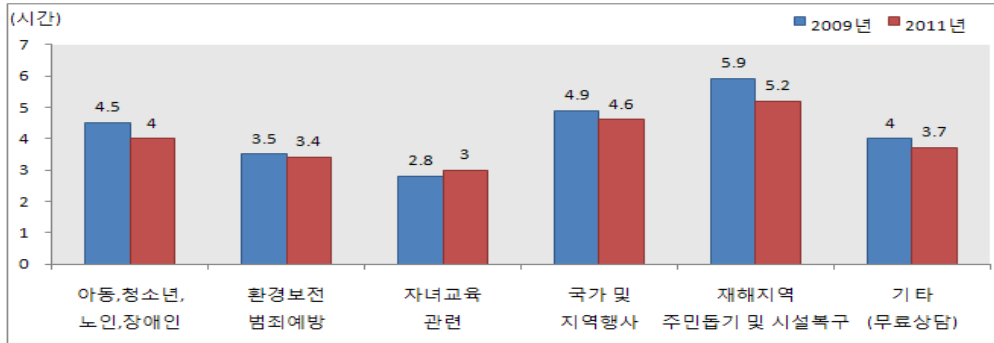
주 : 1) 단, 2009년의 경우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2) 활동분야는 복수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2-56] 자원봉사 활동분야별 평균 참여횟수 : 2009, 2011

2011년에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분야’에서 1회당 평균 5.2시간으로 가장 길게 활동하였고, 이어서 ‘국가 및 지역행사 분야(4.6시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관련 분야(4시간)’ 등의 순으로 장시간 활동하였다. 2009년에 비해 ‘자녀교육 관련 분야’에서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평균 참여시간은 감소하였다. [그림 2-56]과 [그림 2-57]을 종합하면 분야별 평균 참여횟수와 시간을 통해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분야’와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횟수는 적으나 한 번 활동할 때 길게 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주 : 1) 단, 2009년의 경우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2) 활동분야는 복수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2-57] 자원봉사 활동분야별 평균 참여시간 : 2009, 2011

※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여기서는 통계청이 「사회조사」 외에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해 조사하는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생활시간조사」는 전국의 만 10세 이상 국민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2일 동안 기록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여기서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단체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돕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9년 조사결과를 보면, 만 10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자원봉사를 하루 10분 이상 주행동²⁷⁾으로 한 사람은 모든 요일을 포함(요일 평균)하여 전체의 0.5%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조사」의 참여율(‘11년, 19.8%)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나, 이는 조사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생활시간조사」는 2일의 조사기간 내 자원봉사 참여 여부를 집계한 것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파악하는 「사회조사」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자원봉사를 주행동으로 한 사람들은 요일평균 2시간 11분을 활동하였고, 여자(2시간 14분)가 남자(1시간 54분)보다 더 길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과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아가 ‘국가 및 지역행사, 자녀교육,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재해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기타 자원봉사(헌혈 포함)’와 같은 각각의 활동분야별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의 평균시간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관련된 분야의 요일평균이 2시간 34분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3〉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율 및 시간(주행동) : 2009

(단위 : %, 시간:분)

구분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자	여자			
자원봉사 행위자 비율	0.5	0.2	0.8	0.6	0.3	0.3
행위자 자원봉사 평균시간	2:11	1:54	2:14	2:11	2:13	2:08
국가 및 지역 행사 관련	1:48	1:31	2:08	1:46	1:45	3:30
자녀교육 관련	1:14	2:30	1:12	1:16	0:46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관련	2:34	2:18	2:37	2:38	2:56	1:38
재해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1:10	1:10	-	-	1:10	-
기타 자원봉사(현형, 무료상담 등)	1:48	1:15	2:02	1:28	1:08	3:26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9.

나) 등록자원봉사자 인원 및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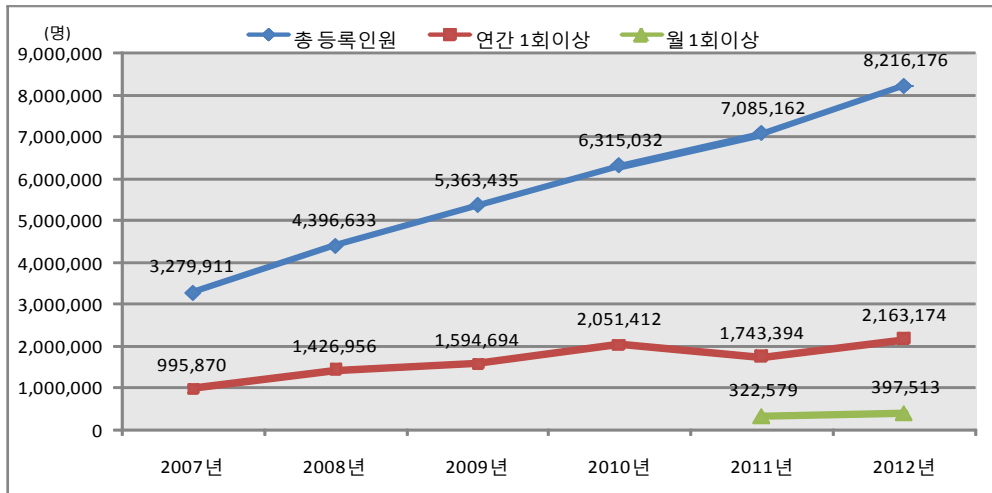
안행부와 복지부에서 각각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등록 및 실적인증 DB를 통해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인원 및 활동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단, 「사회조사」와 같이 표본을 조사하여 전체 국민의 실태를 추정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DB에 등록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을 고려해야 한다.

① 안행부 DB 등록자원봉사자 규모

우선 안행부의 자원봉사 DB인 ‘1365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행부가 매년 자원봉사 DB를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등록자료 집계하여 작성하는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현황은 [그림 2-58]과 같다. [그림 2-58]은 연도별 ‘총 등록인원’과 ‘연간 1회 이상 활동인원(실인원)’, ‘월 1회 이상 활동인원’²⁸⁾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2011년에 연간 1회 이상 활동인원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 및 활동인원 모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에 8,216,176명이 DB에 등록되어 있으며 2007년(3,279,911명)의 약 2.5배에 이른다. 그리고 총 등록인원의 약 26.3%에 해당하는 2,163,174명이 연간 1회 이상 활동하였다. 마지막으로 총 등록인원의 약 4.8%이고 연간 1회 이상 활동인원의 약 18.4%에 해당하는 397,513명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였다.

27) ‘주행동’은 10분 간격의 시간대에 한 가지 행동을 한 경우, 그 행동과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한 경우 가장 길게 한 행동이나 응답자가 주된 행동이라고 판단한 행동을 의미한다(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보도자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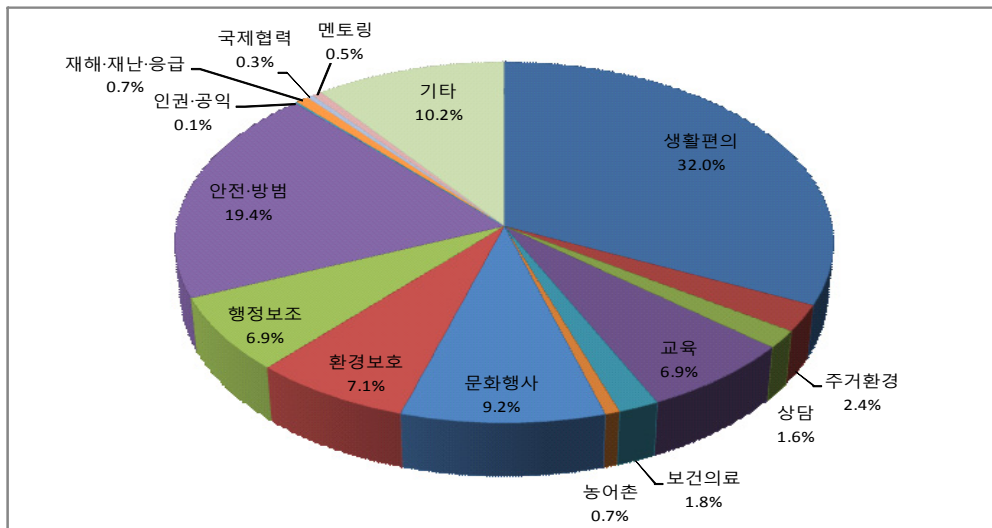
28) 『자원봉사센터 현황』에서 월 1회 이상 활동인원에 대한 집계결과는 2011년부터 제시하고 있다.



자료 :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센터 현황』, 각 연도.

[그림 2-58]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현황 : 2007-2012

한편 2012년에 활동한 총 인원(연인원)은 18,652,383명이고, 생활편의, 주거환경, 상담, 교육 등 15개 분야별 활동현황은 다음 [그림 2-59]와 같다. 생활편의(32.0%)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방법(19.4%), 기타(10.2%), 문화행사(9.2%), 환경보호(7.1%) 분야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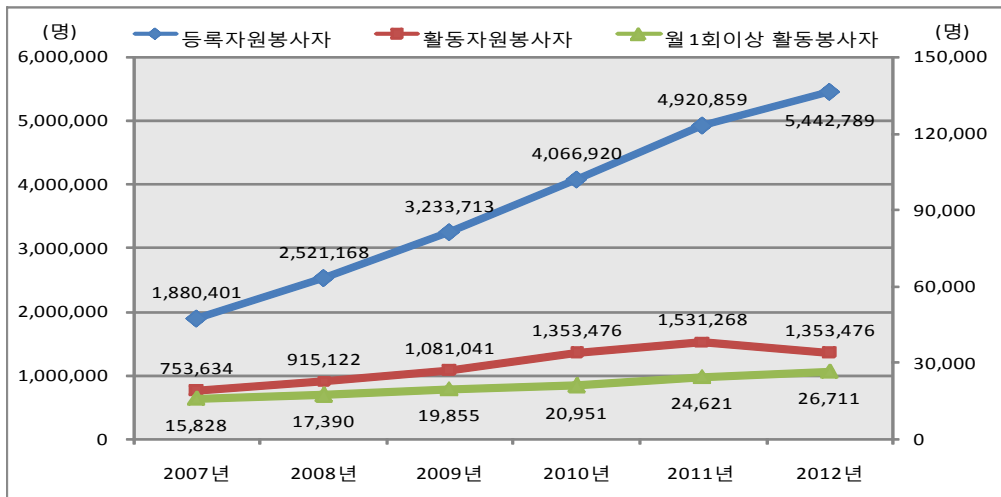
자료 :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센터 현황』, 2013.

[그림 2-59]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 현황 : 2012

② 복지부 DB 등록자원봉사자 규모

다음으로 복지부의 자원봉사 DB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모든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을 포괄하는 안행부의 DB와 달리, 복지부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의 등록 및 관리를 주목적으로 구축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복지부도 안행부와 마찬가지로 매년 자원봉사 DB에 등록된 지난 1년간의 자료를 집계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를 작성하고 있다.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에 따르면, 우선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현황은 다음 [그림 2-60]과 같다. [그림 2-60]은 연도별 ‘등록자원봉사자’, ‘활동자원봉사자’ 그리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지속적 활동자원봉사자’의 수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총 등록자원봉사자 수는 5,442,789명으로 2007년 1,880,401명의 약 2.9배에 이른다. 활동자원봉사자는 등록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1회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2012년에는 1,353,476명으로 총 등록자의 약 24.9% 정도이다. 활동자원봉사자 수가 2011년에 비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 및 활동자원봉사자 수 모두 증가하였다. 2012년의 경우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VMS에 본인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만 봉사활동실적 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의 수가 2011년에 비해 적게 집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지속적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는 26,711명으로, 총 등록자의 약 0.5%이고 활동자의 약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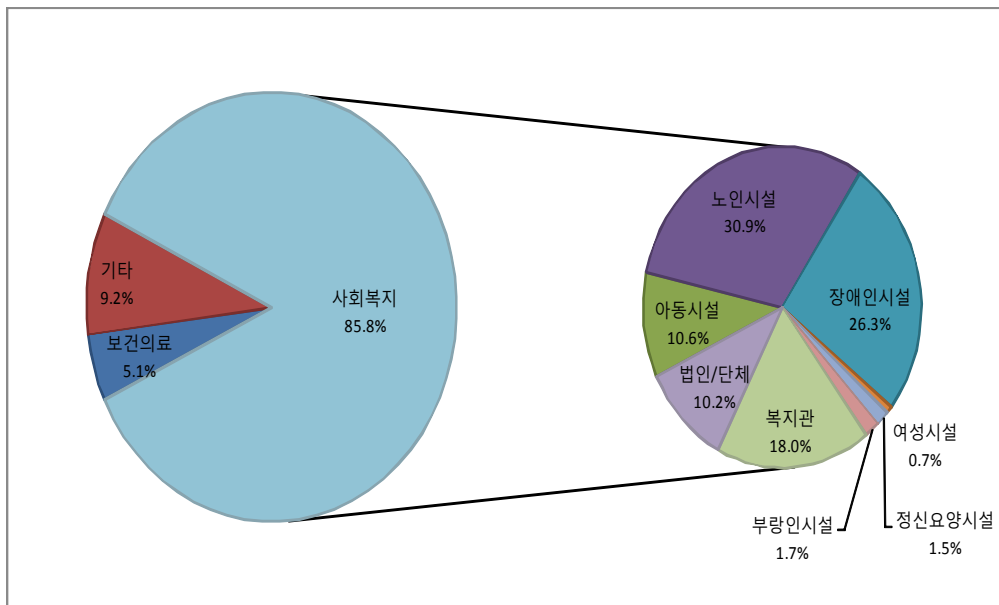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2-60] 사회복지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현황 : 2007-2012

한편 사회복지자원봉사자를 양성·관리하고 봉사실적 DB 등록,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센터’가 전국에 9,546개가 있고,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노인시설, 아동시설, 여성시설 등), 보건, 기타’로 분류되는 법인, 단체, 시설 등의 형태인 관리센터 중 단 1개소에만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센터는 자원봉사자가 주로 활동하는 시설인 경우가 많고, 희망하면 다른 센터로 등록정보를 이관할 수도 있다.

[그림 2-61]은 관리센터 종류별로 2012년에 한 번이라도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보여준다. 단, 2012년에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1,353,476명)는 현행 실적²⁹⁾으로만 이루어진 봉사자 수(73,095명)를 포함한 것으로, [그림 2-61]은 이를 제외한 1,280,381명의 현황이다. 활동자원봉사자 중 대다수인 약 85.8%는 사회복지 관련 관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사회복지 중에서는 노인시설(30.9%)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애인시설(26.3%), 복지관(18.0%), 아동시설(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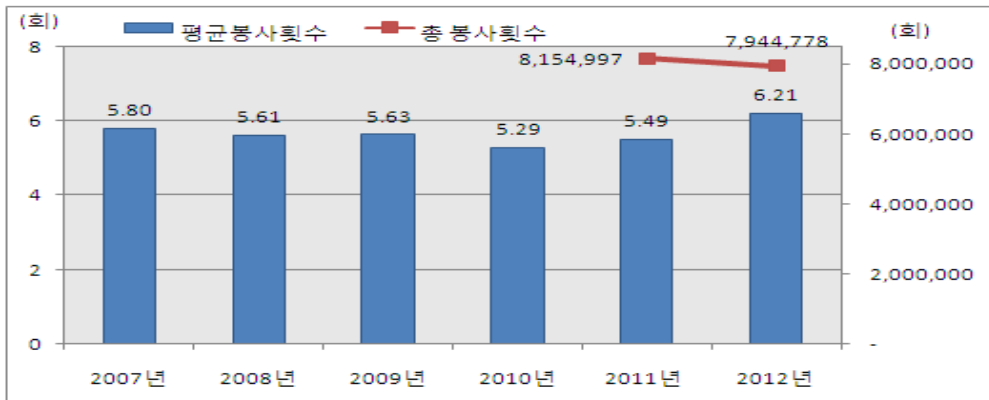
[그림 2-61] 관리센터 종류별 사회복지 활동봉사자 현황 : 2012

사회복지자원봉사자의 봉사 횟수와 시간³⁰⁾의 연도별 변화는 다음 [그림 2-62], [그림 2-63]과 같다. 우선 [그림 2-62]에서 봉사횟수에 대해 살펴보면, 2012년에 사회복지

29)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정기준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대한적십자의 현행내역을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30)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에서 총 봉사 횟수와 시간에 대한 집계결과는 2011년부터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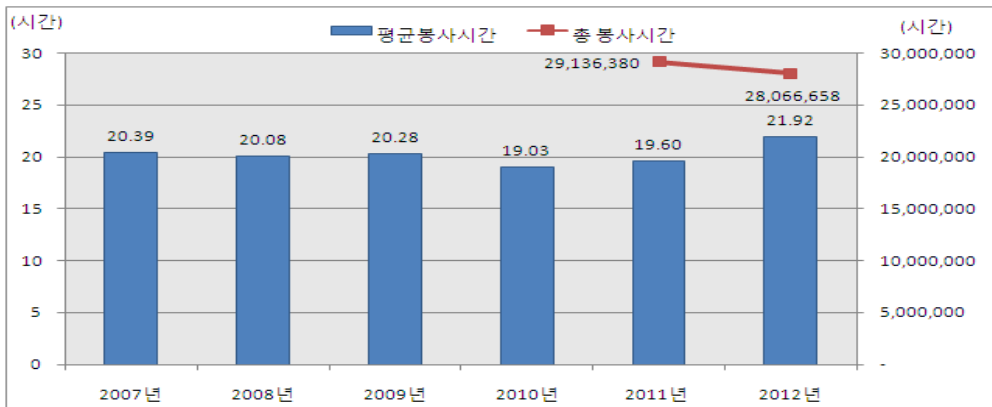
자원봉사자는 총 7,994,778회 활동하였고 활동봉사자는 1인당 평균 6.21회 참여하였다. 2011년(8,154,997회)에 비해 총 횟수는 감소하였으나 평균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림 2-60]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2년에는 연간 한 번이라도 활동한 사람의 수는 감소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 참여자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2-62]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총 봉사횟수 및 평균 봉사횟수 : 2007-2012

봉사한 시간도 2012년 총 봉사시간은 28,066,658시간으로 2011년(29,136,380시간)보다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평균 봉사시간은 21.92시간으로 2011년(19.6시간) 보다 증가하였다.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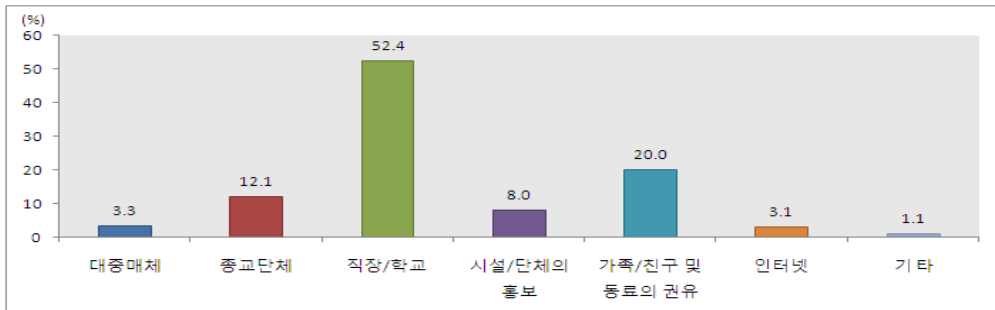
[그림 2-63]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총 봉사시간 및 평균 봉사시간 : 2007-2012



3) 자원봉사 인식 및 태도

가)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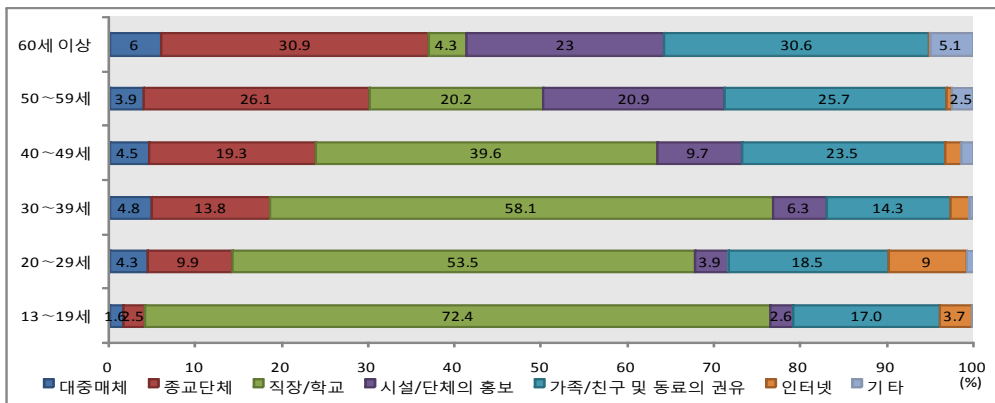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중 절반 이상인 52.4%는 ‘직장/학교’를 통해 활동한 단체 등을 알게 되었으며, 이어서 ‘가족, 친구 및 동료의 권유(20.0%)’, ‘종교단체(12.1%)’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64]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 : 2011

이때 연령대별로 자원봉사활동을 인지하게 된 경로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학생과 직장인이 많은 40대 이하는 대체로 ‘직장/학교’를 통해 알게 되었고, 50대 이상은 주로 ‘종교단체’와 ‘가족, 친구 및 동료의 권유’, 그리고 ‘시설, 단체의 홍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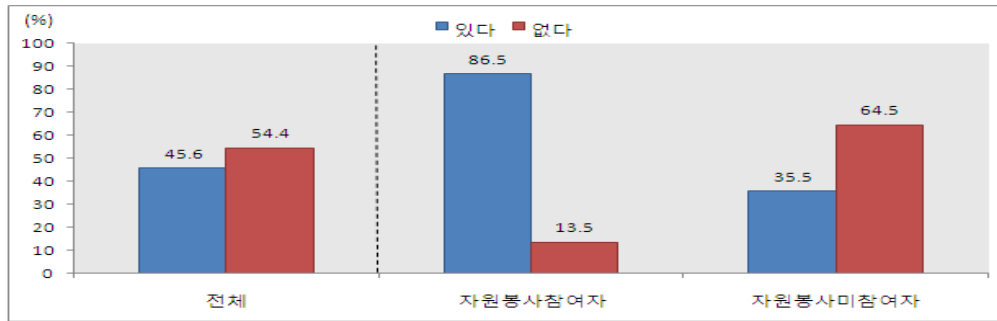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65]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 : 2011

또한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10대와 20대는 각각 3.7%와 9%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나타나, 1% 미만에 불과한 50대 이상의 경우와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나)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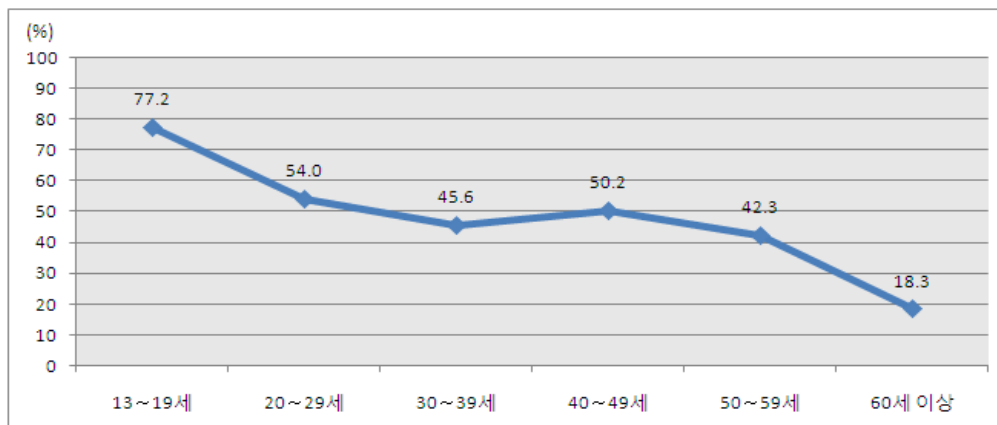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전체 13세 이상 인구 중 45.6%는 향후 2년 이내에 자원봉사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체 인구와 비교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86.5%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은 35.5%로 나타나 차이가 발생하였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66]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 : 2011

한편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은 10대가 77.2%로 가장 높게 나타난 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60세 이상의 경우 18.3%만 2년 이내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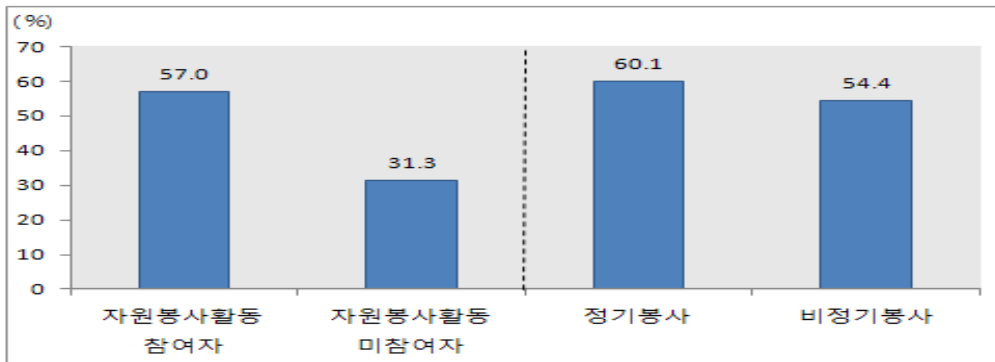
[그림 2-67] 연령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 : 2011

4) 자원봉사활동 여부별 특성

지금까지 주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동향과 규모,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2011년에 실시한 「사회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기부한 경험이나 현재 본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집단별 차이를 파악해보았다.

가) 기부 참여율

우선 자원봉사활동과 기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자는 57%가 기부를 했지만 비자원봉사자는 이보다 훨씬 적은 31.3%만 기부하여, 자원봉사자가 비자원봉사자보다 기부에 참여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한 경우(60.1%)는 그렇지 않은 경우(54.4%)보다 기부 참여율이 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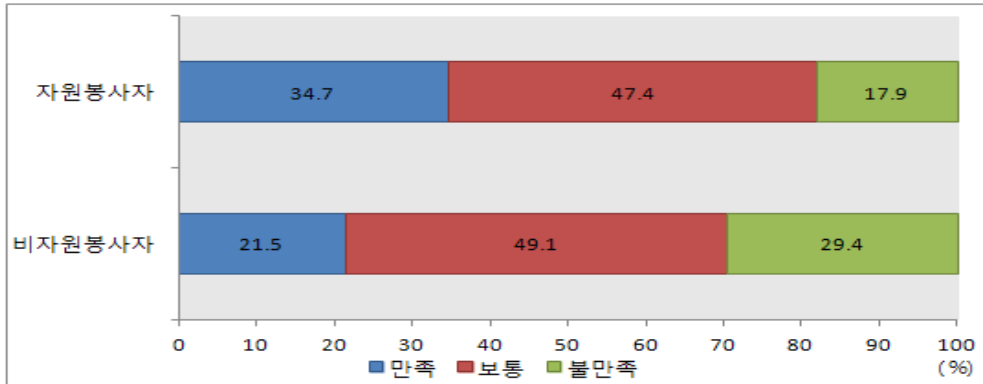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2-68] 자원봉사 여부에 따른 기부 참여율 : 2011

나) 삶에 대한 만족감

자원봉사자는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본인의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34.7%로 21.5%에 불과한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더 많이 만족하였다. 반면 삶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경우는 비자원봉사자(29.4%)가 자원봉사자(17.9%)보다 11.5%p나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와 비교하여 본인의 현재 삶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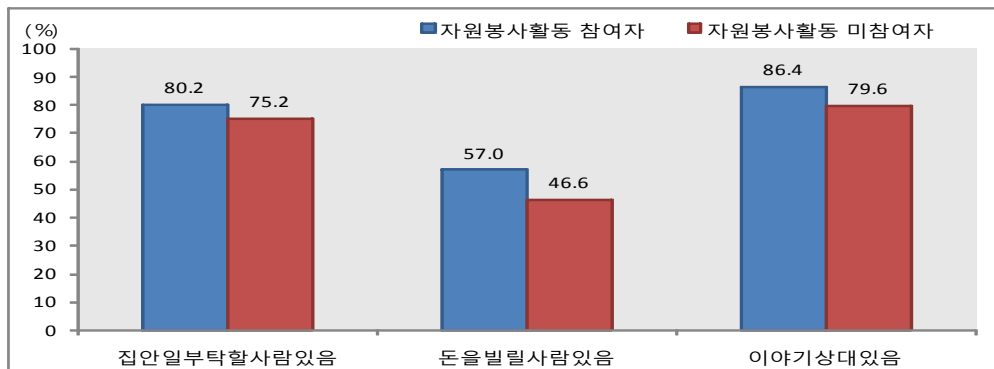


주 : 1)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 ‘불만족’은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인 경우를 합산한 비율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원자료 분석.

[그림 2-69] 자원봉사 여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감 : 2011

다) 사회적 관계망 및 단체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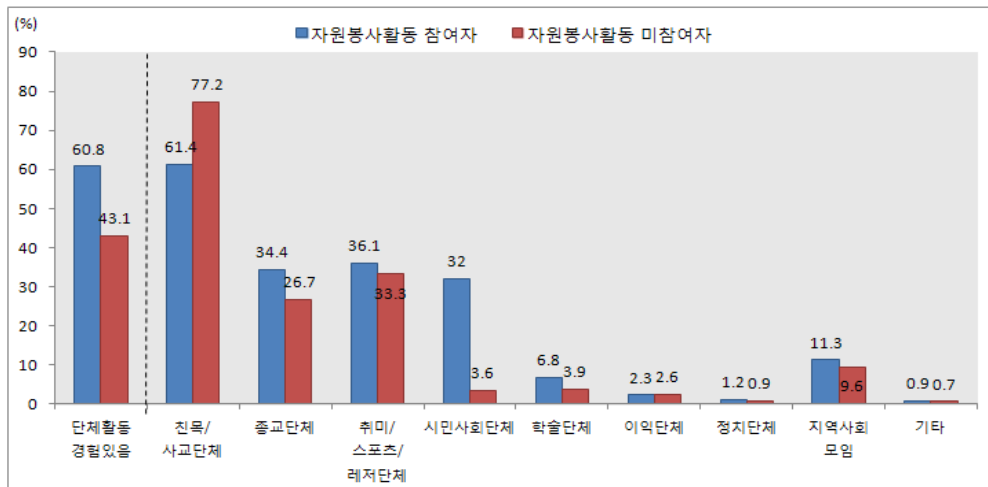
자원봉사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비자원봉사자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2%이고, ‘돈을 빌릴 사람’과 ‘이야기 상대’가 있는 경우는 각각 57%, 86.4%로 같은 조건에서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모두 높았다. 자원봉사자가 도움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회적 관계망을 더 튼튼하게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 : 1) 단,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지는 조사대상이 19세 이상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원자료 분석.

[그림 2-70] 자원봉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 2011

또한 자원봉사자는 하지 않은 사람보다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로 활동한 단체의 종류를 비교해보면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등)와 이익단체(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단체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 특히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의 경우 자원봉사자는 32%가 활동한 반면 비자원봉사자는 같은 기간에 불과 3.6%만 활동하여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주 : 1) 참여한 단체의 종류는 복수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원자료 분석.

[그림 2-71] 자원봉사 여부에 따른 단체 참여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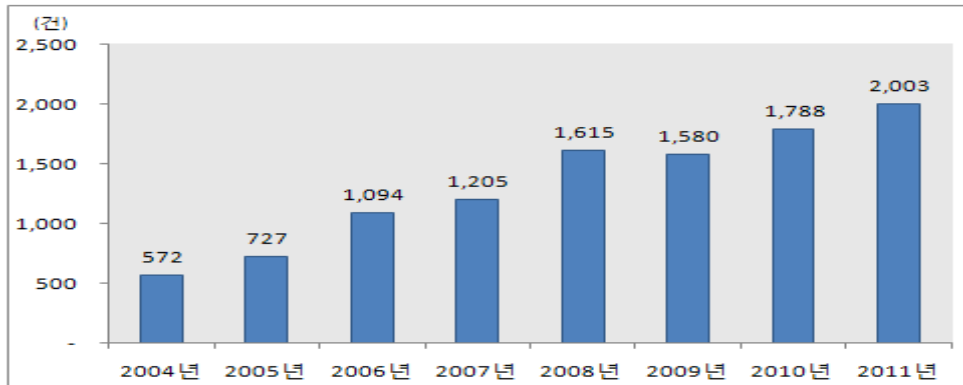
나. 기업

여기서는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실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기업의 자원봉사는 구성원인 임직원의 활동을 의미한다. 전경련의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에서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 임직원의 봉사활동 건수와 참여비율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1) 자원봉사활동 건수 및 참여비율

전경련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2011년 사회공헌 실태조사에서 임직원의 봉사활동 건수에 대한 항목에 응답한 기업(152개)은 2011년 한 해 동안 기업당 평균 2,003건의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봉사활동 건수는 2009년에

2008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조사를 처음 실시하였던 2004년에 비해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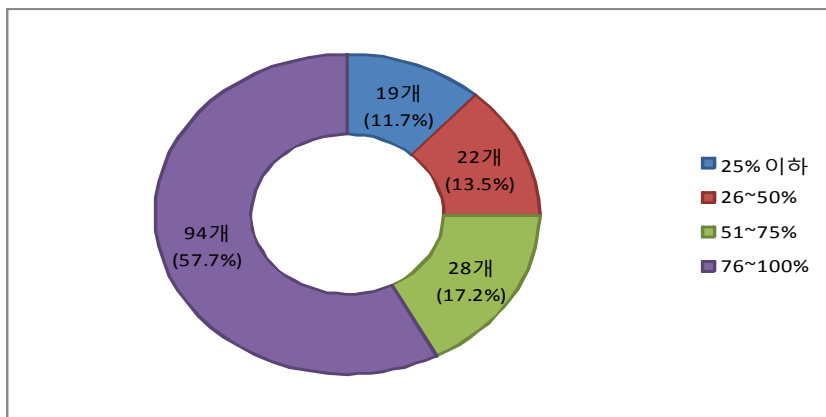


주 : 1) 해당 조사항목에 응답한 기업 기준(2004년 180개, 2005년 191개사, 2006년 153개사, 2007년 158개사, 2008년 156개사, 2009년 149개사, 2010년 145개사, 2011년 152개사)

자료 : 전경련,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2012.

[그림 2-72] 기업의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건수 : 2004-2011

한편 기업 내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보면, 2011년의 경우 전체 직원 수의 76% 이상 참여한 기업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1% 이상, 26% 이상의 순으로



주 : 1) 해당 조사항목에 응답한 기업 기준(2011년 163개사(모름/무응답(59개사)을 제외))

2) 참여비율 = 참여인원 / 전체 임직원 수

자료 : 전경련,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2012.

[그림 2-73] 기업의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참여비율 : 2011



나타났다. 임직원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기업이 전사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봉사활동 등록제도, 우수자 표창제도, 봉사마일리지 도입 등 다양한 사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2012).

3. 생명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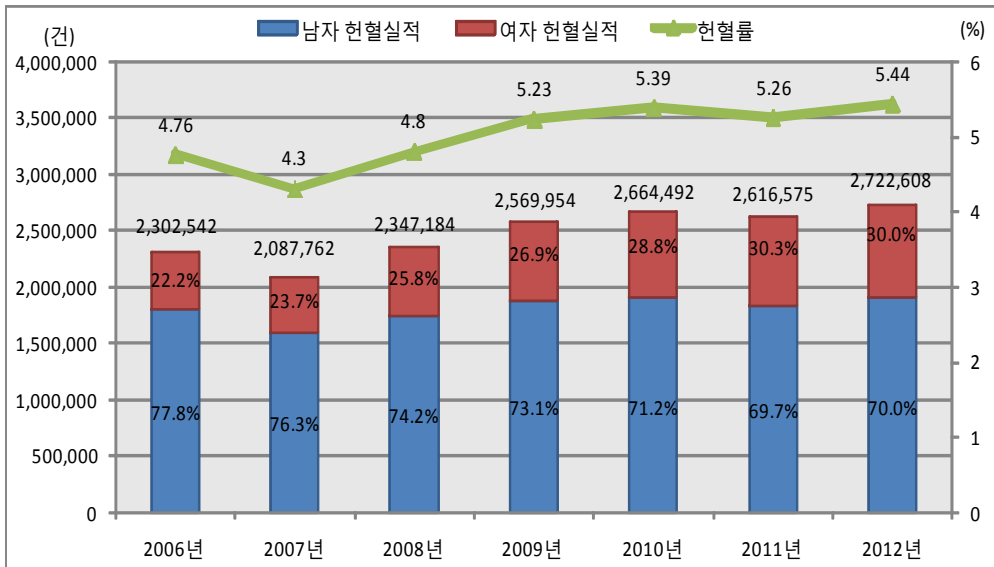
생명나눔에 해당하는 헌혈과 장기기증의 실태는 각각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의 『혈액사업통계연보』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장기이식통계연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가. 헌혈

적십자에서 매년 작성하는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총 헌혈실적은 2,722,608건으로, 남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여자가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헌혈실적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2007년과 2011년에 각각 1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7년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문진이 강화되고 고령화로 인해 헌혈을 많이 하는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헌혈부적격자가 증가하여 헌혈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헌혈 캠페인 전개와 국민의 헌혈의식 전환으로 헌혈실적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군부대 훈련강화, 대설, 집중호우 등의 요인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그리고 총 헌혈실적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2년의 경우 2011년(30.3%)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였다. 총 인구에서 헌혈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헌혈률’은 2012년에 5.44%이고, 헌혈실적의 연도별 증감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한편 헌혈가능인구(만16~69세)³¹⁾ 대비 총 헌혈실적의 비율은 2006년 6.75%, 2007년 6.08%, 2008년 6.76%, 2009년 7.34%, 2010년 7.17%, 2011년, 6.97%, 2012년 6.87%로 2009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9년 이후 헌혈실적과 헌혈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헌혈가능인구대비 헌혈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2009년 이후 총 인구와 비교해서 헌혈가능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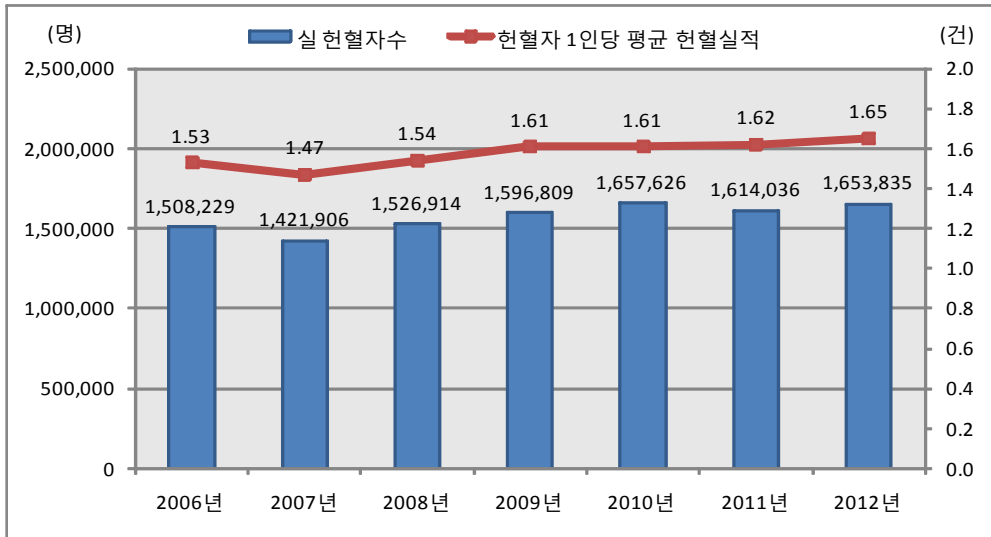
31) 헌혈가능인구 수는 2006년 34,127,502명, 2007년 34,356,556명, 2008년 34,708,544명, 2009년 34,995,947명, 2010년 37,138,273명, 2011년 37,520,772명, 2012년 39,645,209명이었다.



주 : 1) 헌혈률(%) = 총 헌혈실적 / 총 인구 * 100

자료 :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2013.

[그림 2-74] 총 헌혈실적 및 헌혈률 : 2006-2012



주 : 1) 헌혈자 1인당 평균 헌혈실적(건) = 총 헌혈실적 / 실 헌혈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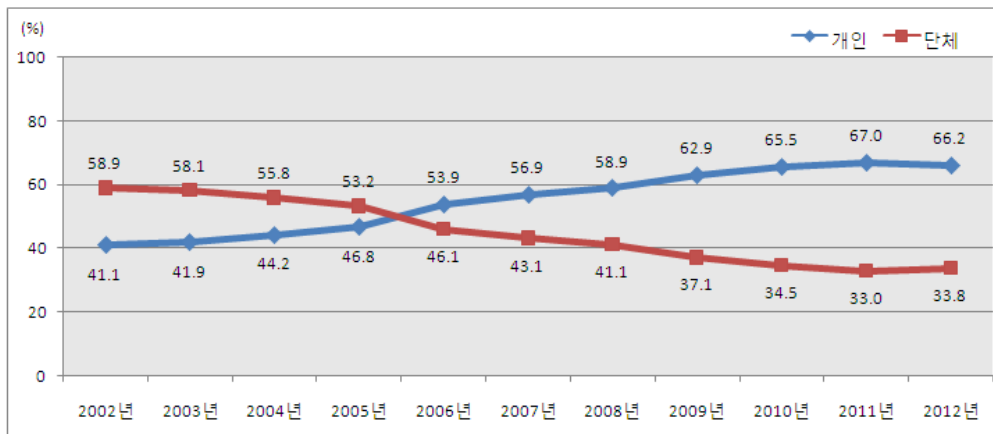
자료 :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2013.

[그림 2-75] 실 헌혈자수 및 평균 헌혈실적 : 2006-2012



실제 헌혈을 한 사람의 수는 2012년의 경우 1,653,835명으로 2011년(1,614,036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10년(1,657,626명)보다는 적었고, 1인당 평균 1.65건의 헌혈을 하였다 ([그림 2-75]). 한편 헌혈가능인구 대비 실 헌혈자의 비율에 해당하는 ‘실제 국민 헌혈률’은 2006년 4.42%, 2007년 4.14%, 2008년 4.40%, 2009년 4.56%, 2010년 4.46%, 2011년 4.30%, 2012년 4.17%로, 헌혈가능인구 대비 헌혈률과 마찬가지로 2009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실 헌혈자보다 헌혈가능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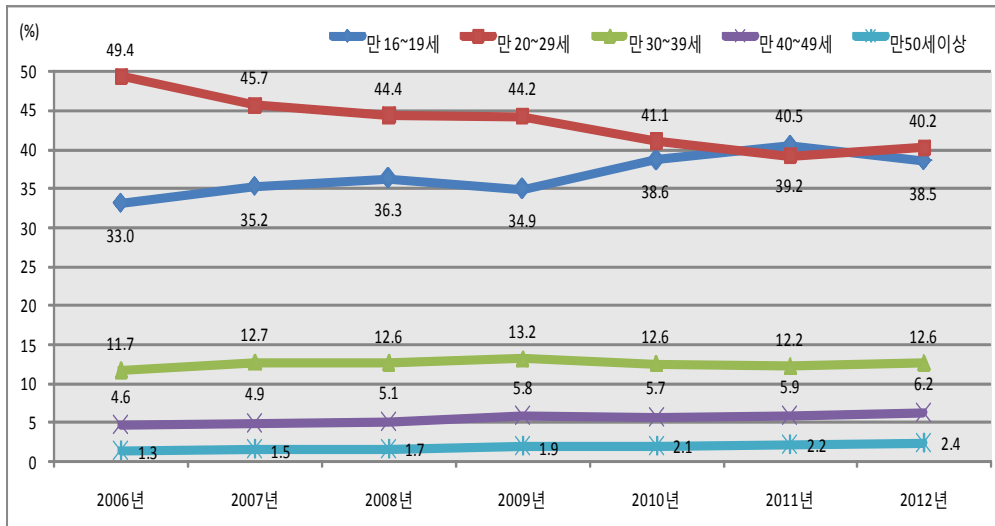
한편 총 헌혈실적에서 헌혈의 집 및 가두헌혈을 통한 ‘개인’과 학교 및 군부대 등 ‘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76]과 같다. 군부대, 학생 위주의 단체 채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이후 지속 추진한 헌혈의집 확충사업 및 등록헌혈제도의 영향으로 2006년 개인과 단체 간의 헌혈점유율이 역전되었다. 이후 계속 개인이 우위를 차지하여, 2012년에는 개인이 과반 이상인 66.2%를 차지하고 나머지 33.8%를 단체가 차지하였다.



자료 :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2013.

[그림 2-76] 개인과 단체의 헌혈실적 비율 : 2002-2012

또한 헌혈자의 연령별로 실적을 비교해보면, 2012년의 경우 20대가 40.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10대(38.5%), 30대(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가 대다수인 78.7%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10대와 20대에 편중되는 경향은 과거부터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2006년(82.4%)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대는 2006년에 49.4%를 기록한 후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10대는 같은 기간 상승하여 2011년에는 처음으로 20대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에 다시 역전되었다.



자료 :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2013.

[그림 2-77] 연령별 헌혈실적 비율 : 2006-2012

나. 장기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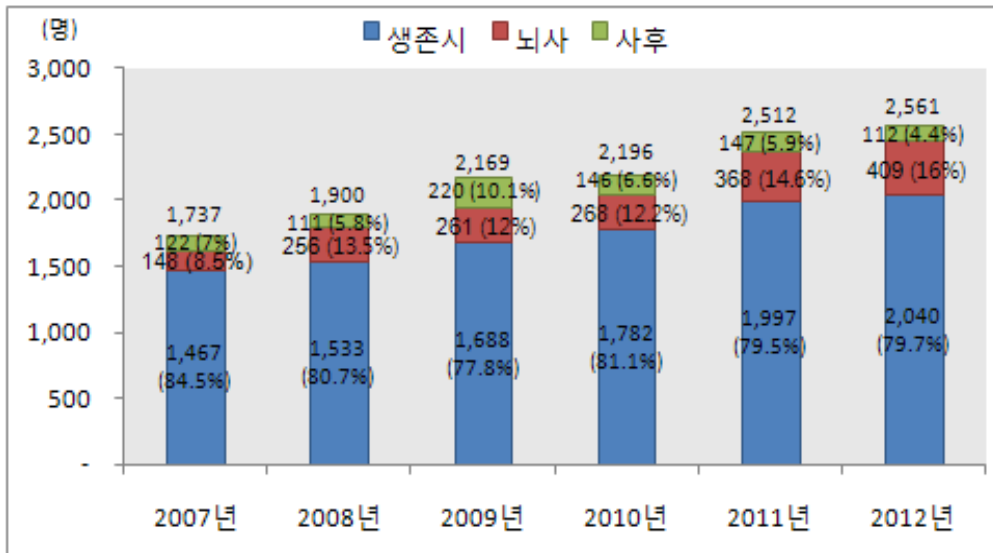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매년 작성하는 『장기이식통계연보』를 통해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본격적인 실태파악에 앞서 장기기증에 관한 다소 생소한 용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장기 등’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장기 및 조직(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척도, 소장, 골수, 각막)을 의미한다. ‘기증자’는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로 기증 당시의 상태에 따라 ‘생존시, 뇌사, 사후 기증자’로 구분된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장기(골수와 각막을 포함)기증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78]과 같다. 장기기증자의 수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총 2,561명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였는데, 이는 2007년(1,737명)에 비해 약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12년 장기기증자는 2,040명의 생존시 기증자와 409명의 뇌사기증자, 그리고 112명의 사후기증자로 구성되어 있다. 생존시 기증자가 전체의 79.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뇌사기증자(16%), 사후기증자(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히 뇌사기증자의 경우 1999년(162명) 이전에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가 장기이식 배분권한을 가지게 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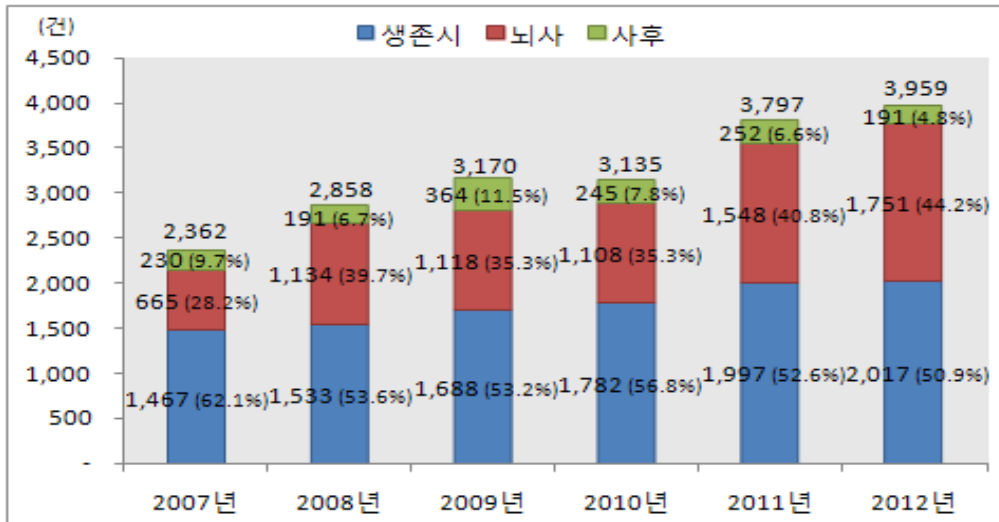
따라 뇌사자 기증 장기를 공정분배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의료기관의 잠재뇌사자 발굴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져 뇌사기증자가 급격하게 감소('02년 36명)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뇌사자 발굴에 대한 의료기관 인센티브 허용('07년), 뇌사판정대상자 관리기관 지정기준 완화('08년), 독립장기구득기관, 뇌사추정자 신고 의무화, 뇌사판정 절차 간소화, 유가족 동의요건 완화('11년), '장기기증 관리체계 개선 방향' 마련('12년) 등 뇌사기증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7년 이후 뇌사기증자 수와 전체 장기기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통계연보』, 2013.

[그림 2-78] 장기기증의 추이 : 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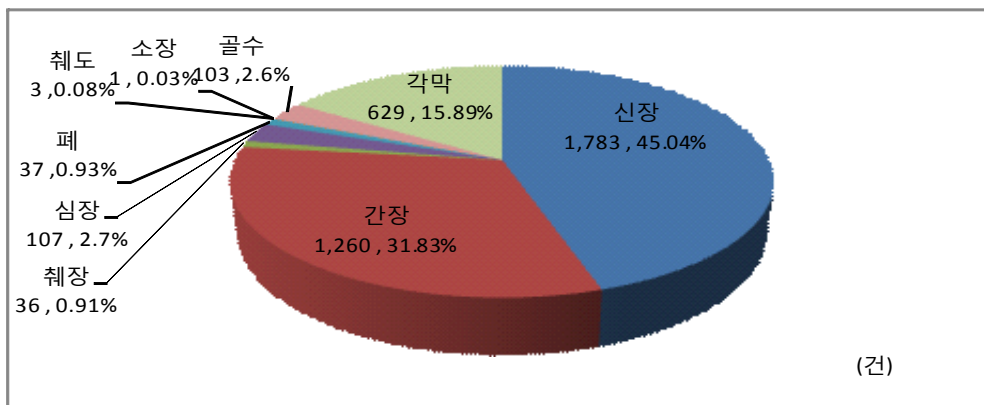
다음으로 기증자로부터 받은 장기(골수나 각막을 포함)의 이식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에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총 3,959건의 장기이식이 발생하여 2011년에 비해 162건이 증가하고, 이는 2007년(2,362건)보다 약 1.7배 증가한 것이다. 이때 위에서 살펴본 장기기증자의 수와 장기이식 건수는 차이가 나는데, 이는 기증자 1인이 신장, 간장 등 수개의 장기를 다수의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이식은 생존시 기증자로부터 이식받은 사례가 2,017건(5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뇌사와 사후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뇌사기증자 수의 증가와 함께 뇌사자로부터 이식받은 사례도 증가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28.2%)에 비해 2012년에는 44.2%로 16%p나 증가하였다.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연보』, 2013.

[그림 2-79] 장기이식의 추이 : 2007-2012

2012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장기이식 사례를 이식한 장기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2-80]과 같다. 신장이 1,78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45.04%)을 차지하였고, 간장(1,260건, 31.83%), 각막(629건, 15.89%), 심장(107건, 2.7%), 골수(103건,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장과 간장, 각막의 이식사례 수의 합은 총 3,672건으로 전체 이식 건수의 절대 다수인 92.75%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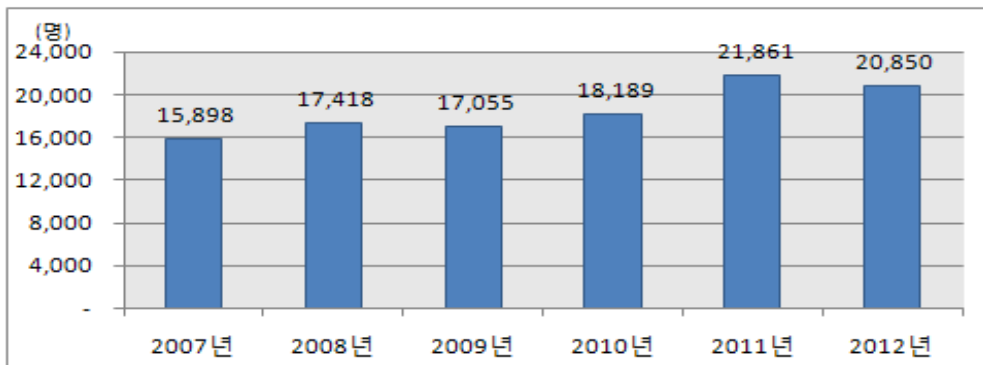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연보』, 2013.

[그림 2-80] 장기별 이식 현황 : 2012



한편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등록한 자를 ‘이식대기자’라 한다. 다음 [그림 2-81]에서 이식대기자는 [그림 2-79]의 장기이식 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2012년에는 20,850명으로 2011년(21,861명)에 비해 1,011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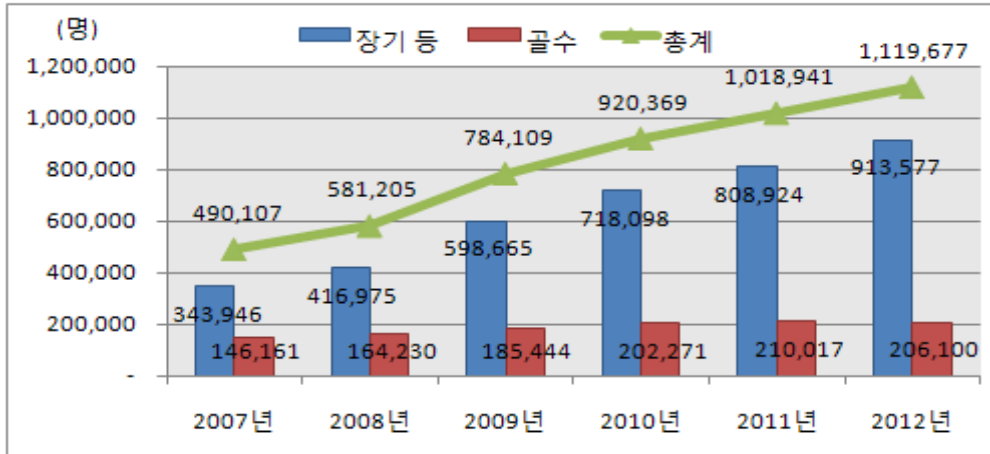


주 : 1) ‘이식대기자’는 각 연도말 기준 누계이며, 이식등록자에서 이식자, 사망자, 본인수술취소자, 검사값 누락자 등을 제외한 것이다.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연보』, 2013.

[그림 2-81] 이식대기자의 추이 : 2007-2012

나아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래 자신의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를 등록한 자를 ‘기증희망등록자’라고 한다. 이러한 기증희망등록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장기 등과 골수를 합쳐 총 1,119,677명으로 2007년(490,107명)에 비해 약 2.3배 증가하였다. 단, 2012년에 골수 기증희망등록자 수는 206,100명으로 2011년(210,017명)에 비해 3,91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 1)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는 기증희망 철회자, 국외 이민자, 사망자, 주소 불명자를 제외한 것이고, ‘골수 기증희망등록자’는 HLA 검사결과가 있는 데이터만 집계한 것으로 역시 기증희망 철회자, 사망자, 연령초과, 주소 불명자를 제외한 것이다.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연보』, 2013.

[그림 2-82] 기증희망등록자의 추이 : 2007-2012

4. 소결

지금까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나눔통계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헌혈, 장기기증)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 기부

- 13세 이상 인구 중 36.4% 가 주로 ‘모금단체’를 통해 기부

2011년에 실시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36.4%가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경험이 있었다. 이때 15세 이상 인구의 참여율은 36%로 13세 이상의 경우 보다 약간 낮으나,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기부에 대한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6년은 31.6%, 2009년은 32.3%이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1년 조사결과 물품(8.5%)보다 현금(34.8%)의 형태로 기부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현금기부자 중 31.2%, 물품기부자 중 34.6%가 정기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금기부자는 ‘모금단체’를 통해 가장 많이 기부하였고 이 밖에 ‘언론기관’과 ‘종교단체’를 다른 경로에 비해 많이 이용하였다. 이때 기부자는 주로 ‘대중매체’, ‘직장·



학교’, ‘종교단체’ 등을 통해 기부한 대상을 인지하였고, 기부자의 대다수인 82.2%는 기부한 현금이나 물품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쓰이기를 희망하였다.

인구사회특성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기부에 더 많이 참여하였으나 20대의 경우 여자의 참여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10대와 30~50대가 많이 기부하였고, 이에 비해 20대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또한 교육수준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부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 해당하는 화이트 칼라 종사자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과 광역시는 도에 비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이 더 많았다.

- 현금기부자는 평균 16만 7천원 기부, 개인과 법인은 총 11조 1,500억원 기부

한편 「사회조사」에서 2011년에 처음으로 현금을 기부한 횟수와 금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현금기부자는 평균 6.1회, 물품기부자는 3.4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금기부자는 연간 1인당 평균 16만 7천원을 기부하였는데, 기부 참여율과 유사하게 여자보다 남자가, 경제력이 있는 40~50대 중장년층의 평균기부액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기부액도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에서 세무자료를 통해 집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부총액으로 간주하는 기부금 소득공제액은 2011년 기준 11조 1,500억원으로 개인의 7조 900억원과 법인의 4조 700억원을 합산한 규모이다. 기부총액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의 기부 규모는 지난 1999년 3:7에서 2000년 이후 개인의 기부가 증가하여 6:4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425개 푸드뱅크에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1,163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주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여 기부하지 못함

나아가 2011년 「사회조사」에서 기부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43.3%)’ 가장 많이 기부하였고, ‘기부단체나 직장 등의 요청’과 같은 외부적인 이유도 28.3%로 나타났다. 기부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여유 부족(62.6%)’이 가장 많았고, ‘기부에 대한 관심 부족(18.6%)’, ‘기부단체 신뢰 부족(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3세 이상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45.8%는 향후 1년 이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고, 37.3%는 유산의 일부라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과반 이상인 54.8%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가 가장 필요하고, ‘기부단체 투명성 강화(20.6%)’, ‘나눔교육 및 인식개선(16.1%)’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의 기부 실태

10대인 청소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기부 실태에서 전반적으로 이질적인 특성을 보여주므로, 여기서 구분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선 청소년(13~19세)은 41.1%가 기부에 참여하여 전체 평균(36.4%) 보다 다소 높으나, 현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한 경우는 9.3%에 불과하여 청소년은 일회적인 기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기부자의 평균 참여횟수가 현금은 3.7회, 물품은 1.8회로 전체에 비해 적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금기부자는 평균 17,000원을 기부하였는데, 이는 전체 평균 기부액인 16만7천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청소년의 기부액 규모는 크지 않았다.

한편 과반 이상인 58.2%가 ‘기타’의 경로로 기부하여 ‘모금단체’보다 높았으며, ‘기타’에는 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의 대다수가 학생인 청소년은 학교를 통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청소년은 대부분인 79.1%가 ‘직장·학교’를 통해 기부한 대상을 인지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기부한 이유는 모금단체나 학교 등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경우가 과반 이상인 56.4%로, 다른 연령대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음’이나 ‘개인적인 신념’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대비되었다. 그리고 기부하지 않은 이유도 ‘기부에 대한 관심 부족’과 ‘기부방법을 몰라서’,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라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청소년은 향후 기부에 대해 전체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이고 특히 유산 기부에 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과반에 가까운 49.2%가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청소년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에 이어 ‘나눔교육 및 인식개선’을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하여, ‘기부단체 투명성 강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여준다. 정리하면, 청소년의 경우 기부에 참여하는 인구는 많으나, 학교 등의 ‘요청’에 의한 일회적인 기부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기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기부에 대한 관심 부족’과 ‘기부방법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교육 및 인식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나눔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자원봉사

- 기부보다 참여율은 낮으나 정기적인 활동 많음, 10대의 참여율 매우 높음

기부와 마찬가지로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19.8%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때 15세 이상 인구 대상 참여율은 17.6%로 13세 이상의 경우 보다 다소 낮고 2009년 19.3%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가 처음 실시된 1999년(13%) 이후 2003년 14.6%, 2006년 14.3%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자원봉사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9%가 정기적으로 활동하였고, 평균적으로 연간 7.1회 참여하여 한 번에 4.4시간 가량 활동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 중 과반 이상인 52.4%는 ‘직장·학교’를 통해 활동한 단체 등을 알게 되었으며, 대다수(58.2%)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였고,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경우는 15.9%이고 이 중 ‘아동학습지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구사회특성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자원봉사활동에 좀 더 많이 참여하였으나, 1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남자의 참여율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의 참여율이 2011년 기준 77.7%로 매우 높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참여는 7.2%에 불과하여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또한 교육수준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부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 해당하는 화이트 칼라 종사자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도의 경우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이 더 많았다.

※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실태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13~19세)은 77.7%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전체 평균(19.8%)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기적으로 활동한 경우는 33.7%에 불과하여 전체 평균(45.9%)에 비해서 낮고, 정기적인 참여자도 짧은 주기인 주 또는 월 단위로 활동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적고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활동한 경우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참여율은 높으나 정기성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참여횟수와 시간이 적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청소년 자원봉사자는 연간 평균 4.3회 참여하여 한 번에 4.2시간 동안 활동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경우 대다수인 72.4%가 ‘직장·학교’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한 단체 등을 알게 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기부와 동일하게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학교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과 관련된 분야’에 가장 많이 활동하였으나, 관공서 업무지원, 농어촌 봉사활동 등 ‘기타 일반인을 봉사 관련 분야’에서도 26.4%가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율이 10% 내외에 불과한 다른 연령대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 부처별 DB의 등록자원봉사자 규모 전반적으로 증가

한편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구축한 자원봉사활동 실적인증DB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총 등록인원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간 한 번이라도 활동한 인원은 안행부 DB의 경우 2011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2012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복지부DB에서는 2011년까지 증가하다 2012년에 감소하였다. 단, 이와 같은 등록자원봉사자 규모는 해당 DB에 등록된 대상만을 집계한 것으로 전체 자원봉사자를 포괄하는 것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특히 복지부 DB의 경우 사회복지분야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구축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는 긍정적인 상관관계 있음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분석하여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간의 관계를 보면, 기부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 자원봉사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부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부와 자원봉사와 같은 나눔에 참여한 집단은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재 본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나눔 참여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미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아 사회적 관계망을 더 튼튼하게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도 나눔 참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생명나눔

- 10대와 20대가 전체 헌혈실적의 대부분인 78.7%를 차지

우선 『혈액사업통계연보』(적십자)를 통해 헌혈에 대해 살펴보면, 헌혈실적과 실제 헌혈자 수는 2007년과 2011년에 각각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 총 1,653,835명이 2,722,608건의 헌혈을 하였다. 헌혈자는 평균 1.65건을 하였고, 헌혈이 가능한 인구(만16~69세) 중 실제 헌혈자 수의 비율은 4.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총 헌혈실적 중 남자와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3으로 남자가 2배 이상 많이 하지만, 과거에 비해 여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개인이 단체보다 헌혈을 더 많이 하여 2012년에는 개인이 전체의 과반 이상인 66.2%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에 20대(40.2%)와 10대(38.5%)의 실적이 전체의 78.7%를 차지하고, 이러한 특정 연령대 편중은 과거부터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점차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20대의 경우 감소하고 있다.

- 최근 뇌사 기증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이 증가

『장기이식통계연보』(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보면, 장기기증과 장기이식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총 2,561명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였는데, 2,040명의 생존시 기증자(79.7%)와 409명의 뇌사기증자(16%), 그리고 112명의 사후기증자(4.4%)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장기이식은 2012년에 총 3,959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신장과 간장, 각막을 이식한 사례가 3,672건으로 전체의 절대 다수인 92.75%를 차지하였다. 또한 생존시 기증자로부터 이식받은 사례가 2,017건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으나, 최근에는 뇌사 기증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사례(1,751건, 44.2%)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장기기증과 이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2007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2012년에는 20,850명으로 2011년(21,861명)에 비해 1,011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장기이식등록 기관에 장래 자신의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를 등록한 기증희망등록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4절 국내 비영리조직의 실태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헌혈, 장기기증)과 같은 나눔 활동에 개인이나 기업이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재원과 서비스를 수혜자에게 배분하고 공익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영리조직은 정부, 시장과 함께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제3섹터에 해당하는 비영리(non-profit)부문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나눔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인 인프라이므로 그 실태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조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영리조직의 개념과 포괄범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³²⁾. 비영리조직은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

으로 하지 않는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모여 활동하는 결사'라고 볼 수 있다(조흥식 외, 2011). UN(2003)은 비영리조직을 정의하는 5가지 특성으로 ①조직체(organization), ②이익무추구 및 이익무분배(not-for-profit and non-profit-distribution), ③정부와 제도적 분리(institutionally separate from government), ④자치성(self-governing), ⑤비강제성(non-compulsory)을 제시하였다. 이때 비영리조직의 특성으로 반드시 사회 전체의 이익인 '공익(public good)'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전문가협회나 스포츠클럽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조직 구성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비영리조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현행법에서 비영리조직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용어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를 들 수 있다. 각각의 용어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정의와 포괄 범위가 다르며, 또한 동일한 용어라 해도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률의 목적에 따라 역시 차이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비영리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적 용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法人)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민법」과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법인세법」에서 정의와 포괄범위가 다르다. 공익법인은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법률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조직을 말한다. 「민법」 외에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과 같은 개별적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비영리 법인에 해당한다. 한편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개념이다. 우선 전자인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32) 『NPO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통계 작성방안』(박주언·이희길, 2013) 2절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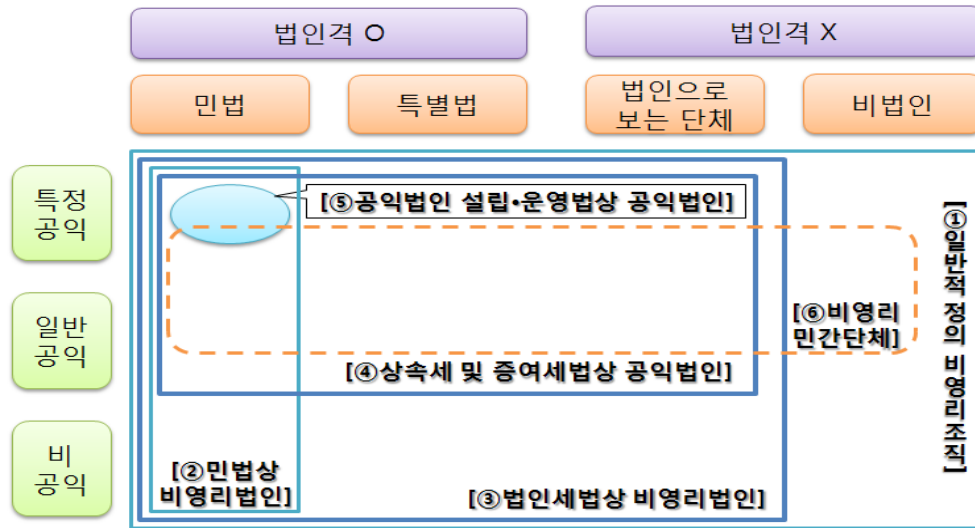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³³⁾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³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6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법이 정한 보조금, 조세감면, 우편요금감액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학술 또는 전문직 연합회, 협동조합, 사교클럽, 노동조합, 종교단체, 정치적 결사조직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검토한 일반적인 비영리조직의 개념과 국내 현행법상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포괄범위 차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83]과 같다. 우선 [그림 2-83]에서 ①은 법인격이나 공익성 추구 여부에 관계없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를 의미하는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일반적인 비영리조직이다. ③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②)과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④)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⑤)상의 공익법인도 모두 포괄한다.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
- 33)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 사업을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34) 특히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격 획득 여부에 관계없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하여 해당 지위를 획득하게 되므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과는 별개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반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⑥은 공익적인 활동을 하지만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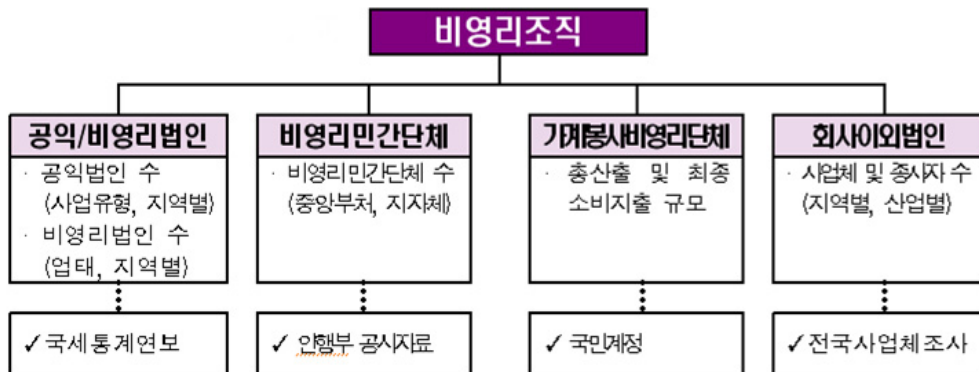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비영리조직회계기준(안)(KAI개원기념세미나 발표자료)」, 2013에서 수정.

[그림 2-83] 비영리조직의 개념 및 포괄범위

비영리조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조직에 대한 명확한 조직적 정의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부, 자원봉사와 같은 나눔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기능을 주로 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실태파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때 [그림 2-83]의 일반적인 개념에 따르면 포괄범위가 매우 넓어서 공익보다 조직 구성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까지 포함한다. 또한 국내 현행법인 「민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일부 비공익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하는 민간 비영리조직의 범위를 공익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로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도 공익을 추구하지만 법인이 아닌 대체로 소규모인 단체까지 모두 포괄하지는 못한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재 가용한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국내 비영리조직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보다 포괄범위가 넓은 「법인세법」 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국세통계연보』는 각 세무서에서 수집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전수 자료를 국세청에서 집계하여 수록한 것으로 세수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법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지는 않으나(손원익, 2013), 앞에서 살펴본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공시하는 자료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이 밖에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민계정』에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 :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의 경제적 규모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회사이외법인’ 중 일부 ‘비영리법인’의 고용 규모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그림 2-84]).



[그림 2-84] 비영리조직의 실태파악 개요

1. 공익법인

우선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의 수는 해당 연도 말에 세무서에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이다. <표 2-14>은 공익법인의 사업목적별로 해당하는 법인의 수를 나타내며, 사업목적은 종교보급,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 및 기타와 같은 7개 분야로 구분한다. 2011년 기준 사업목적별 공익법인의 수는 총 29,170개로 이 중 종교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17,753개로 가장 많은 비중(60.9%)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학술·장학(3,229개, 11.1%)과 사회복지(3,028개, 10.4%) 분야 등의 순으로 공익법인이 많이 등록되어 있다.

〈표 2-14〉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 수 : 2007~2011

(단위 : 개, %)

구분	합계	공익사업 유형						
		종교보급	사회복지	교육사업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목적	기타
2007	27,793	17,591	2,692	1,751	2,937	561	495	1,766
2008	27,811	17,586	2,693	1,745	2,960	572	503	1,752
2009	28,905	17,958	2,830	1,749	3,163	673	610	1,922
2010	29,132	17,863	2,895	1,735	3,134	773	671	2,061
2011	29,170	17,753	3,028	1,681	3,229	658	700	2,121
비율	100	60.9	10.4	5.8	11.1	2.3	2.4	7.3
설립 근거 법	-	민법, 기타 특별법	사회 복지 사업법	사립 학교법 등	공익법 인설립· 운영법	문화 예술 진흥법	의료법	민법, 기타 특별법 등

주 : 1) 2011년도 말 현재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3.

사업목적 및 지역별 공익법인의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6,569개로 가장 많은 비중(22.5%)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4,916개로 16.9%를 차지하여 전체 공익법인의 절반(39.4%) 정도가 수도권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사업목적·지역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 수 : 2011

(단위 : 개, %)

구분	합계	공익사업 유형						
		종교 보급	사회 복지	교육 사업	학술 장학	예술 문화	의료 목적	기타
지역별	29,170(100)	17,753	3,028	1,681	3,229	658	700	2,121
서울	6,569(22.5)	3,394	441	318	1,204	273	81	858
인천	1,137(3.9)	882	62	51	62	10	27	43
경기	4,916(16.9)	3,665	270	263	289	70	111	248
강원	988(3.4)	490	161	53	159	28	33	64
대전	977(3.3)	613	97	48	89	16	30	84
충북	1,373(4.7)	945	164	55	88	18	35	68
충남	1,259(4.3)	709	222	76	126	22	40	64
광주	1,056(3.6)	537	190	81	157	18	10	63
전북	1,724(5.9)	1,065	217	97	162	36	45	102
전남	1,380(4.7)	807	214	78	133	34	31	83
대구	1,410(4.8)	871	179	118	120	24	31	67

경북	2,122(7.3)	1,452	171	154	147	30	74	94
부산	1,750(6.0)	918	255	130	235	26	70	116
울산	310(1.1)	181	41	23	27	2	12	24
경남	1,795(6.2)	1,050	231	113	181	47	59	114
제주	404(1.4)	174	113	23	50	4	11	29

주 : 1) 2011년도 말 현재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한편 개인이나 법인이 공익법인과 공익신탁에 출연(기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이는 문화, 예술, 환경, 교육, 장학 등 공익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육성해야 할 사업이나 예산 또는 행정력의 한계로 공익법인과 공익신탁이 이를 대신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세제혜택이다. 이때 공익신탁은 그 목적과 사회적 기능이 공익법인과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공익법인의 실태를 서술하는 데 포함하고자 한다.

<표 2-16>은 해당 연도에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이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불산입액³⁵⁾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해마다 증감의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같은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하고, 고액의 재산을 출연하는 일도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은 753억 7천2백만원이고 증여세의 경우는 8천7백만원으로 합산하면 총 754억 5천9백만원이다.

<표 2-16>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 : 2007-2012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액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		
		소계	공익법인 출연 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소계	공익법인 출연 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2007	95,637	95,637	95,507	130	-	-	-
2008	62,265	62,265	62,254	11	-	-	-
2009	47,059	46,993	45,127	1,866	66	33	33
2010	41,244	40,744	39,382	1,362	500	-	500
2011	75,459	75,372	73,893	1,479	87	87	-

주 : 1) 해당연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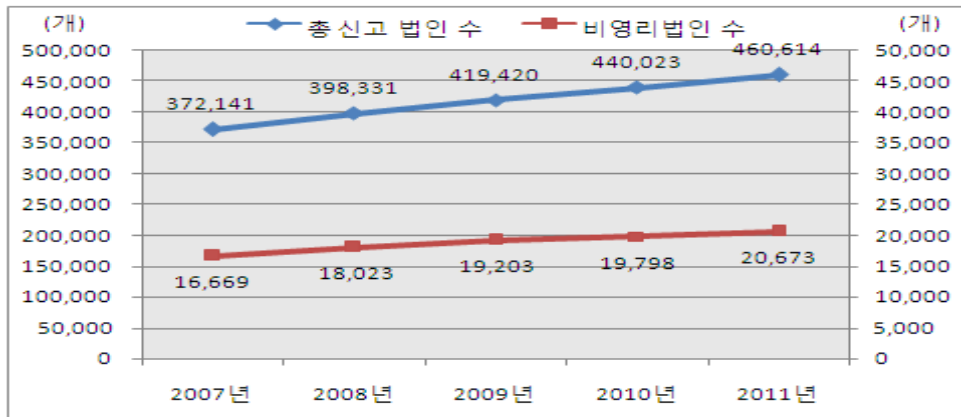
2) 단,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에는 ‘장애인증여재산가액(2009년 15억2천1백만원, 2010년 26억3천2백만원, 2011년 35억5천7백만원)’도 포함하나 여기서는 제외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35) 단, 여기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은 신고액이 아니라 결정액에 해당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제도가 아니라 납세자의 신고를 토대로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한 연도와 정부에서 결정하는 연도가 같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자료 : 국세청,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2011).

※ 비영리법인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세법」 상의 비영리법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비영리법인의 수는 20,673개이다. 이는 전체 법인 수 460,614개의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2007년(16,669개)에 비해 약 1.2배 증가한 것이다. 이때 앞의 [그림 2-83]에서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보다 포괄범위가 넓다고 하였으나, 『국세통계연보』에서 제시하는 공익법인은 2011년에 29,170



주 : 1) 각 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2-85] 법인세 신고 총 법인 수 및 비영리법인 수 : 2007-2012

개로 20,673개인 비영리법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공익법인은 세무서에 등록한 것을 집계한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해당 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3③)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신고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존재하는 비영리법인 보다 적은 수가 집계된다.

한편 가동 중인 비영리법인의 수를 지역과 업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표 2-17>과 같다. 2011년에 가동 중인 비영리법인의 수는 19,954개로 이는 해당연도 말 기준으로 지점 법인을 제외한 것이다. 가동 중인 비영리법인 중 서울청 소관의 비영리법인(6,372개)이 전체의 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지역(3,020개)이 1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6,123개)이 전체의 30.7%로 가장 많고, 금융·보험업(4,160개, 20.8%)과 부동산업(3,840개, 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7〉 지역별·업태별 가동 비영리법인 수

(단위 : 개)

지역별			업태별			
연 도	2010	2011	연 도	2010	2011	
합 계	18,466	19,954	합 계	18,466	19,954	
서울청	5,829	6,372	농업·임·어업	444	469	
중부청	인천	652	726	광업	5	5
	경기	2,690	3,020	제조업	818	919
	강원	632	668	전기·가스·수도업	24	26
대전청	대전	495	518	건설업	620	675
	충북	629	673	도매업	931	1,020
	충남	781	804	소매업	587	671
광주청	광주	447	508	음식·숙박업	133	189
	전북	754	802	운수·창고·통신업	369	404
	전남	760	800	금융·보험업	4,246	4,160
대구청	대구	822	844	부동산업	3,496	3,840
	경북	1,073	1,136	서비스업	5,360	6,123
부산청	부산	1,203	1,284	보건업	1,076	1,174
	울산	290	306	기타업종	357	279
	경남	1,040	1,108			
	제주	369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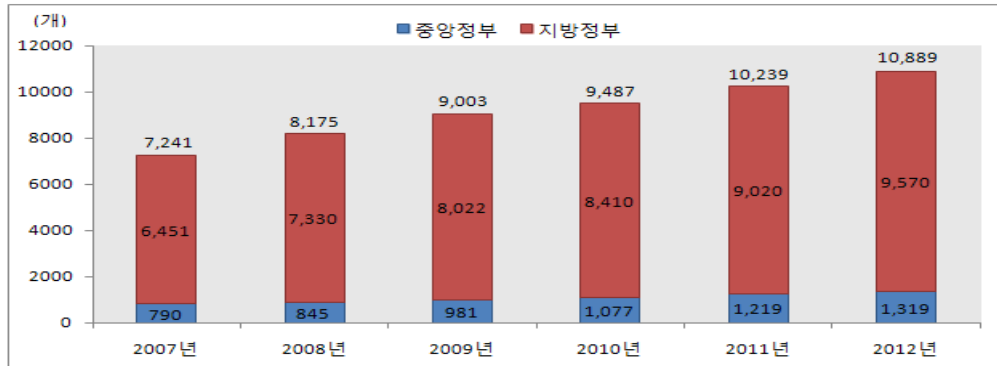
주 : 1) 해당연도 말 가동법인 기준으로 지점법인을 제외한 법인 수입

2) 업태분류는 법인의 신청, 정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세적)상의 주업종을 기준으로 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외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정보를 안전행정부에서 집계하여 매 분기별로 등록한 단체의 수와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다음 [그림 2-86]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각각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의 변화로 2012년의 경우 중앙정부 등록 수는 1,319개이고 지방정부는 9,570개로 총 10,889개로 나타났다. 매년 등록 단체의 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등록은 2008년에 전년도에 비해 934개가 늘어나 13%가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한 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자료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그림 2-86] 중앙 및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 2007-2012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보면, 2012년에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의 수가 20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교통상부(157개), 환경부(153개), 보건복지부(146개)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2007년에도 역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순으로 등록단체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12년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한편 2007년에 국방부와 특허청의 등록단체 수는 각각 1개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26개와 23개로 나타나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경기도가 1,727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1,404개로 수도권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857개)과 경북(649개)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단체의 유형을 보면 사단법인보다 비법인의 수가 약 4.6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앙부처의 경우 사단법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2007년과 비교해보면, 2012년과 동일하게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과 전북과 경북에 등록된 단체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과 전북의 증가세가 크게 나타났다.

〈표 2-18〉 중앙부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수 : 2007, 2012

(단위 : 개)

기 관	2007년	2012년	사 단	
			사 단	비법인
소 계	790	1,319	774	545
방송통신위원회	11	11	5	6
기획재정부	8	7	4	3
국가보훈처	4	9	4	5
공정거래위원회	6	7	5	2
금융위원회	1	4	2	2
교육과학기술부	29	50	21	29
통일부	73	119	77	42
외교통상부	70	157	113	44
법무부	6	7	3	4
국방부	1	26	9	17
행정안전부	127	206	118	88
문화체육관광부	92	125	61	64
농림수산식품부	27	38	29	9
지식경제부	3	9	8	1
보건복지부	99	146	78	68
환경부	95	153	65	88
고용노동부	29	43	33	10
여성가족부	50	87	56	31
국토해양부	21	30	18	12
통계청	1	1	1	0
경찰청	7	7	7	0
소방방재청	2	12	7	5
문화재청	3	6	0	6
농촌진흥청	6	6	6	0
산림청	8	12	9	3
중소기업청	1	2	2	0
특허청	1	23	23	0
식품의약품안전청	1	2	1	1
해양경찰청	8	10	8	2
국가인권위원회	-	1	1	0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	3	0	3

주 : 1) 기관명과 소관업무 등에 변화가 발생하여 2012년을 기준으로 2007년의 부처별 등록현황을 일부 수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 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원회)

자료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표 2-19〉 지방자치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수 : 2007, 2012

(단위 : 개)

기 관	2007년	2012년	사 단	
			사 단	비법인
소 계	6,451	9,570	1,703	7,867
서울	910	1,404	298	1,106
부산	425	617	116	501
대구	262	365	78	287
인천	365	522	91	431
광주	283	369	124	245
대전	234	424	92	332
울산	217	263	52	211
세종	-	9	1	8
경기	1,109	1,727	192	1,535
강원	227	259	32	227
충북	268	365	54	311
충남	271	351	59	292
전북	478	857	164	693
전남	334	497	67	430
경북	437	649	108	541
경남	420	596	113	483
제주	211	296	62	234

자료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3.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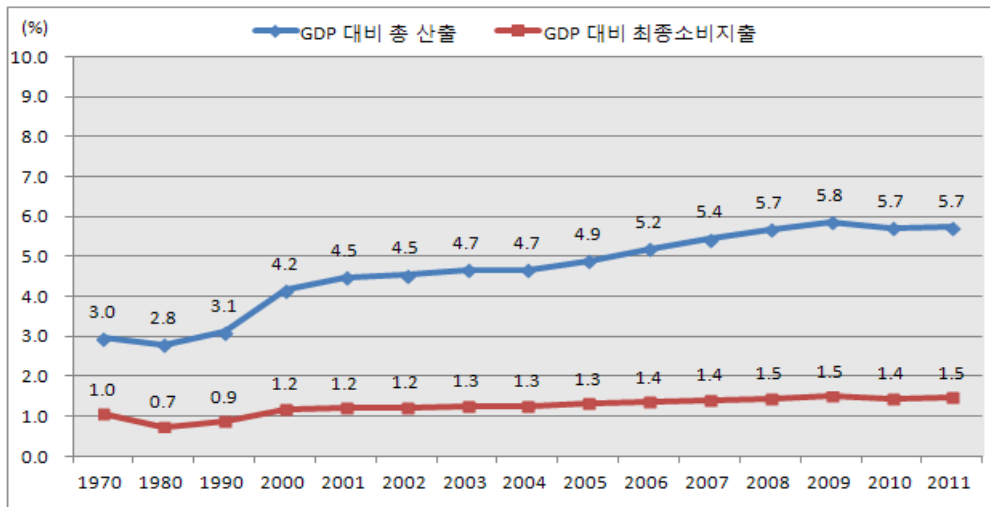
지금부터는 공익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보다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이러한 비영리조직이 국내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행이 한 나라의 생산활동 및 경제성장의 추이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국민계정』을 통해 국내총생산에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³⁶⁾가 차지하는 경제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가계봉사비영리단체’는 주로 교육, 의료, 종교, 문화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생산하여 그 구성원 또는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전문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정당, 교회 또는 종교단체와 자선·구호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한국은행, 2010).

36) 『국민계정』에서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은 비금융법인기업(non-financial corporation), 금융법인기업(financial corporations),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s), 가계(households)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와 같은 총 5개로 분류된다.



[그림 2-87]은 가계봉사비영리단체의 ‘총산출(gross output)’과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이 국내총생산(GDP)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총산출’은 원래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산출물인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그러나 가계봉사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공급하는 서비스가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생산에 들어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합산한 총 투입비용을 총산출물로 계상한다. 또한 ‘최종소비지출’도 가계의 경우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액을 의미하나, 가계봉사비영리단체는 재화나 서비스를 무상 또는 낮은 가격에 제공하여 상품 또는 비상품 판매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보다 훨씬 큰 비용을 투입하게 되므로 그 차액(총 투입비용-판매수입)을 최종소비지출로 본다. 다시 말해, 가계봉사비영리단체가 생산에 투입한 경비 중에서 서비스 판매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의 자가소비를 의미한다(한국은행, 2010).

가계봉사비영리단체의 총산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3%에서 1980년에 2.8%로 다소 감소한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2009년 5.8%를 기록하였다. 2011년 총산출은 70조 9,048억원으로 국내총생산(1,235조 1,605억원)의 약 5.7%를



주 : 1)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봉사비영리단체의 총산출과 최종소비지출의 비중임

2) 총산출 = 피용자보수 + 고정자본소모 + 기타생산세 + 중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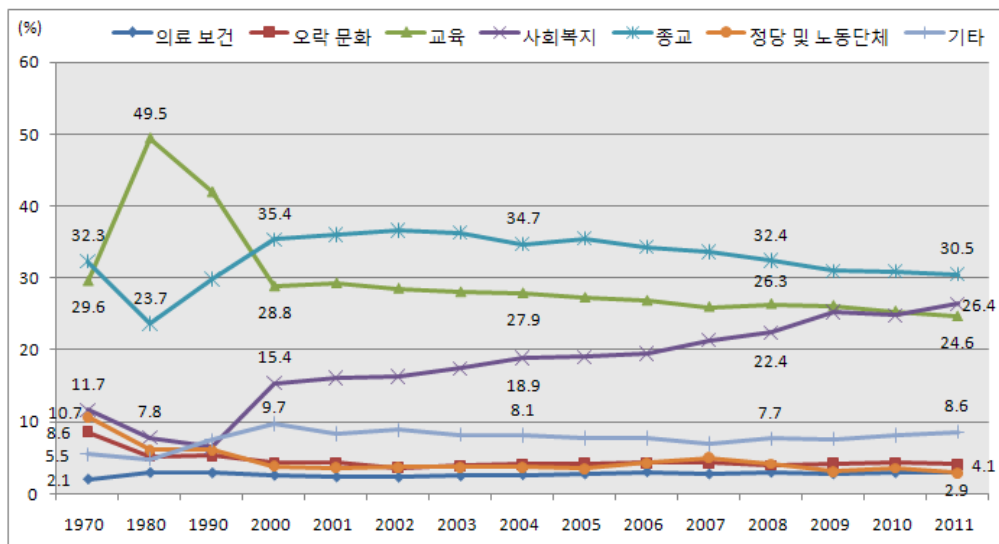
3) 최종소비지출 = 총산출 - 상품 및 비상품판매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그림 2-87]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총산출 및 최종소비지출 : 1970-201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총생산에서 최종소비지출의 비중은 1970년 1% 이후 1980년 0.7%, 1990년 0.9%를 기록하였고, 2000년 이후 1.2~1.5%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1년의 최종소비지출은 18조 591억원으로 국내총생산(1,235조 1,605억원)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가계봉사비영리단체의 전체 최종소비지출 규모에서 의료보건, 오락문화 등의 목적별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2-88]과 같다. 2011년 현재 ‘종교’분야가 30.5%로 2000년 이후 줄곧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는 1990년에는 6.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1년에는 종교분야에 이어 26.4%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는 지난 1980년에 49.5%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종교, 사회복지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4.6%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의료보건’, ‘오락문화’, ‘정당 및 노동단체’ 및 ‘기타’분야는 2000년 이후 전체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주 : 1) 가계봉사비영리단체 전체 최종소비지출 대비 각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의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별.

[그림 2-88]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 1970-2011



4. 회사이외법인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통해 비영리 분야의 고용 규모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전국사업체조사」는 매년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한다³⁷⁾.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5가지로 분류된다. 이때 ‘개인사업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이고,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주식·유한합자합명 회사를 가리킨다. 그리고 ‘회사이외법인’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사립학교, 사립의료법인, 특수법인(법무·회계법인, 공사, 공단), 종교·재단·사단법인 등을 말한다. ‘비법인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종교단체, 종친회, 동창회, 후원회 등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인 기관으로 행정기관은 물론 국·공립인 학교와 의료법인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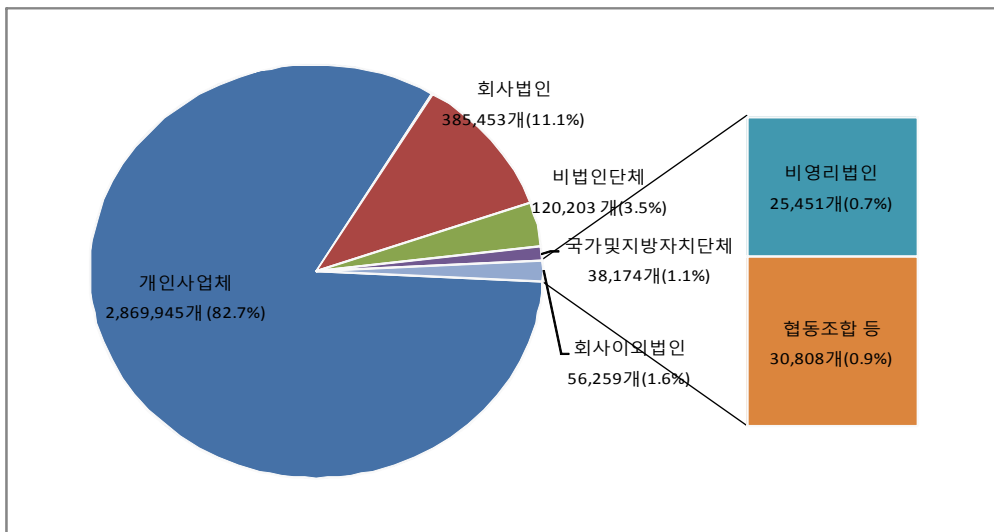
이때 위와 같은 조직형태 중 회사이외법인과 비법인단체를 비영리조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이외법인과 비법인단체 중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에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회사이외법인 중 법무·회계 법인이나 비법인단체 중 종친회와 동창회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나눔의 관점에서 비영리분야의 고용규모에 좀 더 근접하려면, 회사이외법인과 비법인단체 중 파악하는 대상의 포괄범위를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영리조직의 포괄범위를 다시 설정하여 해당하는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비법인단체는 좀 더 명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회사이외법인 중에서 법인등록번호³⁸⁾의 법인분류코드 정보를 이용해,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재단법인과 특별법 중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만을 추출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회사이외법인 중 회계·법무법인,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특수법인이 제외되었다.

37)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은 제외한다.

38) ‘법인등록번호’는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4자리는 등기관서 분류번호, 다음 2자리는 법인분류코드, 그 다음 6자리는 일련번호(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검색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법인분류코드’는 각 설립근거법에 의한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명명한 사업체의 분류코드는 「민법」상 사단법인은 21, 재단법인은 22이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31, 사회복지법인은 32, 의료법인은 33이다.

다음 [그림 2-89]와 [그림 2-90]은 2011년 기준 조직형태별 해당하는 사업체의 수와 종사자의 수를 보여준다. 특히 조직형태에 대해 기존 조사표에 따른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 같은 5가지 분류에서 회사이외법인을 다시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그림 2-89]에서 개인사업체의 수가 전체(3,470,034개)의 82.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회사이외법인은 56,259개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이외법인 중 본 연구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명명한 사업체의 수는 25,451개로 전체의 0.7%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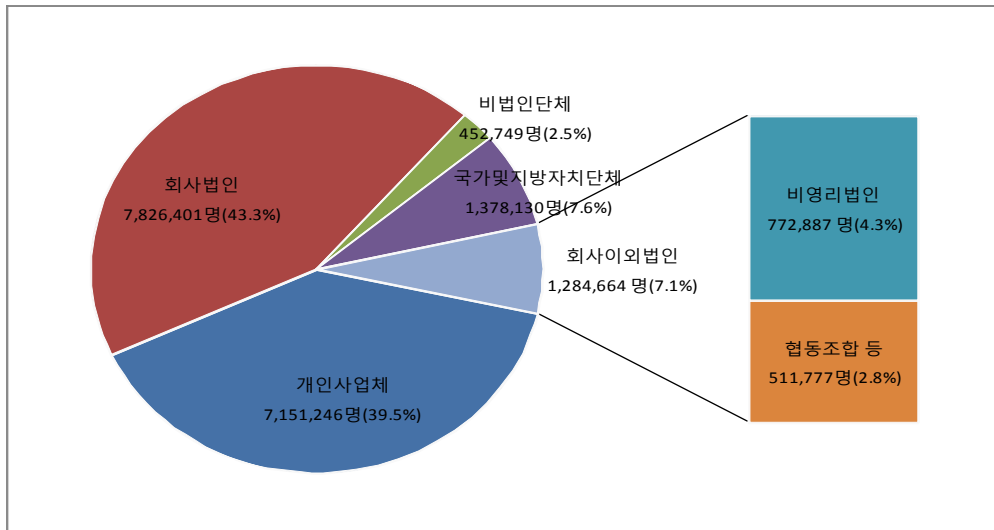


주 : 1) 여기서 ‘비영리법인’은 회사이외법인 중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재단법인과 특별법 중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인, 의료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1 원자료 분석.

[그림 2-89]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 2011

나아가 [그림 2-90]에서 2011년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총 18,093,1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사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이 7,826,401명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개인사업체의 경우 39.5%로 나타났다. 회사이외법인은 1,284,664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7.1%를 차지하였고, 이 중 ‘비영리법인’의 경우 772,887명으로 전체의 4.3%에 해당한다. 이때 ‘비영리법인’은 ‘협동조합 등’과 비교해서 사업체 수는 적으나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 1) 여기서 ‘비영리법인’은 회사이외법인 중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재단법인과 특별법 중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인, 의료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1 원자료 분석.

[그림 2-90]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 : 2011

한편 다음 <표 2-20>은 ‘비영리법인’이 전 사업체와 비교하여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비영리법인’은 서울과 경기도에 38%가 존재하고, 이러한 수도권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비영리법인’ 총 종사자 중 과반에 가까운 45.1%로 나타났다.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전 사업체도 서울과 경기도에 전체의 40% 이상 사업체와 종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표 2-20〉 지역별 전체 및 비영리법인의 수와 종사자 수 : 2011

(단위 : 개, 명, %)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비중	비영리 법인	비중	전체	비중	비영리 법인	비중
전 국	3,470,034	100	25,451	100	18,093,190	100	772,887	100
서 울	752,285	21.7	5,751	22.6	4,498,312	24.9	213,601	27.6
부 산	263,356	7.6	1,813	7.1	1,231,887	6.8	58,320	7.5
대 구	188,300	5.4	1,222	4.8	809,381	4.5	37,019	4.8
인 천	169,421	4.9	696	2.7	848,393	4.7	25,265	3.3
광 주	102,386	3.0	968	3.8	499,802	2.8	22,499	2.9
대 전	100,474	2.9	895	3.5	509,740	2.8	30,701	4.0
울 산	73,417	2.1	376	1.5	451,987	2.5	12,628	1.6
경 기	720,851	20.8	3,922	15.4	3,920,341	21.7	135,137	17.5
강 원	121,273	3.5	1,214	4.8	502,315	2.8	23,856	3.1
충 북	109,256	3.1	962	3.8	551,917	3.1	24,154	3.1
충 남	140,507	4.0	1,057	4.2	748,377	4.1	36,087	4.7
전 북	128,740	3.7	1,426	5.6	581,101	3.2	32,358	4.2
전 남	128,465	3.7	1,204	4.7	586,908	3.2	24,036	3.1
경 북	193,364	5.6	1,982	7.8	945,683	5.2	49,147	6.4
경 남	230,795	6.7	1,453	5.7	1,203,289	6.7	37,450	4.8
제 주	47,144	1.4	510	2.0	203,757	1.1	10,629	1.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1 원자료 분석.

그리고 다음 <표 2-21>과 <표 2-22>는 ‘비영리법인’과 이에 대한 종사자가 어떤 산업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표 2-21>에서 각 산업별로 전 사업체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은 개인서비스업에 가장 많은 35.6%가 존재하고 이어서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29.9%, 17.9%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상위 3개 산업에 전체 ‘비영리법인’의 대다수인 83.3%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전 사업체는 도·소매업에 가장 많은 26%가 존재하고 숙박·음식점업은 18.9%, 개인서비스업은 11.1%로 나타나 각 산업별로 분포되어 있는 경향이 ‘비영리법인’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2-21〉 산업별 전체 및 비영리법인의 수 : 2011

(단위 : 개, %)

	전체		비영리법인	
		비중		비중
전 산업	3,470,034	100	25,451	100
농·림·어업	2,445	0.1	25	0.1
광업	1,793	0.1	1	0.0
제조업	340,909	9.8	307	1.2
전기·가스·수도	1,530	0.0	3	0.0
하수·폐기물 처리업	5,909	0.2	20	0.1
건설업	104,015	3.0	10	0.0
도·소매업	903,797	26.0	462	1.8
운수업	353,982	10.2	124	0.5
숙박·음식점업	655,348	18.9	361	1.4
출판·영상·정보	30,028	0.9	230	0.9
금융·보험업	40,681	1.2	229	0.9
부동산·임대업	129,431	3.7	284	1.1
전문·과학·기술	76,462	2.2	1,082	4.3
사업서비스업	40,569	1.2	344	1.4
공공행정	11,942	0.3	42	0.2
교육서비스업	170,047	4.9	4,545	17.9
보건·사회복지	113,270	3.3	7,608	29.9
예술·스포츠·여가	103,539	3.0	724	2.8
개인서비스업	384,337	11.1	9,050	35.6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1 원자료 분석.

<표 2-22>에서는 각 산업별 종사자 수를 보면,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보건·사회복지 43.1%, 교육서비스업 39.6%로 두 산업 분야가 대다수인 82.7%를 차지하였다. 또한 ‘비영리법인’ 중 가장 많은 35.6%의 사업체가 존재하는 개인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전체의 6.3%에 불과하였다. 한편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전 사업체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 산업별로 분포되어 있는 경향이 사업체 수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과 다를 수 있다.



〈표 2-22〉 산업별 전체 및 비영리법인의 종사자 수 : 2011

(단위 : 명, %)

	전체		비영리법인	
		비중		비중
전 산업	18,093,190	100	772,887	100
농·림·어업	32,152	0.2	345	0.0
광업	15,963	0.1	4	0.0
제조업	3,587,482	19.8	6,560	0.8
전기·가스·수도	67,392	0.4	7	0.0
하수·폐기물 처리업	70,871	0.4	211	0.0
건설업	1,115,435	6.2	49	0.0
도·소매업	2,680,253	14.8	2,409	0.3
운수업	995,186	5.5	1,121	0.1
숙박·음식점업	1,840,043	10.2	3,616	0.5
출판·영상·정보	480,405	2.7	5,135	0.7
금융·보험업	718,459	4.0	4,517	0.6
부동산·임대업	450,663	2.5	3,191	0.4
전문·과학·기술	810,692	4.5	30,843	4.0
사업서비스업	810,302	4.5	6,417	0.8
공공행정	637,199	3.5	793	0.1
교육서비스업	1,432,007	7.9	305,826	39.6
보건·사회복지	1,135,546	6.3	333,174	43.1
예술·스포츠·여가	334,568	1.8	19,913	2.6
개인서비스업	878,572	4.9	48,756	6.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1 원자료 분석.

5. 소결

지금까지 나눔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비영리조직의 개괄적인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두에 서술한 바와 같이 비영리조직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에서 해당 법률의 제정 목적에 따라 다양한 포괄범위가 존재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 주로 관심이 있는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조직의 범위로서 적절한 포괄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현재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정의하는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를 나눔과 관련된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조직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안전행정부의 공시자료를 통해 공익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개괄적인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익법인은 2011년에 29,170개가 존재하고 이 중 종교법인이 17,753개로 60.9%에 이르렀다. 한편 영리를 추구하지는 않으나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는 20,673개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정부부처나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10,889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수나 지역별 분포 등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눔의 성장을 견인하는 인프라인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의 재정, 사업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차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외에 『국민계정』(한국은행)에서 비영리조직을 규정하는 개념인 가계봉사비영리단체의 경제적 규모와,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에서 사업체를 분류하는 유형 중 하나인 회사이외법인의 일부 ‘비영리법인’의 고용 규모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살펴보았다. 가계봉사비영리단체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산출은 5.7%, 최종소비지출은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사이외법인 중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재단법인과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만 포함하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업체 수는 2012년에 25,451개로 전체의 0.7%에 불과하고, 종사자 수는 772,887명으로 전체의 4.3%에 해당한다.

제5절 요약 및 결론

1. 요약

우리 사회에서 이제 ‘나눔’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일부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친숙한 활동이 되면서 나눔의 양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정부 재정지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나눔은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영리조직은 지속가능한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인 인프라로 그 규모와 활동 범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여 현재 가용한 통계를 활용하여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헌혈, 장기기증)’ 각각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참여현황과 사회적인 인프라 차원의 비영리조직의 규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주로 정부기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사회조사」(통계청), 『국세통계연보』(국세청) 등과 같은 주요 승인통계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기부 참여율과 기부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의 경우 2011년에 참여율(15세 이상 기준)이 다소 감소하였고 기부보다 참여율은 낮으나 정기적인 활동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10대 청소년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참여율이 높고 인지경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체와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는 서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고 사회적인 관계망이 견고하였다.

헌혈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개인이 단체보다 더 많이 하게 되었으나, 10~20대의 젊은 연령층에 참여가 편중되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장기기증과 이식은 물론 기증희망등록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뇌사 기증자로부터 이식받은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이식대기자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에는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다양한 법적 개념과 포괄범위 가운데 세법상 공익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은 2011년에 29,170개, 비영리민간단체는 2012년에 10,88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양적으로 성장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 전반과 나아가 비영리조직 분야의 국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나눔과 비영리조직에 관한 현재 가용한 통계 중 주요 자료를 선별하여 실태 파악에 포괄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국내 나눔 전반의 동향과 규모 등과 비영리조직의 수와 지역별 분포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한계로 일부 측면의 경우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초적인 수준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기부, 자원봉사 등 각 영역별로 향후 통계자료를 보완하여 추가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정리한 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기부의 경우, 무엇보다 국내의 개인과 기업이 연간 기부한 총 금액에 대한 대표성 있는 수치의 산출이 필요하다.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한 기부금 소득공제액을 기부총액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소득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기부금 등은 누락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 국가의 기부총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므로,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액을 기부총액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역시 소득공제액을 기반으로 하나 패널조사 등과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좀 더 세밀하게 기부총액을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의 양적 성장과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인 기부총액에 대한 대표성 있는 값을 추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유산기부와 같은 계획에 의한 기부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37.3%가 향후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산기부 등은 주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고액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기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기부를 해야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므로 일회적인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긍정적인 특성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계획기부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공익법인에 상속이나 증여의 방식으로 출연한 재산의 규모에 대해 국세청이 집계한 결과가 존재하나, 유산기부를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기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이제 자원봉사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사회조사」에서는 활동분야를 6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함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내용과 기관에 대한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자원봉사활동측정 매뉴얼』(2011)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조사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의 표준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내용과 기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 조사항목을 구성하면 자원봉사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활동내용과 기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통해 무급인 자원봉사활동의 노동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사방법을 준수하면 이후 조사결과의 국제비교에도 용이하다.

한편 현재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은 비영리조직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수나 지역별 분포 등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눔의 성장을 견인하는 인프라로서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의 재정사황, 사업내용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부금, 보조금 등의 각 분야별 규모와 사업별 배분 정보는 비영리조직이 민간이나 정부로부터 조성한 재원의 수준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는

개별 단체가 설립을 허가받은 해당 정부기관에 제출한 행정자료를 통합하거나, 특정 범위의 단체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지금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가이드스타와 같은 민간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공시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비영리DB를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생산하려는 작업이 최근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대한 표준적인 회계기준이 부재하여 개별 단체의 공시자료 간 비교가능성이 낮고, 공시한 정보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통계작성에 원활하게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러한 정보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익법인의 세부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나눔과 비영리조직과 관련된 통계와 제도를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최근 다행히 위에서 언급한 바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 민간 비영리분야, 학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나눔과 비영리조직 전반에 대한 통계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기관 관련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우리 사회의 나눔과 비영리조직의 실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차원의 종합보고서가 주기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련·임경민. 2013. 『비영리단체계정 작성방법 연구』. 통계개발원.
- 김혜원 외 5인. 2008. 『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국세청. 2012. 『국세통계연보』.
- 노대명 외 3인. 2010.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적십자사. 2013. 『혈액사업통계연보』.
- 박주언·이희길. 2012. 『나눔통계 개선방안』. 통계개발원.
- 박주언·이희길. 2013. 『NPO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통계 작성방안』. 통계개발원.
- 보건복지부. 2013.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 손원익. 2000.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손원익. 2011.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국제 비교: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설립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179): 6-25.
- 손원익. 2013. 『비영리분야 통계의 실태와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신경희. 2010.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실천전략』. 서울연구원.
- 안전행정부. 2008. 『자원봉사 활동 백서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방제 활동』.
- 안전행정부. 2013. 『자원봉사센터현황』.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3. 『장기이식통계연보』.
- 조홍식 외 4인. 2011.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 한국NPO공동회의.
- 통계청. 2010. 「생활시간조사 보도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지침서』.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나눔문화) 보도자료」.
- 한국은행. 201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 한국은행. 2013. 『국민계정』.
- UN. 2003. Handbook on Non-Profit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국가통계포털(KOSIS), www.kosis.kr

e-나라지표, www.index.go.kr

<부 록> 국제비교

1. 기부

<부표 2-1> 국가별 기부 관련 조사 및 통계

국가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³⁾
보고서	사회조사 보고서	Giving USA	Giving UK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Giving Australia
조사명	사회조사	국세청, Foundation Center 등의 자료 활용	Omnibus Survey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 Participating	Individual & Household Survey
조사/작성	통계청	인디애나대학 기부연구센터	통계청/ CAF, NCVO ¹⁾	통계청	ACOSS ²⁾
대상	13세 이상	-	16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
주기	1년	1년	1년	3년	-
참여율	36.4%('11년)	- ⁴⁾	55%('11-'12년)	84%('10년)	87%('05년)

주 : 1) Charities Aid Foundation와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는 비영리기관임

2) Australia Council Of Social Service는 The Prime Minister's Community Business Partnership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여러 연구기관을 연합하여 수행함

3) 통계청이 실시한 General Social Survey(2006)에서 기부 참여율은 76.9%(18세 이상)로 나타남

4) 개인, 기업, 재단, 유증을 통한 기부액을 합산한 총액은 2012년 기준 3162.3억 달러로 추정됨



2. 자원봉사

〈부표 2-2〉 국가별 자원봉사 관련 조사 및 통계

국가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보고서	사회조사 보고서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Community Life Survey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Voluntary Work, Australia
조사명	사회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 부가조사	Community Life Survey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 Participating	General Social Survey
조사/ 작성	통계청	센서스국/ 노동통계국	TNS-BMRB/ Cabinet Office	통계청	통계청
대상	13세 이상	16세 이상	16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
주기	1년	1년	2년	3년	4년
참여율	19.8%('11년)	26.5%('12년)	44%('12-'13년)	47%('10년)	36%('10년)

※ 세계기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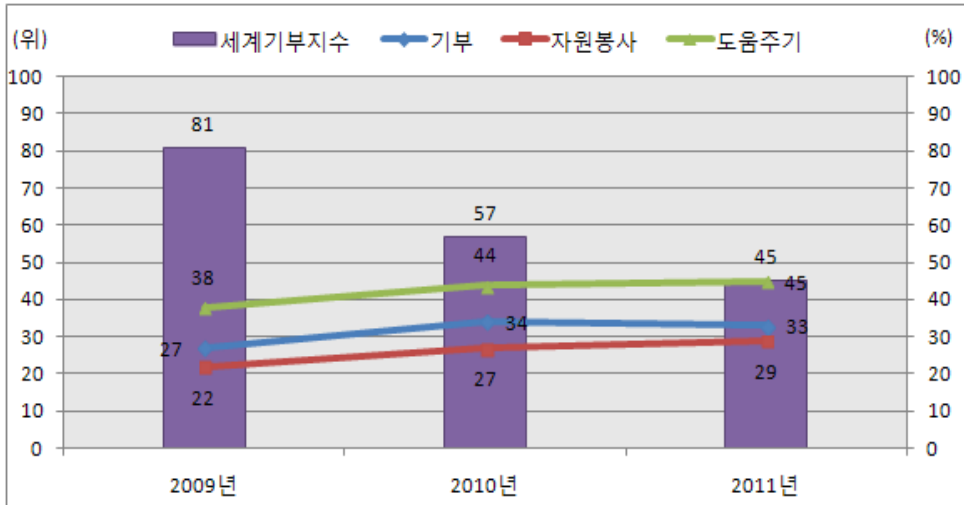
영국의 민간 비영리기관인 Charities Aid Foundation(이하 CAF)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갤럽(Gallup)의 조사(World View World Poll) 결과를 분석하여 『World Giving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우선 갤럽은 전세계 약 140여 개 국가의 15세 이상 인구 중 약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기부와 자원봉사,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경험 여부를 조사한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 (기부) 당신은 지난 한달 동안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 (자원봉사) 당신은 지난 한달 동안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도움) 당신은 지난 한달 동안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CAF는 갤럽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기부, 자원봉사, 도움주기 각각에 대해 국가별 참여율의 순위를 매기고, 나아가 국가의 이타적 활동 수준을 의미하는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를 산출하고 있다. 다만 갤럽의 조사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단순한 구성의 질문을 통해 실시되었다. 각 사회와 문화에 따라 기부와 자원봉사 개념의 포괄범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계 국가에서 모두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장 간략한 구성의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CAF가 산출한 세계기부지수는 기부, 자원봉사, 도움주기 각각의 참여율을 단순 합산한 값의 순위이다. 이는 어느 국가가 특정 영역에서 참여율이 매우 높으면 다른 영역들이 낮아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난 경우와 순위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갤럽의 조사결과와 CAF의 세계기부지수는 자료의 신뢰성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현재 기부 등에 대해 국가 간 비교를 하기위한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략적인 한국의 위치와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는데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 [부그림 2-1]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갤럽 조사결과와 세계기부지수 순위를 제시해준다. 2011년에 한국의 기부 참여율은 33%, 자원봉사 참여율은 29%, 그리고 도움을 준 경우는 45%로 각 영역별로 참여율이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2011년은 2009년과 비교하면 기부, 자원봉사, 도움주기 모두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나, 기부의 경우 2010년에 비해 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부지수는 2009년 81위로 출발했으나 나눔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2010년 57위, 2011년에는 45위로 점점 상승하였다.



자료 : Charities Aid Foundation, 『World Giving Index』, 각 연도.

[부그림 2-1] 한국의 세계기부지수 및 기부, 자원봉사, 도움 : 2009-2011

다음 <부표 2-3>은 한국을 포함한 전체 146개 국가의 2011년 조사결과이다. 호주가 세계기부지수가 가장 높고 [부그림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비교적 상위인 45위로 나타났다.

<부표 2-3> 국가별 세계기부지수 및 기부, 자원봉사, 도움 : 2011

(단위 : %)

국가	세계 기부 지수	기부	순위	자원 봉사	순위	도움	순위
호주	1	76	2	37	12	67	10
아일랜드	2	79	1	34	15	66	13
캐나다	3	64	10	42	7	67	10
뉴질랜드	4	66	8	38	11	68	9
미국	5	57	13	42	7	71	3
네덜란드	6	73	3	34	15	51	49
인도네시아	7	71	5	41	10	43	77
영국	8	72	4	26	35	56	33

국가	세계 기부 지수	기부	순위	자원 봉사	순위	도움	순위
파라과이	9	48	23	42	7	61	22
덴마크	10	70	7	23	45	54	43
라이베리아	11	12	109	53	2	81	1
이란	12	51	21	24	41	70	6
투르크메니스탄	13	30	52	58	1	56	33
과타르	14	53	17	17	67	71	3
스리랑카	15	42	30	43	6	55	38
트리니다드토바고	16	44	26	30	23	62	19
핀란드	17	50	22	27	30	57	29
필리핀	17	32	47	44	5	58	26
홍콩	19	64	10	13	87	56	33
오만	19	39	32	22	48	72	2
키프로스	21	56	14	27	30	48	57
몰타	21	66	8	22	48	43	77
모리셔스	23	52	19	35	14	43	77
도미니카공화국	24	32	47	34	15	62	19
우즈베키스탄	24	28	56	46	3	54	43
태국	26	71	5	15	78	40	92
소말리랜드(지역)	27	44	26	19	61	62	19
오스트리아	28	53	17	24	41	47	58
룩셈부르크	28	56	14	27	30	41	88
앙골라	30	31	50	33	18	56	33
온두라스	31	33	40	29	26	57	29
자메이카	32	22	72	32	19	64	16
시에라리온	33	15	97	30	23	71	3
칠레	34	45	25	14	84	56	33
독일	34	43	28	22	48	50	51
슬로베니아	34	35	37	36	13	44	71
스웨덴	37	56	14	11	99	47	58
아랍에미리트	37	47	24	12	93	55	38
잠비아	37	21	77	24	41	69	7
캄보디아	40	61	12	10	104	40	92
케냐	40	23	69	24	41	64	16
콜롬비아	42	23	69	22	48	65	15
수단	43	19	86	23	45	67	10
가나	44	23	69	32	19	53	48
한국	45	33	40	29	26	45	68
몽골	46	42	30	32	19	32	118



국가	세계 기부 지수	기부	순위	자원 봉사	순위	도움	순위
우간다	46	20	80	20	56	66	13
아프가니스탄	48	33	40	21	53	51	49
코스타리카	48	29	53	22	48	54	43
과테말라	48	27	60	31	22	47	58
스와질란드	48	20	80	27	30	58	26
말라위	52	22	72	27	30	54	43
타이완	52	43	28	16	73	44	71
벨기에	54	38	34	26	35	38	101
프랑스	54	29	53	29	26	44	71
이스라엘	54	52	19	14	84	36	108
이탈리아	57	37	35	18	64	45	68
나이지리아	58	15	97	26	35	57	29
파나마	58	35	37	23	45	40	92
시리아	58	31	50	10	104	57	29
볼리비아	61	22	72	20	56	55	38
타지키스탄	61	6	136	45	4	46	63
짐바브웨	63	10	115	26	35	60	23
레소토	64	10	115	16	73	69	7
바레인	65	33	40	15	78	45	68
기니	66	21	77	13	87	58	26
카메룬	67	17	93	11	99	63	18
아이티	67	39	32	25	40	27	135
레바논	67	33	40	8	114	50	51
남아프리카	70	15	97	19	61	55	38
베트남	70	33	40	10	104	46	63
모리타니	72	28	56	17	67	43	77
스페인	72	26	62	13	87	49	55
라트비아	74	34	39	12	93	40	92
멕시코	75	22	72	17	67	46	63
아제르바이잔	76	20	80	28	29	36	108
말레이시아	76	32	47	26	35	26	136
가봉	78	10	115	13	87	60	23
코모로	79	12	109	19	61	50	51
에스토니아	79	19	86	21	53	41	88
코소보	79	28	56	11	99	42	84
슬로바키아	79	37	35	13	87	31	120
브라질	83	24	68	12	93	44	71
콩고	83	10	115	16	73	54	43

국가	세계 기부 지수	기부	순위	자원 봉사	순위	도움	순위
일본	85	33	40	21	53	25	138
파키스탄	85	25	65	12	93	42	84
사우디아라비아	87	25	65	9	111	44	71
몰도바	88	19	86	17	67	41	88
니카라과	89	21	77	18	64	36	108
우루과이	89	25	65	11	99	39	99
벨라루스	91	16	96	30	23	28	132
이라크	91	20	80	8	114	46	63
아르헨티나	93	18	92	15	78	40	92
헝가리	94	26	62	8	114	38	101
페루	94	17	93	15	78	40	92
폴란드	94	28	56	8	114	36	108
튀니지	94	8	129	5	135	59	25
체코	98	27	60	14	84	30	12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99	12	109	15	78	43	77
키르기스스탄	99	7	130	20	56	43	77
탄자니아	99	13	105	8	114	49	55
차드	102	19	86	13	87	37	104
말리	102	7	130	7	125	55	38
마케도니아	104	22	72	7	125	39	99
보츠와나	105	6	136	15	78	46	63
이집트	105	14	102	6	131	47	58
리투아니아	105	20	80	11	99	36	108
엘살바도르	108	14	102	12	93	40	92
방글라데시	109	13	105	10	104	42	84
요르단	110	15	97	5	135	44	71
모잠비크	111	10	115	17	67	36	108
우크라이나	111	7	130	20	56	36	108
지부티	113	13	105	8	114	41	88
싱가포르	114	29	53	8	114	24	140
카자흐스탄	115	10	115	20	56	30	12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15	26	62	4	138	30	124
네팔	115	17	93	18	64	25	138
세네갈	118	3	145	6	131	50	51
포르투갈	119	19	86	10	104	29	129
루마니아	119	20	80	4	138	34	116
아르메니아	119	6	136	9	111	43	77



국가	세계 기부 지수	기부	순위	자원 봉사	순위	도움	순위
니제르	119	7	130	4	138	47	58
팔레스타인	123	11	112	8	114	37	104
베네수엘라	123	10	115	8	114	38	101
알제리	125	11	112	7	125	37	104
모로코	126	6	136	6	131	42	84
러시아	127	7	130	17	67	29	129
에콰도르	128	14	102	7	125	30	124
조지아	128	3	145	16	73	32	118
부르키나파소	130	6	136	8	114	36	108
콩고민주공화국	130	9	126	10	104	31	120
크로아티아	132	15	97	6	131	28	132
인도	133	19	86	10	104	19	146
베냉	134	5	141	7	125	34	116
마다가스카르	134	9	126	16	73	21	143
예멘	134	5	141	4	138	37	104
불가리아	137	10	115	4	138	31	120
세르비아	137	13	105	3	145	29	129
터키	137	10	115	4	138	31	120
부룬디	140	5	141	8	114	28	132
중국	141	10	115	4	138	26	136
르완다	141	11	112	9	111	20	145
토고	141	7	130	12	93	21	143
알바니아	144	9	126	7	125	23	141
그리스	145	5	141	3	145	30	124
몬테네그로	145	10	115	5	135	23	141

자료 : Charities Aid Foundation, 『World Giving Index 2012』, 2012.

3 생명나눔

가. 헌혈

국가의 총 인구에서 헌혈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헌혈률’에 대해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부표 2-4>와 같다. 2012년 기준 한국은 5.4%로 <부표 2-4>에 제시된 국가들 중에서 호주(5.9%) 다음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표 2-4〉 국가별 헌혈률

(단위 : %)

국가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헌혈률	5.4	4.1	5.9	4.9	4.9

주 : 1) 헌혈률 = 총 헌혈실적 / 총 인구 * 100

2) 한국과 프랑스는 2012년 기준, 나머지 국가는 2011년 기준

자료 : e-나라지표 참조(출처 : 혈액사업통계연보(일본, 2011), 적십자사 연간보고서(호주, 2011-12), 국립혈액원 key figure(프랑스, 2012), Hema Quebec 연간보고서(캐나다, 2011))

나. 장기기증

뇌사자 장기기증 현황은 각 국가의 장기기증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인구 백만명 당 기증자 수를 산출하여 국가별 비교를 실시한다. 다음 <부표 2-5>는 주요 국가별 뇌사자 장기기증 현황으로 한국은 2011년에 인구 백만명 당 7.2명으로 스페인(32명), 미국(25.6명)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5〉 국가별 뇌사자 장기기증

(단위 : 명)

국가	한국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뇌사자 장기기증	7.2	25.6	16.4	32	21.6

주 : 1) 인구 백만명 당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

2) 한국은 2011년 기준, 나머지 국가는 2010년 기준

자료 : e-나라지표 참조(출처 : www.tpm.org)